

議政白書

(2002. 7. 1 ~ 2004. 6. 30)

assembly.ulju.ulsan.kr



蔚山廣域市蔚州郡議會

議政白書

(2002. 7. 1 ~ 2004. 6. 30)



蔚山廣域市蔚州郡議會



의원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의의원

發 刊 辭



예부터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듯이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행 된지도 어언 십 수 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서구의 수백 년 민주주의의 전통에 비한다면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 많은 선각자들과 지역주민의 노력으로 괄목 할만한 성장을 하여 외형적인 면에서는 그 틀을 갖추어 가고 있는 시점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앞에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한 제도적인 부분의 개선과 주인의식의 함양 등 그 역량을 배가하여 완전한 자치의 꽃을 피우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간 의회의 활동상을 담은 의정백서를 발간하면서 때론 아쉬움과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 땀 흘리면서 이룩한 성취감과 보람 등도 파노라마 처럼 뇌리를 스칩니다.

지금은 바야흐로 지방분권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주민이 직접 군정에 참여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어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에 부응해서 우리군 의회에서는 군정의 감시와 견제, 건설적인 대안제시를 통한 생산적인 의회상을 구현하여 의회자체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수록된 자료들이 지방자치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5월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회 의장 김 용 원

의 정 방 침

운 영 방 향

- 의정능력 제고를 위한 선진의정 구현
- 복지울주 건설을 선도하는 성숙한 의정 실현
- 군정에 대한 견제를 넘어 발전적 대안 제시

군민의 바람

- 울주의 자긍심 고양
-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실현
- 균형적 지역개발로 생활불편해소
- 도·농지역의 평균 소득증대

울주군의 상징물

Symbol



- **원 명** 떠오르는 태양으로 군민의 지혜와 지식을 상징하는 머리부분임과 동시에 한반도의 새로운 시대를 가장 먼저 조명하고 주도해 나갈 무한한 에너지를 가진 군민의 저력을 태양으로 표현함.
- ▲ **삼각형** 위를 향해 힘차게 뻗어 올라가는 산의 당당한 모습에서 군민의 화합, 안정과 미래에 대한 거시적 사고와 일등정신을 표현함.
- **타원형** 울주군의 보고인 동해를 상징하고 세계화에 앞서가는 군민의 글로벌 정신을 담고 있음.

캐릭터



해 뜨 미

‘해’와 ‘뜨다’의 합성어로 “해가 뜨다”라는 의미이다. 귀엽고 당찬 모습의 “해뜨미”는 동북 아시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으로 유명한 간절곶의 일출을 형상화하여 세계속으로 뻗어나가는 울주군의 힘찬 전진을 표현하였다.

“해뜨미”의 얼굴은 해의 둥근 특성을 살려 동실동실 귀엽게 표현하여 친근감을 주었으며, 손동작은 울주군의 강한 미래에 대한 의지를 담았다. 아울러 하단 부분의 물결띠는 동해의 일출을 표현해 전체적으로 재미있고 신선함을 추구하고자 노력하였다. “해뜨미”는 울주군의 희망과 번영, 군민의 화합 그리고 홍보대사로서 열심히 책무를 다할 것이다.

상징물



군화 배꽃

깨끗하고 고결하며, 품위 있는 우리 조상과 의식을 함께 해 온 꽃으로, 순박함과 인정있고 부지런한 군민성을 상징.



군목 은행나무

힘차게 바르게 뻗어나가는 강직성은 줄기차게 살아가는 굳건한 군민의 기상을 나타내며 긴 수명은 울주군의 무궁한 번영을 상징.



군조 비둘기

성질이 온순하며 애항심과 협동심이 강하므로 화합과 단결, 상부상조하는 풍요로운 마음을 가진 군민을 상징.



군대표동물 한우

한국의 고유종으로 체질이 건강하여 내병성(耐病成)이 강하며, 몸이 민첩하고 성질이 온순하여 순박하고 근면한 우리군 농촌지역의 대표동물임.

三代前半期議員現況

(2002. 7. 1 ~ 2004. 6. 30)

의 장 단

의 장



연양읍
변양섭

부 의 장



청량면
김철준

상 임 위 원 장

의회운영위원장



웅촌면
김석암

내무위원장



두서면
서완영

산업건설위원장



두동면
서우규

지역구별



은산읍
이몽원



은양읍
이순걸



범서읍(제1선거구)
최인식



범서읍(제2선거구)
송정문



서생면
김용원



상북면
김지호



삼남면
김진근



삼동면
신동두

三代後半期議員現況

(2004. 7. 1 ~)

의 장 단

의 장



서생면
김용원

부 의 장



두동면
서우규

상 임 위 원 장

의회운영위원장



은산읍
이몽원

내무위원장



삼남면
김진근

산업건설위원장



범서읍(제2선거구)
송정문

지역구별



연양읍
변양섭



은양읍
이순걸



범서읍(제1선거구)
최인식



청량면
김경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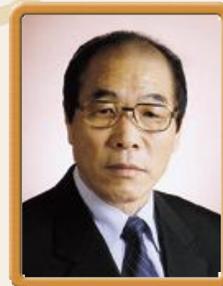
웅촌면
김석암



두서면
서완영



상북면
김지호



삼동면
신동두

울주군의회 의원 프로필

<div style="text-align: center;"> 온 산 음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이 몽 원 (李夢源) </div>	주 소	온산읍 덕신리 513			
	연 락 처	자택	238-0102	휴대폰	011-868-5590
	학 력 및 주 요 경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창고졸, 울산대 경영대학원 수료 • 온산읍 자연보호협의회회장 • 한농연울산광역시지부 부회장 • 한국복지재단 울산광역시 운영위원 • 법무부 범죄예방보호관찰 위원 • 민주평통 울주군협의회 위원 • 남울산우체국 고객대표 위원 • 울산남부로타리클럽 봉사위원 • 울주군 생활체육 이사 			

<div style="text-align: center;"> 언 양 음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변 양 섭 (卞良燮) </div>	주 소	언양읍 서부리 163			
	연 락 처	자택	262-0377	휴대폰	011-573-9964
	학 력 및 주 요 경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배정고졸 • 동아대 학교 경영문제연구소 특별위원 • 사단법인 한국청년회의소 사무총장 • 한국청년회의소 연수원교수 • 국제청년회의소 세계대회 한국대표단 본부장 • 대한씨름협회 이사, 울산시 체육회 상임이사 • 민주평통 울주군협의회 위원, 울주문화원 부원장 • 제2대 후반기 울주군의회 의장 • 제3대 전반기 울주군의회 의장 			

<div style="text-align: center;"> 온양읍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이순걸 (李洵杰) </div>	주 소	온양읍 발리 483-7			
	연 락 처	자택	237-2984	휴대폰	016-831-2981
	학 력 및 주 요 경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공업고등학교 졸업 • 경남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온양농협 이사, 온양읍 체육회 이사 • 하늘소 자연과학 유치원 이사장 • 울산지검 범죄예방협의회 청소년 선도 분과위원 • 울주군 체육협의회 이사 • 남울주 발전협의회 회원 • 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민주평통 울주군협의회 위원 			

<div style="text-align: center;"> 범서읍(제2선거구)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최인식 (崔仁植) </div>	주 소	범서읍 구영리 881 신한다솜APT 102동 101호			
	연 락 처	자택	211-7997	휴대폰	011-588-0101
	학 력 및 주 요 경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성고졸, 동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 대한매일신문사 정치부 기자 • 민주평통 울주군협의회 위원 • 울주군 교육발전위원회 회장 • 한국청년위원회 울산광역시 부지부장 • 울산광역시 교육청 시민장학위원 • 구영초등학교 운영위원, 범서읍 체육회 이사 • 범서읍 바르게살기협의회 위원 • 해병대 전우회 홍보부장 			

<div style="text-align: center;"> 범서읍(제2선거구)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송정문 (宋政文) </div>	주 소	범서읍 굴화리 402-13			
	연 락 처	자택	221-1574	휴대폰	011-569-2292
	학 력 및 주 요 경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공업고등학교 졸업 • 울산전문대 졸업 (현, 울산과학대) • 울산대학교 졸업 •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재학 • 울산교육발전협의회 위원 • 범서농협 선관위원 및 대의원 • 민주평통 울주군협의회 위원 			

<div style="text-align: center;"> 서 생 면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김 용 원 (金容元) </div>	주 소	서생면 진하리 73-3 진하비치 1108호			
	연 락 처	자택	239-3939	휴대폰	011-587-1234
	학 력 및 주 요 경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 초대 평화통일 자문위원 간사 • 청소년 선도 위원회 울주군 남부지부장 • 초대 울주군의회 의원 • 청파장학회 회장 • 진하해수욕장 번영회 회장 • 민주평통 울주군협의회 위원 			

<div style="text-align: center;"> 청 량 면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김 경 술 (金慶述) </div>	주 소	청량면 개곡리 301-1			
	연 락 처	자택	268-9943	휴대폰	010-6657-9943
	학 력 및 주 요 경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량중졸, 청량면 재향군인회 회장 • 청량면 자유총연맹 지도위원장 • 청량면 개산마을 이장 • 청량면 주민자치위원회 총무 • 청량면 농협 감사 • 청량면 새마을협의회 회장 • 덕하역 이설 대책위원회 감사 • 청량면 신청사추진위원회 총무 • 민주평통 울주군협의회 위원 			

<div style="text-align: center;"> 웅 촌 면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김 석 암 (金石巖) </div>	주 소	웅촌면 대대리 510			
	연 락 처	자택	225-0133	휴대폰	011-847-0138
	학 력 및 주 요 경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성고졸 • 동아대 원예학과 졸업 • 웅촌면 체육회장 • 웅촌중학교 운영위원장 • 울주문화원 이사 • 울산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본부 이사 • 민주평통 울주군협의회 간사 • 바르게살기 울주군협의회 부회장 • 지방분권운동 울산광역시본부 공동집행 위원장 			

<p style="text-align: center;">두 동 면</p>  <p style="text-align: center;">서 우 규 (徐雨圭)</p>	주 소	두동면 만화리 408			
	연 락 처	자택	262-7674	휴대폰	011-834-7674
	학 력 및 주 요 경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동초등학교졸 • 동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 울산기능대학 지방자치 전문과정 수료 • 두동면 칠조이장, 두동면 청년회장 • 대곡댐 대책위원회 위원장 • 두동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두광중학교 운영위원장 • 두동면 체육회장 • 민주평통 울주군협의회 위원 			

<p style="text-align: center;">두 서 면</p>  <p style="text-align: center;">서 완 영 (徐完永)</p>	주 소	두서면 활천리 477-4			
	연 락 처	자택	262-7357	휴대폰	011-831-7357
	학 력 및 주 요 경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성고졸 • 부산경상전문대 법률과 졸업 • 한국통신대학 법학과 졸업 • 두광중학교 운영위원장, 두북농협 이사 • 두서면 청소년 선도위원 • 두서면 체육회장 • 두서면 청년회장 • 민주평통 울주군협의회 위원 • 울주문화원 이사 			

<p style="text-align: center;">상 북 면</p>  <p style="text-align: center;">김 지 호 (金知浩)</p>	주 소	상북면 산전리 947			
	연 락 처	자택	264-0089	휴대폰	011-885-2244
	학 력 및 주 요 경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북고졸 (현, 경의고) • 양산대 졸업 • 법무부 범죄예방 위원 • 상북학원 후원회 회장 • 학교법인 상북학원이사 • 국제라이온스클럽355-1 지구 서울주회장 • 국제라이온스클럽355-1 지구 지구감사 • 울주군 생활체육협회 부회장 • 민주평통 울주군협의회 위원 			

<div style="text-align: center;"> 삼 남 면 </div>  <p style="text-align: center;">김진근 (金璣根)</p>	주 소	삼남면 방기리 176-1			
	연 락 처	자택	055)382-6560	휴대폰	011-562-6560
	학 력 및 주 요 경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동성고졸 • 금강불교대학 2년 수료 • 삼남면정 자문위원 • 관설당 서예협회 회원 • 울주환경연합 삼남지회장 • 민주평통 울주군협의회 위원 			

<div style="text-align: center;"> 삼 동 면 </div>  <p style="text-align: center;">신동두 (辛東斗)</p>	주 소	삼동면 하잠리 877-1			
	연 락 처	자택	254-5959	휴대폰	011-871-1551
	학 력 및 주 요 경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상고졸 • 울산대 산업경영 대학원 수료 • 삼동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울주군 기획감사실장 근무 • 울주군 인사위원회 부위원장 역임 • 울주도서관 운영위원 • 민주평통 울주군협의회 위원 			



議政活動



三代議政活動



제3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개원 기념



제3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개원식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위한 현장방문



조례안 및 예산안 심의를 위한 현장방문

三代議政活動



군정질문에 대한 엄창섭 군수의 답변



조류독감 피해상황 청취 및 긴급지원 대책회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三代議政活動



의원 정례 간담회



당초예산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절곶 해맞이 축제



울주군 나무심기 기념행사

三代議政活動



울주군의회와 울주군청 대항 직선 축구대회



경남 합천시 수해 이재민 위문 및 구호품 전달



중국 문등시장 일행 의회 방문



경부고속철도 울산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

三代議政活動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위문품 전달



태풍 피해지역 현장방문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가의 낙과 배 팔아주기 운동



재·보궐선거 당선의원의 의원선서

三代議政活動



정부, 열린우리당 주관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순회방문



서생면 진하 마을회관 부지 현장방문



상북면 길천 소하천 제방 부실공사 현장방문



범서읍 옥곡마을 단감 피해지역 현장방문

三代議政活動



전국 지방의회 의원 의정연수



제3대 울주군의회 하반기 원구성 축하연

Contents

제1장 일 반 현 황

제1절 의회현황	35
제2절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	41
제3절 울주군 현황	50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제1절 의회운영 현황	59
제2절 주요의정활동 현황	61
제3절 회기별 의안처리 현황	70
• 제50회 임시회	70
• 제51회 임시회	74
• 제52회 임시회	83
• 제53회 임시회	84
• 제54회 임시회	85
• 제55회 임시회	91
• 제56회 임시회	103
• 제57회 임시회	116
• 제58회 임시회	125
• 제59회 임시회	130

Contents

• 제60회 임시회	131
• 제61회 임시회	142
• 제62회 임시회	151
• 제63회 임시회	160
• 제64회 임시회	167
• 제65회 임시회	178
• 제66회 임시회	188
• 제67회 임시회	195
• 제68회 임시회	201
제4절 예산 및 결산 처리현황	215
•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215
• 200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19
•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21
• 200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24
•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27
•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30
•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233
• 200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37
•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39
• 200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42
•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45
•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48

Contents

제5절 행정사무감사 및 사무조사	251
•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251
•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279

제3장 기타의정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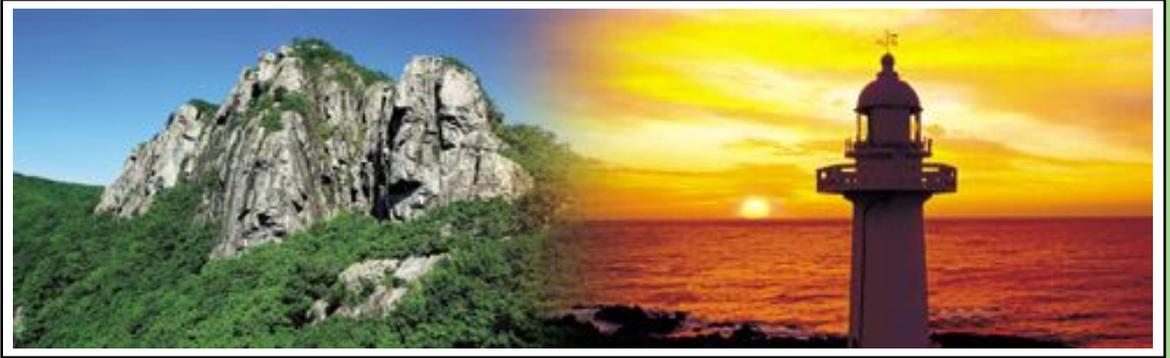
제1절 군정질문	311
제2절 4분 자유발언	350
제3절 진정·건의서 처리현황	359
제4절 주요의정활동사항	379
제5절 기 타	381

제4장 부 록

의원논단

• 의장 김용원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386
• 의원 이몽원 「모순을 인정하자」	388
• 의원 변양섭 「캐나다의 환경보호」	390
• 의원 김석암 「고구려 유적지 탐방 및 통일기행」	393
• 의원 김진근 「내고향 연산리」	398
제3대 의원선거결과	399





제1장 일반 현황

제1절 의 회 현 황

제2절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

제3절 울주군 현황

제1장 일 반 현 황

제1절 의회 현황

제2절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

제3절 울주군 현황

제1절 의회현황

1. 연 혁

□ 대한민국정부수립이후

- 1949. 7. 4 최초의 지방자치법 제정
- 1952. 4.25 전국초대 시·읍·면의회의원선거(울산56명)
- 1952. 5.10 전국도의회 의원선거
- 1956. 8. 8 전국시·읍·면장 및 제2대 시·읍·면의회의원선거(울산50명)
- 1956. 8.13 전국도의회의원선거
- 1960.12.12 전국도의회의원선거
- 1960.12.19 전국 제3대 시·읍·면의회의원선거(울산50명)
- 1960.12.26 시·읍·면장 및 도의회의원선거
- 1960.12.29 도지사 선거
- 1961. 9. 1 지방의회 해산(5.16 군사혁명포고 제4호)

□ 1962. 6. 1 - 울산시 승격

- 1991. 3.26 전국 시·군기초의회의원선거(울산군14명)
- 1991. 6.20 전국 시·도광역의회의원선거
- 1991. 4.15 제1대 울산군의회개원
- 1991. 7. 8 제1대 경상남도의회개원

□ 울산시·군 통합이후

- 1995. 1. 1 울산시·군통합
- 1995. 1.10 울산시·군통합초대울산시의회개원(64명)
- 1995. 6.27 전국4대지방선거 실시
(시·도지사, 시·도의원, 시장·군수, 시·군의원)
- 1995. 7.10 제2대 경상남도의회개원
- 1995. 7.11 제2대 울산시의회개원

□ 울산광역시승격이후

- 1997. 7.15 초대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개원(14명)
- 1998. 6. 4 시장, 군수·구청장, 시의원, 군·구의원 4대지방선거 실시
- 1998. 7. 8 제2대 울주군의회개원(12명)
- 2002. 6.13 시장, 군수·구청장, 시의원, 군·구의원 4대지방선거 실시
- 2002. 7. 8 제3대 울주군의회개원(13명)

2. 역대의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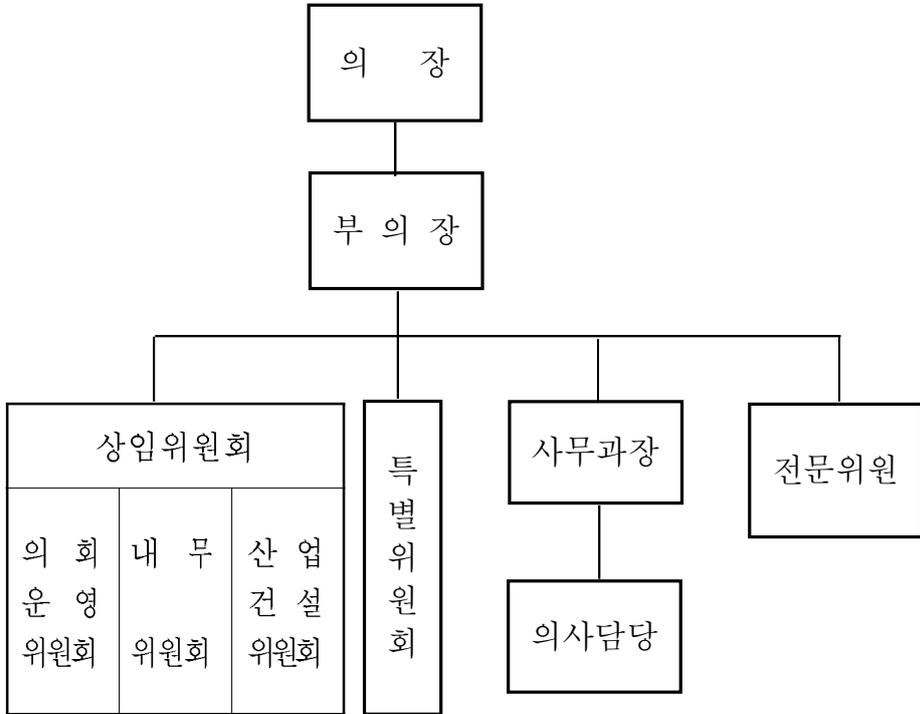
□ 의장명단

구 분	대 수	지 역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경상남도 울산군	1대	삼남	박명순	1932. 9.13	'91. 4.15~'92. 7.15	
	2대	농소	한성두	1941. 3.31	'92. 7.16~'93. 4.14	
	3대	온양	오세홍	1945. 3.28	'93. 4.15~'96.12.31	
울산광역시 울주군	1대	언양	김광수	1946. 3.28	'97. 7.15~'98. 6.30	
	2대	전반기	범서	이정우	1936.11. 7	'98. 7. 8~'00. 7. 7
		후반기	언양	변양섭	1946. 9.28	'00. 7. 8~'02. 6.30
	3대	전반기	언양	변양섭	1946. 9.28	'02. 7. 1~'04. 6.30
		후반기	서생	김용원	1948. 1. 1	'04. 7. 1~

□ 부의장명단

구 분	대 수	지 역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경상남도 울산군	1대	서생	김용원	1948. 1. 1	'91. 4.15~'91.10.24	
	2대	웅촌	이동석	1950. 4.28	'91.10.25~'93. 4.14	
	3대	언양	김광수	1946. 3.28	'93. 4.15~'96.12.31	
울산광역시 울주군	1대	범서	이정우	1936.11. 7	'97. 7.15~'98. 6.30	
	2대	전반기	언양	변양섭	1946. 9.28	'98. 7. 8~'00. 7. 7
		후반기	서생	이보근	1951. 7.10	'00. 7. 8~'02. 6.30
	3대	전반기	청량	김철준	1956.10. 9	'02. 7. 1~'04. 6.30
		후반기	두동	서우규	1955. 2.20	'04. 7. 1~

3. 의회기구표



○ 사무과 직원현황 : 정원 16명, 현원 16명

구분	계	일반직				기능직
		5급	6급	7급	8급	
정원	16	3	2	4	1	6
현원	16	3	2	4	1	6

□ 의장단

대 수	구 분	지 역	성 명
3대 전반기	의 장	언양	변양섭
	부의장	청량	김철준
3대 후반기	의 장	서생	김용원
	부의장	두동	서우규

□ 상임위원회

○ 3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현황

의회운영위원회		내 무 위 원 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석암	위원장	서완영	위원장	서우규
간 사	김진근	간 사	김지호	간 사	이몽원
위 원	이몽원 최인식 이순걸 김지호 신동두	위 원	최인식 김철준 김석암 신동두	위 원	이순걸 송정문 김용원 김진근

○ 3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현황

의회운영위원회		내 무 위 원 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몽원	위원장	김진근	위원장	송정문
간 사	최인식	간 사	이몽원	간 사	이순걸
위 원	변양섭 이순걸 김석암 서완영 김지호	위 원	변양섭 서완영 김지호 신동두	위 원	서우규 최인식 김경술 김석암

○ 소관부서

위원회별	위원수	소관부서
의회운영위원회	7명	의회사무과
내무위원회	6명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국 보건소, 읍·면
산업건설위원회	6명	경제사회국, 건설도시국, 사회복지사무소

□ 직업별

계	농·축산업	제조업	상업	기타	비고
13	5	1	1	6	-

□ 연령별

계	30~39	40~49	50~59	60~
13	1	6	5	1

4. 의회시설

제1회의실 (33.12평)	내무 위원장실 (13.52평)	의회운영 위원장실 (13.52평)	산업건설 위원장실 (13.52평)	제2회의실 (33.12평)		
복도						
X	집행부 대기실	X	화장실	화장실	민원 상담실 (11평)	의원집무실 (27.14평)

(신관청사 3층)

본회의장 (86평)	의회 자료실 (10평)	전문 위원실 (12.16평)	부의장실 (14.68평)	부속 실 (12.27평)	의장실 (20.69평)
	기계실	복도			
	X	화장실	화장실	의회사무과	문서고

(신관청사 4층)

제2절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

1. 지방의회의 권한

의회는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형식적으로 분류하면 의결권, 감사권, 자율권, 선거권, 청원처리권, 의견표명권, 서류제출(자료)요구권, 출석요구 및 질문권 등이 있다.

○ 의결권

의회의 권한 중 가장 중요한 권한으로서 자치단체 또는 의회 자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이다. 의결권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개폐하고,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확정·승인하는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한 17가지 사항과 중요정책을 심의·의결한다.

○ 행정감시권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기관(공무원)의 출석답변, 자료 및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청원 수리권

의회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청원을 수리할 수 있으며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제출해야 하고 1인 이상의 소개의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하는 것이나 동일기관에 2건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과 법령에 위배되는 것일 때에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1장 의회현황

○ 자율권과 선거권

의회는 다른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등)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법령 및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조직권, 의사자율권, 의원 신분 사정권 등 독자적인 결정권한을 가지며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선거권을 가진다.

○ 의견표명권(의견제시권)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사결정권은 없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서류제출(자료) 요구권

행정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전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전의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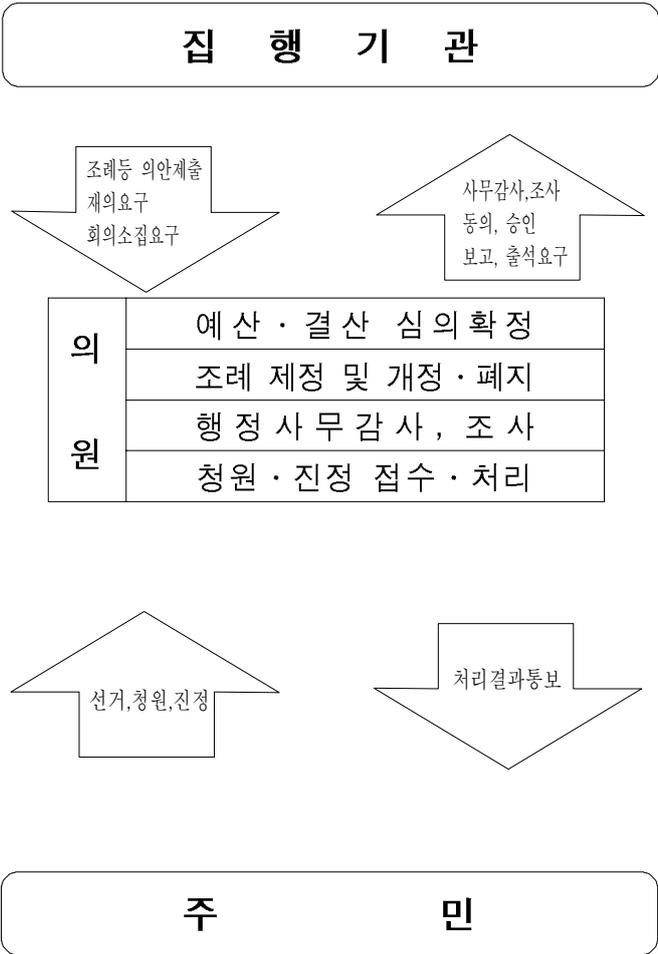
○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본회의와 위원회에서 행정사무집행 또는 안전 심사와 관련되는 질의를 하거나 질문하기 위하여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2. 지방의회의 역할

의회는 주민대표기능, 자치입법기능,
행정감시기능 등 크게 3가지 역할을 한다.

- 예산안 의결, 결산안 승인, 청원·진정 처리
-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제정 및 개정·폐지
- 행정사무감사, 조사, 동의, 승인, 보고



3. 지방의회 소집 및 회기

가. 소집권자

- 의회 의장
- 총선거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 장

나. 소집 요구권자

- 정례회 : 별도소집 요구하지 않음
- 임시회 : 군수 및 재적의원 3분의1이상 요구시

다. 소집기간

- 정례회 : 연2회 35일이내
 - 제1차 정례회 : 매년 7월 10일(총선거가 실시되는 해는 9, 10월)
 - 제2차 정례회 : 매년 11월 28일
- 임시회 : 연80일중 정례회 회기기간을 제외한 일수(매회기 15일 이내)

라. 소집공고

- 집회일 5일전까지 공고
-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 게시판 게시로 공고

마. 부의안건 공고

- 자치단체장은 의회에 부의안건이 있을 때 사전 공고

4. 지방의회 운영

가. 의사일정

- 전체일정 :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
- 의사일정 변경 :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5분의1이상
의 동의로 본회의에서 결정

나. 정족수

- 의정정족수 : 재적의원 1/3이상 출석(회의를 발의하는데 필요한 요건)
- 의결정족수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의안발의 및 의결정족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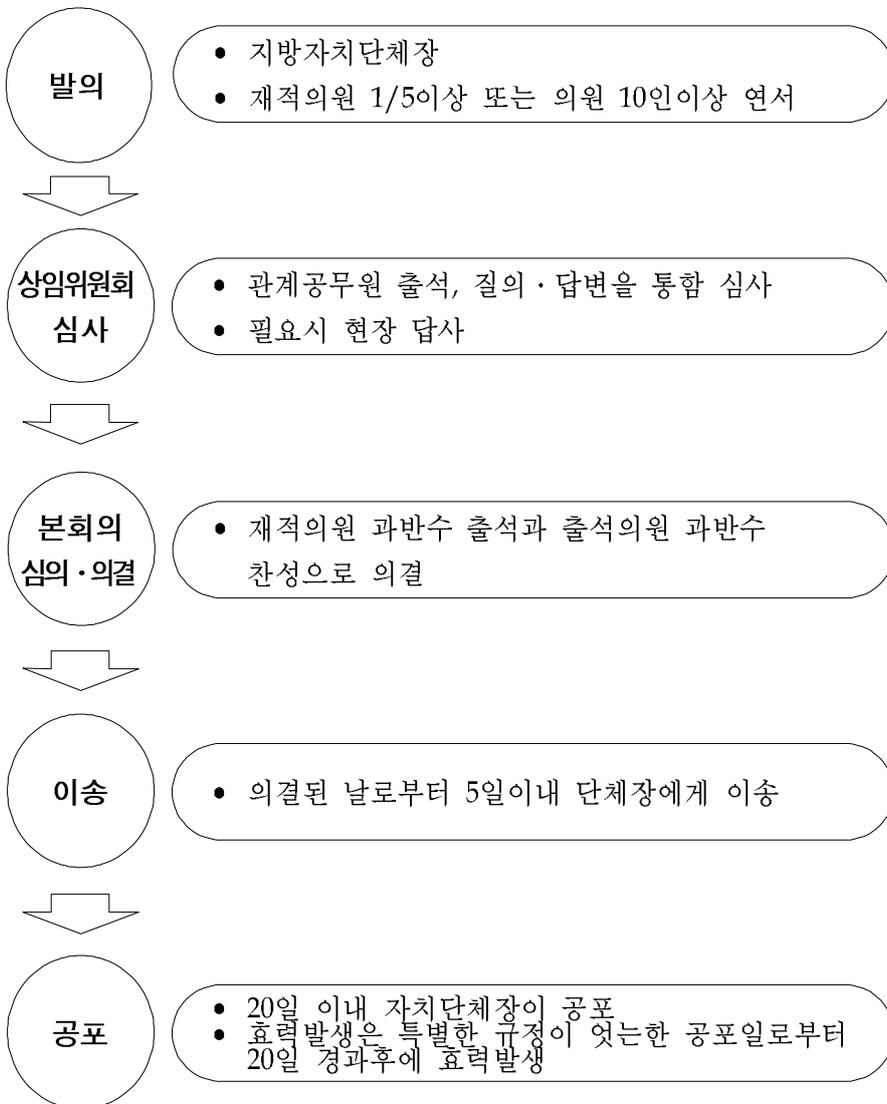
안 건	발의정족수	의결정족수
일반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적의원 1/5이상 • 의원 10인 이상 • 군수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재의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수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적의원 1/3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임시회소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적의원 1/3이상 • 군수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일 이내 임시회 소집
위원회 폐기안건을 본회의 부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적의원 1/3이상 • 의장의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 부의
회의 비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 3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석의원 2/3이상 찬성 •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휴회중 회의재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적의원 1/3이상 • 의장이 필요 또는 군수가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가 있으면 회의재개
자치단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수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의장 불신임 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적의원 1/4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징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사과·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제명 : 재적의원 2/3이상 찬성

5. 의안 등 처리절차

가.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이라 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부담을 덜어주는 조례와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조례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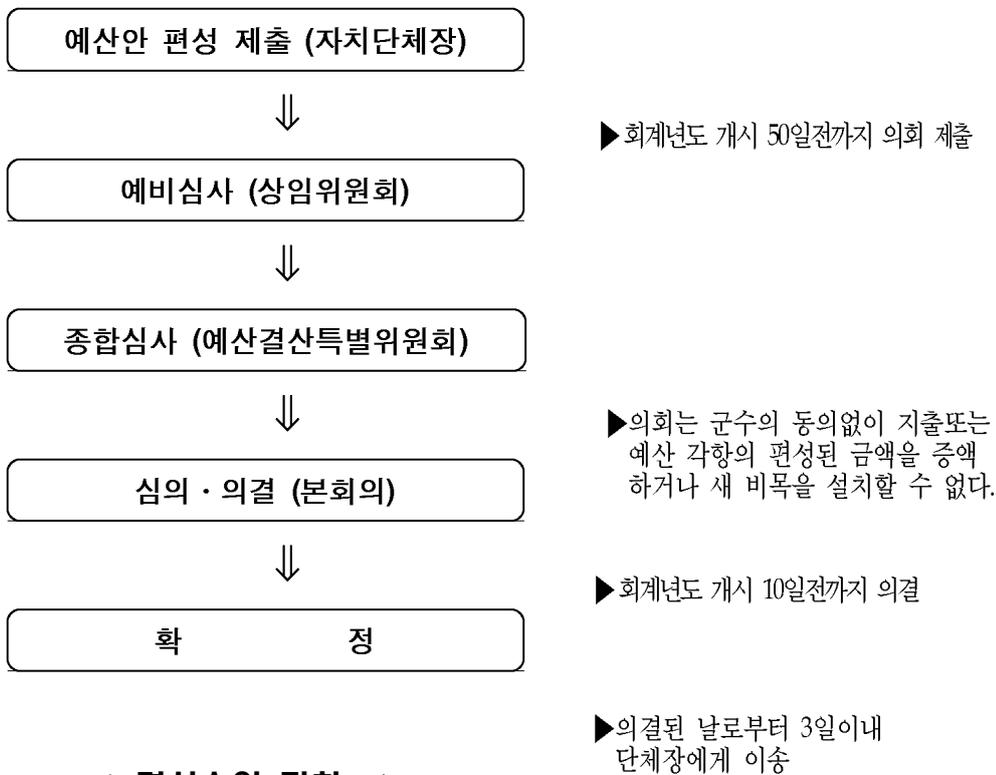
▶ 조례제정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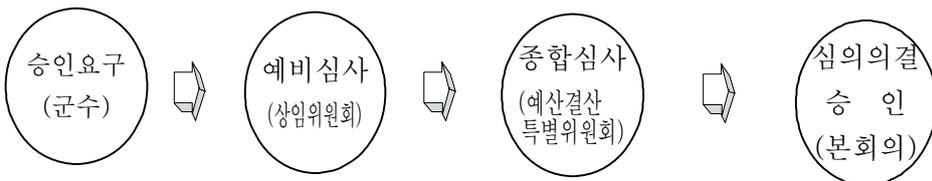
나. 예산안 심의·확정 및 결산승인

예산은 일정한 회계연도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화폐단위로 표시한 수입·세출에 관한 계획이며,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조직의 재정상태를 묘사한 정보이다. 예산은 자치단체장이 편성·제출하며, 지방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심의·의결한다. 결산승인은 한해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한 예산이 적법·타당하게 운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로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이다.

▶ 예산·결산안 처리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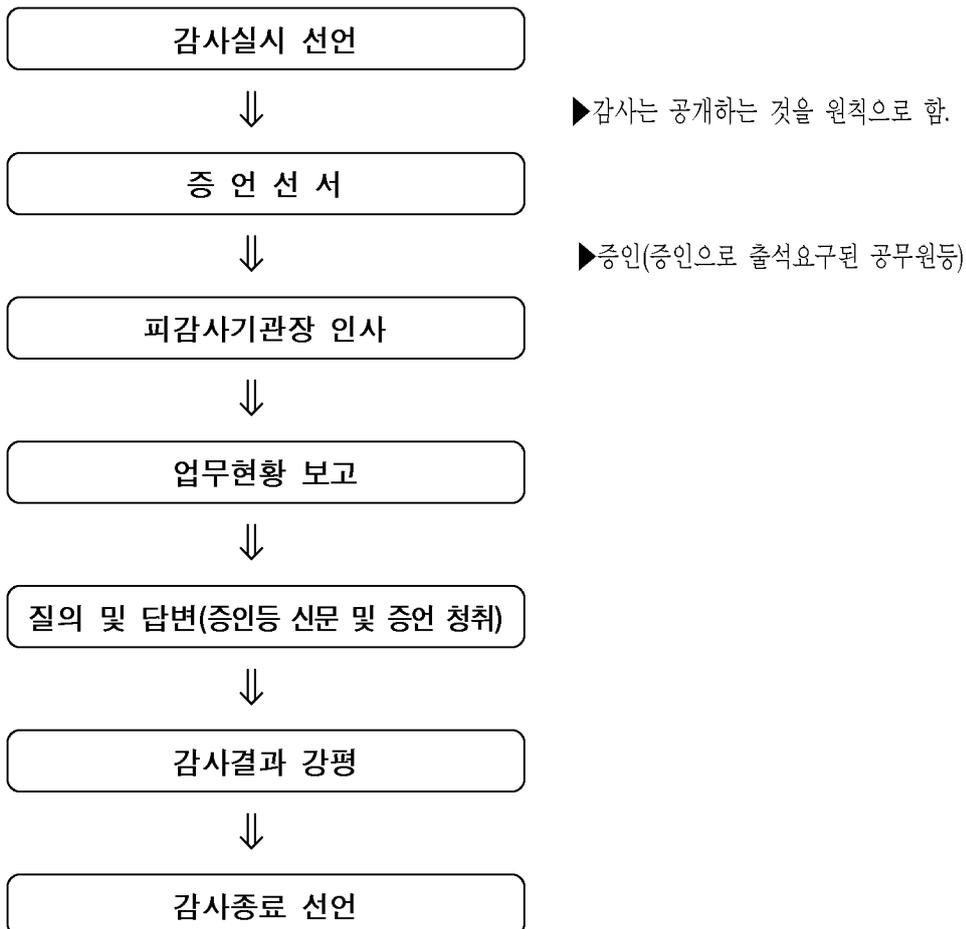
▶ 결산승인 절차 ◀



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재적의원 1/3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확인, 서류제출요구,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절차 ◀



라. 청원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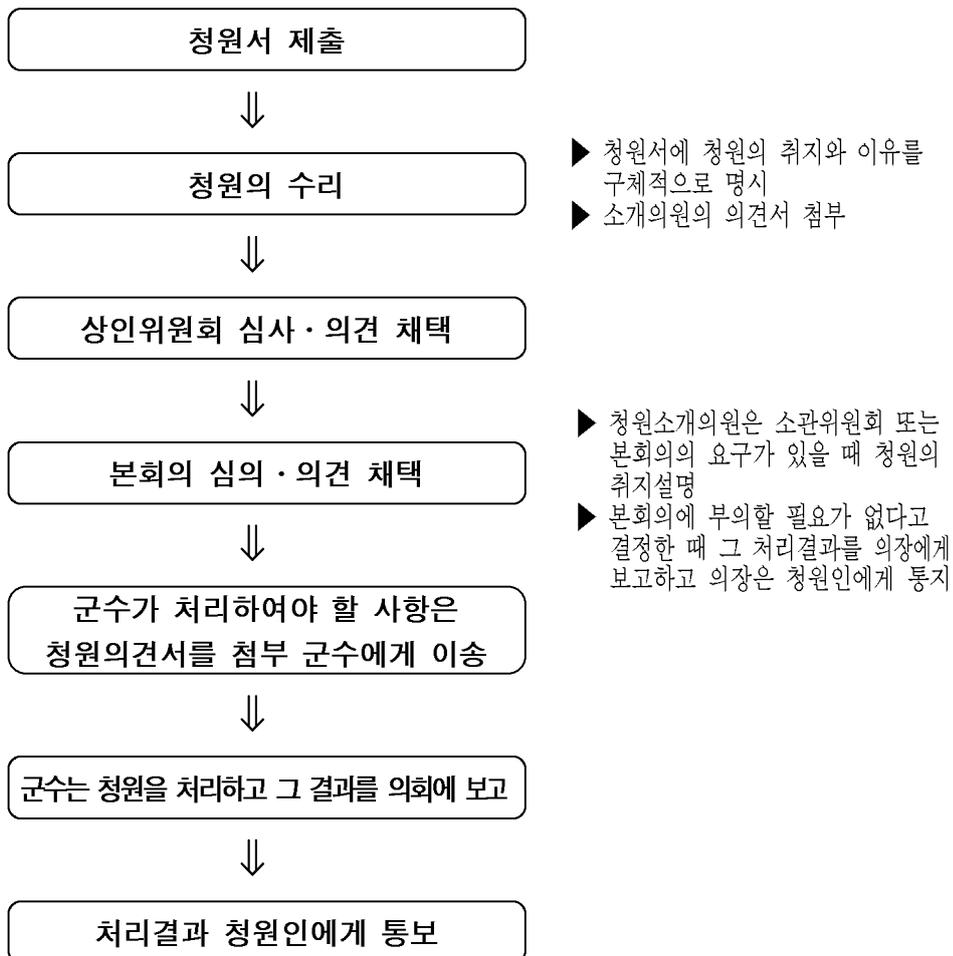
청원이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관한 희망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그 해결을 요구하는 제도이다.

청원이 아래에 해당 될 때에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것
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3.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청원 처리절차 ◀



제3절 울주군 현황

1. 연혁

□ 부족국가

- 삼한시대 진한에 속하였으며, 굴아화촌이라는 촌락 형성

□ 삼국시대

- 신라5대 파사왕때 굴아화천에 현설치
- 경덕왕 16년 이름을 하곡으로 고쳐 임관군에 속함.

□ 고려시대

- 성종 14년(995년) 별호를 학성도호부라 칭함
- 현종 19년(1018년) 울주로 최초 지정

□ 조선시대

- 태종 13년(1413년) 울산군으로 개칭
- 선조 13년(1598년) 울산도호부로 승격
- 고종 32년(1895년) 울산군으로 개칭

□ 근 대

- 1914. 3. 1 언양군을 울산군에 통합
- 1931. 4. 1 울산읍으로 승격

□ 현 대

- 1962. 6. 1 울산시 승격으로 울산시에서 분리, 울산군을 울주군으로 개칭
- 1963. 1. 1 울주군 서생면을 동래군에 편입
- 1983. 2.15 양산군 서생면이 울주군에 편입
- 1991. 1. 1 울산군으로 명칭 변경
- 1995. 1. 1 울산시·군통합되어 울주구로 개칭
- 1995. 3. 2 농소면이 읍으로 승격
- 1996. 2. 1 온산면, 언양면이 읍으로 승격

- 1997. 7.15 울산광역시 울주군 승격(농소읍, 강동면 분리)
- 2001. 3. 1 온양면, 범서면이 읍으로 승격

2. 면적 및 행정구역

(2004. 6. 30 현재)

(광역시 : 1,056.35km²)

구분	계	온산읍	언양읍	온양읍	범서읍	서생면	청량면	웅촌면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삼남면	삼동면
면적(km ²)	755	37	69	64	77	37	60	52	63	79	123	31	62
법정리	118	13	15	10	10	10	9	9	8	9	13	5	7
행정리	319	39	35	31	47	21	28	26	15	17	22	23	15
자연부락	452	17	50	44	62	23	49	17	41	36	54	37	22
만	1,492	133	224	209	327	69	163	81	40	42	88	95	21

□ 면적 754.9km²
(광역시의 7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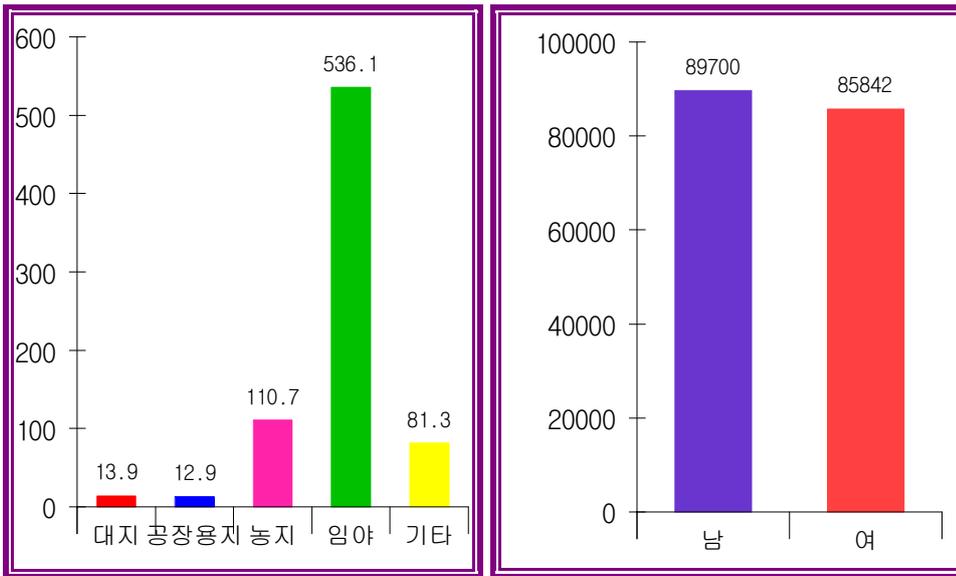
□ 인구 175,542명
- 가구수 : 60,070세대
- 인구밀도 :232.5명/km²

3. 행정조직

(2004. 6. 30 현재)

□ 기 구

제1장 의회현황



본 청	3국, 2담당관, 14과, 1사업소, 76담당
의 회	1과, 3전문위원, 1담당
읍 · 면	4읍, 8면, 52담당

□ 공무원 정원 (단위:명)

계	본청	의회	보건소	읍·면
672	406	16	68	182

□ 직급별 현황 (단위:명)

계	일 반 직						기능직	고용직	별정직	정무직
	소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이하				
672	573	5	34	138	183	213	83	2	13	1

□ 연도별 변동사항 (단위:명)

1998년이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630	569	577	575	560	584	630	6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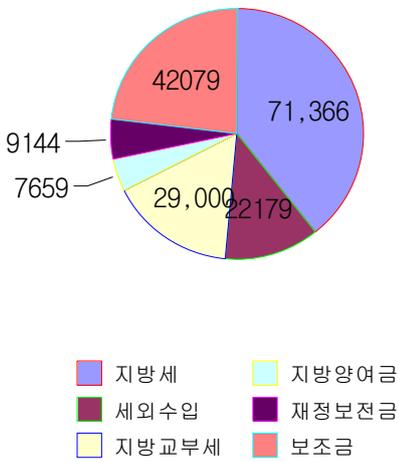
4. 예산규모

(2004. 6. 30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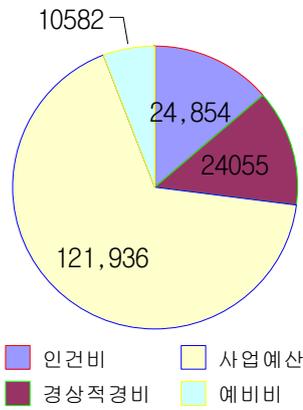
□ 2004년도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계	185,107	100.00%
일 반 회 계	181,427	98.01%
특 별 회 계	3,680	1.99%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425	0.23%
의 료 보 호 기 금	36	0.02%
생활보호자생활안정기금	519	0.28%
주 차 장	385	0.21%
발전소주변지역지원	2,160	1.17%
농공단지조성사업	37	0.02%
댐주변지원사업	118	0.06%

□ 일반회계 세입



□ 일반회계 세출



5. 도시기반시설

(2004. 6. 30 현재)

□ 주택

(단위 : 호)

185,107백만원
(100%)

185,107백만원
(100%)

읍·면별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비거주용
계	25,158	25,056	857	1,917	822
온산읍	3,248	2,610	224	447	304
언양읍	2,521	2,462	487	616	252
온양읍	2,189	5,825	8	218	88
범서읍	1,802	8,507	64	104	22
서생면	2,214	289	34	60	98
청량면	2,814	933		105	2
웅촌면	1,987	1,238		31	2
두동면	1,323				2
두서면	1,545				49
상북면	2,179	1,042		12	3
삼남면	2,669	2,150	40	324	
삼동면	667				

□ 국토이용계획

(단위 : km²)

계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775.05	395.90		252.723	63.551	42.876

□ 도시계획

(단위 : km²)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기타(미지정)
395.90	15.78	0.86	30.19	349.07	

□ 도로

(단위 : km)

제1장 의회현황

구 분	노선수	총연장	도 로 포 장		비 고
			포 장	포장률(%)	
계	161	827,287	562,313	68	
고속도로	2	41,140	41,140	100	
일반국도	5	138,847	127,204	91	
지 방 도	1	13,500	12,900	95	
군 도	29	287,200	208,124	72	
농어촌도로	124	346,600	172,945	49	

□ 자동차등록

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비고
64,801	44,238	5,409	14,589	565	

□ 온산항 항만시설 능력

안벽연장(잔교포함)	접안능력	연간하역능력	항내 수면적
64,801m	1,271천톤	4,084천톤	2,016만 m ² (609만평)

□ 국가공업단지

구 분	총면적(m ²)	업체수	종업원수	생산액(억원)
온산공단	5,217	217	9,812	15,807

□ 농공단지

단지별	조성규모 (천평)	압 주			미 입 주	
		업체수	면 적	종업원수	업체수	면적
계	330.80	29	330.80	2,424	-	-
두동	69.60	4	69.60	289	-	-
두서	122.65	15	122.65	982	-	-
상북	138.55	10	138.55	1,153	-	-

□ 장애인 복지시설

(단위 : 명)

시설명	소재지	면 적 (㎡)		수용인원 (정원/현원)	관리부서	비고
		부지	건물			
혜진원	언양읍 반천리 893-2	5,950	993.45	30/30	복지사업과	

□ 아동보육시설

(단위 : 개소, 명)

구분	계	공립	민간	직장	가정	종교	법인
시설수	124	5	67	1	36	4	11
이용인원	5,021	348	3,332	51	556	248	486

□ 노인복지시설

(단위 : 개소, 명)

구분	계	요양시설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시설	노인지회
시설수	325	5	-	317	2	1
이용인원	25,524	176	-	12,463	10	12,875

□ 의료기관

(단위 : 개소)

종합병원	병원	의 원				보건소 (지소·진료소)	비고
		소계	일반	치과	한의원		
1	7	95	53	24	18	21	.

□ 교육기관현황

(단위 : 개, 명)

구 분	계	초등(분교)	중등	고등	대학	비고
학교수	49(3)	30(3)	10	8	1	
학생수	34,327	21,427	5,326	5,346	2,228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제1절 의회운영 현황

제2절 주요 의정활동 현황

제3절 회기별 의안 처리현황

제4절 예산 및 결산 처리현황

제5절 행정사무감사

제1절 의회운영 현황

1. 총괄

구분	회기수			회의일수			비고
	계	정례회	임시회	계	정례회	임시회	
계	19	4	15	172	68	104	
2002년 7.1이후	7	2	5	63	33	30	
2003년	8	2	6	80	35	45	
2004년 6.30현재	4		4	29		29	

2. 회기 일정표

구분	회수별	회기	회의일수
2002년	50	7. 8 ~ 7. 9	2일
	51	7.22 ~ 7.29	8일
	52(제1차 정례회)	9. 9 ~ 9.14	6일
	53	9.26 ~ 10. 7	12일
	54	10.16 ~ 10.19	4일
	55	11.19 ~ 11.22	4일
	56(제2차 정례회)	11.28 ~ 12.24	27일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구분	회수별	회기	회의일수
2003년	57	3.11 ~ 3.14	4일
	58	3.27 ~ 3.29	3일
	59	5.28	1일
	60	6. 9 ~ 6.21	13일
	61(제1차 정례회)	7.10 ~ 7.18	9일
	62	10. 4 ~ 10.16	13일
	63	10.27 ~ 11. 6	11일
	64(제2차 정례회)	11.28 ~ 12.23	26일
2004년	65	1.28 ~ 2. 4	8일
	66	3.24 ~ 3.26	3일
	67	5.18 ~ 5.20	3일
	68	6.19 ~ 7. 3	15일

제2절 주요 의정활동 현황

1. 안건처리실적

○ 총 괄

구분 유형별	접수	처리	처 리 내 용						미처리	비고
			가결		부결	폐기	철회	기타		
			원안	수정						
총계	117	116	72	34	4		1	5	1	
예산(결산)안	12	12	5	7						
조례안	70	69	47	19	3				1	
동의·승인안	1	1	1							
결의·건의안	1	1						1		
규칙안	3	3	3							
기타	30	30	16	8	1		1	4		

○ 2002년도(7.1 이후)

구분 유형별	접수	처리	처 리 내 용						미처리	비고
			가결		부결	폐기	철회	기타		
			원안	수정						
총계	37	37	28	8				1		
예산(결산)안	5	5	2	3						
조례안	17	17	14	3						
동의·승인안	1	1	1							
결의·건의안										
규칙안	3	3	3							
기타	11	11	8	2				1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 2003년도

구분 유형별	접수	처리	처 리 내 용						미처리	비고
			가결		부결	폐기	철회	기타		
			원안	수정						
총계	53	53	32	15	3			3		
예산(결산)안	6	6	3	3						
조례안	33	33	23	8	2					
동의·승인안										
결의·건의안	1	1						1		
규칙안										
기타	13	13	6	4	1			2		

○ 2004년도(6.30 한)

구분 유형별	접수	처리	처 리 내 용						미처리	비고
			가결		부결	폐기	철회	기타		
			원안	수정						
총계	27	26	12	11	1		1	1	1	
예산(결산)안	1	1		1						
조례안	20	19	10	8	1				1	
동의·승인안										
결의·건의안										
규칙안										
기타	6	6	2	2			1	1		

2. 안건별 처리 결과

회수	의안 번호	의안명	발의일자	발의자	처리현황	
					의결일자	결과
50	1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위원회 조례개정조례안	2002. 7. 2	김석암의원 외3명	2002. 7. 8	원안가결
50	2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공인 조례중개정조례안	2002. 7. 2	김석암의원 외3명	2002. 7. 8	원안가결
50	3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회의규 칙중개정규칙안	2002. 7. 2	김석암의원 외3명	2002. 7. 8	원안가결
51	6	울산광역시울주군토지평가위 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2002. 7.12	울주군수	2002. 7.29	원안가결
51	7	울산광역시울주군국토이용관 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 조례안	2002. 7.12	울주군수	2002. 7.29	원안가결
51	8	울산광역시울주군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에위한조례폐지조례안	2002. 7.12	울주군수	2002. 7.29	원안가결
51	9	울산광역시울주군보건진료소 운영협의조례중개정조례안	2002. 7.12	울주군수	2002. 7.29	원안가결
51	11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2. 7.23	울주군수	2002. 7.29	원안가결
51	12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기 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 조례안	2002. 7.23	김진근의원 외8명	2002. 7.29	원안가결
51	13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 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 정조례안	2002. 7.23	김진근의원 외8명	2002. 7.29	원안가결
51	14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기 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	2002. 7.23	김진근의원 외8명	2002. 7.29	원안가결
51	15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청원심 사규칙중개정규칙안	2002. 7.23	김진근의원 외8명	2002. 7.29	원안가결
52	4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2. 7. 3	울주군수	2002. 9.14	원안가결
52	5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2. 7. 3	울주군수	2002. 9.14	원안가결
53	18	2002년제2회일반·특별회계세 입·세출추가정예산안	2002. 9.16	울주군수	2002.10. 7	수정가결
54	17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 경안의결의건	2002. 9.16	울주군수	2002.10.19	수정가결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회수	의안 번호	의안명	발의일자	발의자	처리현황	
					의결일자	결과
54	20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2.10. 5	울주군수	2002.10.19	수정가결
54	21	울산광역시울주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2.10. 5	울주군수	2002.10.19	원안가결
55	22	신고리원전1,2호기건설을위한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	2002.10.19	울주군수	2002.11.22	의견서 채택
55	23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동의안	2002.10.24	울주군수	2002.11.22	원안가결
55	24	울산광역시울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2002.10.25	울주군수	2002.11.22	원안가결
55	25	울산광역시울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002.10.25	울주군수	2002.11.22	수정가결
55	26	울산광역시울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2.10.31	울주군수	2002.11.22	원안가결
55	27	울산광역시울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2.10.31	울주군수	2002.11.22	원안가결
55	28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	2002.11. 7	울주군수	2002.11.22	원안가결
55	29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2002.11. 7	울주군수	2002.11.22	원안가결
56	31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2.11.21	울주군수	2002.12.16	수정가결
56	32	2003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2002.11.21	울주군수	2002.12.16	원안가결
56	33	2003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2002.11.21	울주군수	2002.12.16	원안가결
56	34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2002.11.21	울주군수	2002.12.16	원안가결
56	35	2003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2.11.21	울주군수	2002.12.16	원안가결
56	36	2003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2002.11.21	울주군수	2002.12.16	원안가결
56	37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2002.11.22	울주군수	2002.12.16	수정가결
56	39	2002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2.12. 9	울주군수	2002.12.24	수정가결

제2절 주요 의정활동 현황

회수	의안 번호	의안명	발의일자	발의자	처리현황	
					의결일자	결과
56	40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2002.12.17	울주군수	2002.12.24	원안가결
56	41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2.12.17	울주군수	2002.12.24	수정가결
56	42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2.12.17	울주군수	2002.12.24	원안가결
57	43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3. 1. 9	울주군수	2003. 3.14	원안가결
57	44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3. 2. 7	울주군수	2003. 3.14	원안가결
57	45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2003. 2.21	울주군수	2003. 3.14	원안가결
57	46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3. 2.21	울주군수	2003. 3.14	원안가결
57	47	울산광역시울주군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	2003. 2.21	울주군수	2003. 3.14	수정가결
57	49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	2003. 3. 3	울주군수	2003. 3.12	부결
57	50	울산광역시울주군아동위원회운영조례안	2003. 3. 4	울주군수	2003. 3.14	수정가결
57	51	울산광역시울주군체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3. 3. 4	울주군수	2003. 3.14	원안가결
58	48	울산광역시울주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2003. 2.25	울주군수	2003. 3.29	수정가결
58	53	지방소도읍육성사업계획수립을위한의견청취의건	2003. 3.20	울주군수	2003. 3.29	의견서 채택
58	55	경부고속철도울산통과노선사수에대한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의원결의문채택의건	2003. 3.27	서우규의원 외11명	2003. 3.29	결의문 채택
60	56	울산광역시울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003. 4. 9	울주군수	2003. 6.14	수정가결
60	57	울산광역시울주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003. 4.29	울주군수	2003. 6.14	수정가결
60	58	울산광역시울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2003. 4.29	울주군수	2003. 6.14	수정가결
60	59	울산광역시울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3. 4.29	울주군수	2003. 6.14	원안가결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회수	의안 번호	의안명	발의일자	발의자	처리현황	
					의결일자	결과
60	60	울산광역시울주군도로복구원인 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3. 4.29	울주군수	2003. 6.14	원안가결
60	61	울산광역시울주군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3. 4.29	울주군수	2003. 6.14	원안가결
60	6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 경의결의건	2003. 5.10	울주군수	2003. 6.14	수정가결
60	63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 례중개정조례안	2003. 5.14	울준군수	2003. 6.14	원안가결
60	64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3. 5.28	울주군수	2003. 6.21	수정가결
61	65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 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3. 5.31	울준군수	2003. 7.12	수정가결
61	66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3. 5.31	울주군수	2003. 7.12	원안가결
61	67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위임 조례중개정조례안	2003. 5.31	울주군수	2003. 7.12	원안가결
61	71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3. 6.27	울주군수	2003. 7.19	원안가결
61	72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 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3. 6.27	울주군수	2003. 7.19	원안가결
61	73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 중개정조례안	2003. 6.27	울주군수	2003. 7.12	원안가결
61	74	울산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 프장)결정(변경)의견청취의건	2003. 7. 3	울주군수	2003. 7.12	의견서 채택
61	75	울산광역시울주군리개발위원 회조례중개정조례안	2003. 7. 3	김지호의원 외2명	2003. 7.12	원안가결
61	76	울산광역시울주군읍·면종합 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 례중개정조례안	2003. 7. 3	김지호의원 외2명	2003. 7.12	원안가결
62	78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3. 7.31	울주군수	2003.10.16	원안가결
62	79	울산광역시울주군음식물쓰레 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3. 7.31	울주군수	2003.10.16	원안가결
62	80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 조례안	2003. 8.22	울주군수	2003.10.16	원안가결

제2절 주요 의정활동 현황

회수	의안 번호	의안명	발의일자	발의자	처리현황	
					의결일자	결과
62	81	울산광역시울주군제2의건국범 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2003. 8.22	울주군수	2003.10.16	원안가결
62	82	울산광역시울주군종합사회복 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3. 8.22	울주군수	2003.10. 8	부결
62	83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 중개정조례안	2003. 8.22	울주군수	2003.10.16	원안가결
62	84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 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3. 8.22	울주군수	2003.10.16	원안가결
62	85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 경의결의건	2003. 9.26	울주군수	2003.10.16	수정가결
62	86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3. 9.25	울주군수	2003.10.16	수정가결
63	89	울산광역시울주군공립보육시 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 정조례안	2003.10.20	울준군수	2003.11. 6	원안가결
63	90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3.10.20	울준군수	2003.11. 6	수정가결
63	9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3.10.20	울준군수	2003.11. 6	수정가결
63	92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세입포 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2003.10.31	울주군수	2003.11. 6	부결
64	94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 중개정조례안	2003.11.20	울주군수	2003.12.16	원안가결
64	95	울산광역시울주군군립공원관 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3.11.20	울주군수	2003.12.16	원안가결
64	96	2004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 기금운용계획안	2003.11.21	울주군수	2003.12.16	원안가결
64	97	2004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2003.11.21	울주군수	2003.12.16	원안가결
64	98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2003.11.21	울주군수	2003.12.16	원안가결
64	99	2004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3.11.21	울주군수	2003.12.16	원안가결
64	100	2004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2003.11.21	울주군수	2003.12.16	원안가결
64	101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 입·세출예산안	2003.11.21	울주군수	2003.12.16	수정가결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회수	의안 번호	의안명	발의일자	발의자	처리현황	
					의결일자	결과
64	105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3.12. 9	울주군수	2003.12.23	원안가결
64	106	울산광역시울주군공무원복무 조례중개정조례안	2003.12. 9	울주군수	2003.12.23	수정가결
64	107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3.12.13	울주군수	2003.12.23	원안가결
65	103	울산광역시울주군도시계획조례안	2003.12. 3	울주군수	2004. 2. 4	수정가결
65	104	울산광역시울주군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2003.12. 3	울주군수	2004. 2. 4	원안가결
65	109	울산광역시울주군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2003.12.24	울주군수	2004. 2. 4	원안가결
65	110	울산광역시울주군1회용품사용 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 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2003.12.24	울주군수	2004. 2. 4	수정가결
65	111	울산광역시울주군사회단체보 조금지원조례안	2003.12.31	울주군수	2004. 2. 4	수정가결
65	112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의원의 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 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4. 1.14	이몽원의원 외4명	2004. 2. 4	원안가결
65	11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4. 1.20	울주군수	2004. 2. 4	원안가결
66	116	울산광역시울주군종합사회복 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4. 2.10	울주군수	2004. 3.25	부결
66	117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자녀장 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004. 3.10	울주군수	2004. 3.26	수정가결
66	118	울산광역시울주군새마을장학 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004. 3.10	울주군수	2004. 3.26	수정가결
66	119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 정조례안	2004. 3.10	울주군수	2004. 3.26	원안가결
66	120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4. 3.10	울주군수	2004. 3.26	원안가결
67	122	울산광역시울주군학교급식비 지원조례안	2004. 4.20	울주군수	2004. 5.20	심사보류
67	123	원전소재지방자치단체행정협 의회운영규약안	2004. 4.23	울주군수	2004. 5.20	원안가결
67	124	망양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계획변경의견청취의견	2004. 5. 8	울주군수	2004. 5.20	의견서 채택

제2절 주요 의정활동 현황

회수	의안 번호	의안명	발의일자	발의자	처리현황	
					의결일자	결과
67	125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4. 5.11	울주군수	2004. 5.20	수정가결
	127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4. 6. 4	울주군수		철회
68	128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4. 6. 8	울준군수	2004. 7. 1	수정가결
68	129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	2004. 6. 8	울주군수	2004. 6.24	수정가결
68	130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 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4. 6. 8	울주군수	2004. 6.24	수정가결
68	131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4. 6. 8	울주군수	2004. 6.24	원안가결
68	132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위임 조례중개정조례안	2004. 6. 8	울주군수	2004. 6.24	원안가결
68	133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004. 6. 8	울주군수	2004. 6.24	수정가결
68	134	울산광역시울주군주민투표조 례안	2004. 6. 8	울주군수	2004. 6.24	수정가결
68	136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	2004. 6.25	김진근의원 외3명	2004. 7. 1	원안가결
68	137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에출석· 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4. 6.25	김진근의원 외3명	2004. 7. 1	원안가결
68	138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 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4. 6.30	울준군수	2004. 7. 1	원안가결

제3절 회기별 의안 처리현황

□ 제50회 임시회

1. 개최배경

2002년도 6월 13일 4대 동시지방선거에서 13인의 의원이 당선되어 제3대 울주군의회가 개원되었고,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주군수가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여 2002년 7월 8일 제50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2. 의사일정

제50회울주군의회(임시회)

2002. 7. 8~ 7. 9(2일간)

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2. 7. 8 (월) 10:00	1	1. 의장, 부의장 선거의견 2. 제50회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견 3.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6. 제50회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선임의견	
14:30		(개원기념행사)	
2002. 7. 9 (화) 10:00	2	1. 상임위원회위원장선거의견 2. 상임위원회위원(내무,산업건설)선임의견 3.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견	

3. 주요안건 처리 결과

가. 제3대 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의견

- 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 의원인 이정우의원의 진행으로 이루어졌으며, 제3대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 의장에는 언양읍 출신인 변양섭의원이, 부의장 선거는 청량면 출신인 김철준의원이 선출되어 전반기 의장단을 구성하고, 1차 본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개원식을 거행하였다.

나.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 7. 2 김석암의원외 3명
- 의결일자 : 2002. 7. 8

2) 제안이유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등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의원정수가 13명이 되어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효율적인 의정활동 추진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본 조례를 전문개정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의회운영위원회(7명), 내무위원회(6명), 산업건설위원회(6명)로 3개의 상임위원회를 설치
-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 상임위원회의 직무 :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함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의회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 내무위원회 소관 : 총무국,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보건소, 읍·면사무소 소관에 관한 사항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경제사회국, 건설도시국 소관에 관한 사항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다.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 7. 2 김석암의원의외 3명
- 의결일자 : 2002. 7. 8

2) 제안이유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등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의원정수가 13명이되어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직인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직인의 종류중 “특별위원회위원장”을 “상임위원회위원장”으로 함.
- 별표(제2조 관련) 공인의 규격 중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특별위원장인”을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상임위원장인”으로 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라.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3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 7. 2 김석암의원의외 3명
- 의결일자 : 2002. 7. 8

2) 제안이유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등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의원정수가 13명이 되어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의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본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의사일정 작성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본회의에 의 부의
- 위원회에서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음.
-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제51회 임시회

1. 개최배경

제51회 임시회는 울산광역시울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의 8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김석암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2002년 7월 13일 소집공고를 거쳐 2002년 7월 22일에 개최하였다.

2. 의사일정

제51회울주군의회(임시회)

2002. 7.22~ 7.29(8일간)

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2. 7.22 (월) 11:00	1	1. 제51회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 2. 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 3. 울산광역시울주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제51회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선임의건	
2002. 7.23 ~ 7.26 10:00		상임위원회활동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조례안심사)	연석회의
2002. 7.27 (토)		공 휴 일	
2002. 7.28 (일)		공 휴 일	
2002. 7.29 (월) 11:00	2	1.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 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2. 7.29 (월) 11:00	2	4.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5. 울산광역시울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울주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징수조례안 7. 울산광역시울주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 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 울산광역시울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 조례폐지조례안	

3. 주요안건 처리 결과

가. 울산광역시울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 7.12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2. 7.29

2) 제안이유

-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함에 있어 위원회 구성원중 당연직 위원 일부를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3) 주요골자

- 토지평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추가
 - 지방세과장, 민원지적과장, 건설과장, 농산과장, 도시과장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나. 울산광역시울주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의안번호 제7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 7.12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2. 7.29

2) 제안이유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징수의 효율적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과태료징수 적용범위
 - 토지허가 목적외 사용시 법 제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과한 과태료 징수시 적용
- 과태료의 귀속 : 수납과태료는 울주군의 수입으로 함.
- 과태료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다. 울산광역시울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8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 7.12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2. 7.29

2) 폐지이유

- '98.10. 1 지역의료보험조합이 해산되고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의 통합을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되면서 지역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군·읍·면 및 리·반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3) 심사결과 : 원안가결

라. 울산광역시울주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 7.12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2. 7.29

2) 제안이유

-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준칙안”에 의거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3) 주요골자

- 협의회외의 구성중 총회 운영의 실효성이 없어 총회에 관한 부분 삭제
-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위원회 구성을 12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개정
- 운영협의회 임원중 운영위원 12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개정
- 다음해 예산 편성 제출시기 및 승인시기 조정
 - 예산편성 제출시기 : 회계연도 개시 60일전까지 →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로
 - 승인시기 :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로.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마.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 7.23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2. 7.29

2) 제안이유

-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라 전문위원등 의회 기능보강을 위하여 증원 승인된 인력 6명을 정원의 총수에 반영하려고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증원되는 인원 6명을 명기
 - 정원의 총수 : 578명 → 584명 (증6명)
 - 1. 집행기관의 정원 : 567명 → 569명 (증2명)
 -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1명 → 15명 (증4명)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바.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 7.23 김진근의원외 8명
- 의결일자 : 2002. 7.29

2) 제안이유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등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상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전문위원의 역할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의장을 보좌하던 전문위원이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함.
-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 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사.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 7.23 김진근의원외 8명
- 의결일자 : 2002. 7.29

2) 제안이유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등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상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의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본 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행정사무감사를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실시
- 감사계획서를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
- 행정사무조사 발의시 조사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등을 기재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아.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14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 7.23 김진근의원외 8명
- 의결일자 : 2002. 7.29

2) 제안이유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등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상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의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본 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전문위원의 사무를 소관상임위원회별로 구분하여 분장
- 전문위원별 직급을 신설(별표)

위원회명	직 위	직 급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지방행정주사
내무위원회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자.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15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 7.23 김진근의원외 8명
- 의결일자 : 2002. 7.29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2) 제안이유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등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상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의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본 규칙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 기관이상에 제출되어 접수되지 아니한 청원의 이의신청이 이의 있다고 인정될 때,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접수
-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하던 청원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
- 위원회 청원심사 결과보고를 회부일로부터 10일 이내 → 20일 이내로 개정
- 본회의에서 소개의원의 취지설명 및 청원인 진술하는 조문 삭제
-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제52회 정례회

1. 개회배경

제52회 정례회는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02년 9월 2일 소집공고를 거쳐 2002년 9월 9일에 개회하였다.

2. 의사일정

제52회울주군의회(정례회)

2002. 9. 9~ 9.14(6일간)

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2. 9. 9 (월) 11:00	1	1. 제52회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울산광역시울주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제52회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2002. 9.10 ~ 9.11		상임위원회활동 (결산 및 예비비 심사)	
2002. 9.12 (목)		의회운영위원회활동 (결산심사)	
2002. 9.13 (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	
2002. 9.14 (토) 11:00	2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주요안건 처리 결과

※ 제4절 예산 및 결산 처리현황 참고.

□ 제53회 임시회

1. 개최배경

제53회 임시회는 2002년도 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김석암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2002년 9월 14일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2002년 9월 19일 소집공고를 거쳐 2002년 9월 26일에 개최하였다.

2. 의사일정

제53회울주군의회(임시회)

2002. 9.26~10. 7(12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2. 9.26 (목) 11:00	1	1. 제53회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울산광역시울주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제53회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2002. 9.27 ~10. 2		상임위원회활동	
2002.10. 3 (목)		공 휴 일	
2002.10. 4 ~10.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	
2002.10. 6 (일)		공 휴 일	
2002.10. 7 (월) 11:00	2	1.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3. 주요안건 처리 결과

※ 제4절 예산 및 결산 처리현황 참고.

□ 제54회 임시회

1. 개최배경

제54회 임시회는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중개정조례안외 1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김석암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2002년 10월 8일 소집공고를 거쳐 2002년 10월 16일에 개최하였다.

2. 의사일정

제54회울주군의회(임시회)

2002.10.16~10.19(4일간)

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2002.10.16 (수) 11:00	1	1. 제54회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 2. 울산광역시울주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제54회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선임의건	
2002.10.17 ~10.18		상임위원회활동	
2002.10.19 (토) 11:00	2	1.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2.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울주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4.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주요안건 처리 결과

가.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의안번호 제17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 9.16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2.10.19

2) 제안이유

- 진해해수욕장 종합행정봉사실외 2건 건물취득 (문화공보담당관실)
 - 기존 임해봉사실 건물의 노후 및 협소로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행정공무원, 경찰, 구조대원등의 합동근무가 불가하여 유기적인 업무협조에 어려움이 있음. 종합행정봉사실을 신축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나은 봉사행정을 제공코자 하며, 또한 현재 탈의실이 없어 피서객들의 불편이 많아 샤워장 및 탈의실 2동을 신축하여 피서객들의 편의를 제공코자 함.
- 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 및 건물취득 (총무과)
 - 청소년들의 건전한 활동공간을 확충하여 청소년의 역량을 개발함은 물론 특성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자기개발과 자질능력을 함양하고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함.
- 청량 어린이집 건립부지 및 건물취득 (복지위생과)
 - 청량면은 온산공단에 인접한 지역으로 맞벌이 가정이 많으며, 또한 저소득층 가정이 밀집되어 있음. 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도모와 보호자의 경제적,

제3절 회기별 의안처리 현황

사회적 활동기회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함.

3) 주요골자

○ 취득재산

- 토지(일반회계) : 5필지 11,410㎡ (2,315,000천원)
- 건물 : 5동 4,990㎡ (7,931,800천원)
 - 일반회계 : 2동 4,330㎡ (7,331,800천원)
 - 특별회계 : 3동 660㎡ (600,000천원)

○ 사업명별 취득물건 현황

구분		건수 (필지수, 동수)	면적 (㎡)	금액 (천원)	위치	비고
토지	청소년수련관	4	9,923	2,000,000	삼남.교동 292외 3	
	청량어린이집	1	1,487	315,000	청량.덕하 415-4	
건물	진하해수욕장 종합행정봉사실	1	330 (2층)	300,000	서생.진하 84-6	콘크리트 스라브
	진하해수욕장 샤워장 및 탈의실	2	330 (1층)	300,000	서생.진하 298-18, 77-9	샤워장1동 탈의실1동
	청소년수련관	1	4,000 (지하1, 지상3층)	7,000,000	삼남.교동 292외 3	
	청량어린이집	1	330	331,800	청량.덕하 415-4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4) 심사결과 : 수정가결

5) 수정요지

- 시설의 활용도 측면과 예산의 투자액등 신중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설치 운영되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동일시설에 대한 현장방문 등 심도있는 재검토가 요구되어 「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 및 건물취득 건」을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에서 제외함.

나.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10. 5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2.10.19

2) 제안이유

- 내수면개발촉진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법의 제명이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서 내수면어업법으로 개정(2000.1.28 공포, 7.29시행)되어, 내수면어업법 제23조에 수수료를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낚시어선업법이 개정(2002.5.13공포, 11.14시행)되어 낚시어선업법 제21조의2 수수료 조항이 신설되어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내수면어업 면허신청 수수료 : 건당 9,500원

제3절 회기별 의안처리 현황

-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조류채취어업
- 내수면어업 허가신청 수수료 : 건당 9,500원
-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 낚시업, 낭장망어업
- 내수면어업 면허기간 연장허가신청 수수료 : 건당 2,500원
- 낚시어선업 신고 수수료 : 건당 9,000원

4) 심사결과 : 수정가결

5) 수정요지

- 부칙 본문 단서중 “다만, 별표1중 제2호”를 “다만, 별표1중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면허·교부·승인·입찰참가신청등)의 제2호”로 수정하여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

다. 울산광역시울주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1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10. 5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2.10.19

2) 제안이유

- 최근 단독주택에 속하는 다가구(원룸)주택과 다세대주택등의 건축물 건립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으로는 주차장 부족으로 도심지 및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골자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 단독주택과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분리하여
 -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경우 설치기준 시설면적을 33%정도 강화하고 세대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 1대 이상으로 함.
 - 공동주택의 경우 시설면적 120㎡당 1대에서 85㎡당 1대로하고, 세대당 0.7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 0.7대 이상으로 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제55회 임시회

1. 개최배경

제55회 임시회는 신고리원전1,2호기건설을위한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의견청취의견외 7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김석암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2002년 11월 12일 소집공고를 거쳐 2002년 11월 19일에 개최하였다.

2. 의사일정

제55회울주군의회(임시회)

2002.11.19~11.24(4일간)

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2002.11.19 (화) 10:00	1	1. 제55회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울산광역시울주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제55회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2002.11.20 ~ 11.21		상임위원회활동	
2002.11.22 (금) 11:00	2	1.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2.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3.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동의안 4. 신고리원전 1,2호기 건설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청취의건 5. 울산광역시울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울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울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8. 울산광역시울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 주요안건 처리 결과

가. 신고리원전1,2호기건설을위한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
에따른의견청취의견 (의안번호 제22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10.19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2.11.22

2) 제안이유

- 신고리원전 1,2호기 건설부지(부대시설로함) 조성을 위해 한
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에서 공유수면기본계획반영요청서를
울산광역시에 제출함에 따라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울주군 서생면 비학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대한 울주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함.

3) 주요골자

-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비학지구
- 면 적 : 7,000m² (2,118평)
- 시 행 자 :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 매립개요

매립면적	용 도			비고	
	지원설비용지	발전소설비용지	방파제		
계	221,000m ² (66,853평)	116,000m ² (35,090평)	51,000m ² (15,428평)	54,000m ² (16,335평)	
울주군	7,000m ² (2,118평)	7,000m ² (2,118평)	0	0	
기장군	214,000m ² (64,735평)	109,000m ² (32,972평)	51,000m ² (15,428평)	54,000m ² (16,335평)	

4) 심사결과 : 의견서 채택

5) 의 건 서

- 원전추가건설에 대한 다수의 반대의견이 있으나 국책사업으로 시행이 불가피할 경우 공유수면 매립시 어장의 잠재적 생산력 상실 등이 우려되므로 지역주민(어민)의 피해발생에 대한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나.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동의안 (의안번호 제23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10.24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2.11.22

2) 제안이유

-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에게 예측 가능한 보건행정의 발전상을 제시하고
- 지역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및 주민건강증진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료정책 수립에 유용한 자료축적을 위한 지역정보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음.

3) 주요골자

- 사업기간 : 2003년 ~ 2006년 (4년간)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 사업분야

- ① 핵심사업 : 2개분야 2개 단위사업
 - 노인보건사업, 학생구강보건사업
- ② 일반사업 : 5개분야 15개 단위사업
 - 행정위주사업
 - 의약무관리사업, 공중보건 의사 및 보건진료원 지도·감독
 - 생애주기별 보건사업
 - 영유아보건사업, 학생보건사업, 성인보건사업, 모성보건사업
 - 서비스제공 내용별 보건사업
 - 건강증진사업, 영양개선사업, 급만성전염병관리, 만성퇴행성질환관리, 정신보건사업, 한방무료진료사업, 희귀 난치성질환자 관리
 - 서비스제공 방법별 보건사업 : 1개분야
 - 방문간호사업
 - 기타보건사업 : 1개분야
 - 각종실험 및 검사
- ③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사업 : 3개분야 7개 단위사업
 - 보건소 조직 정비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정비
 - 인력개발계획
 - 시설 및 장비확충
 - 보건소 이전 : 서부지역일원
 - 통합보건지소 신축 : 남부지역일원
 - 진하보건진료소 신축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장비 확충
- ④ 지역내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연계계획
 - 보건사업, 진료사업, 기타부문

제3절 회기별 의안처리 현황

○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3,391,564	4,067,385	7,341,033	7,291,049	4,692,097
국	2,791,256	211,799	1,476,665	877,329
시	5,717,765	211,870	2,458,465	2,817,975
군	14,882,543	3,643,716	3,405,903	3,595,745
				4,237,179

4) 심사결과 : 원안가결(의견서 첨부)

5) 의 견 서

- 보건소이전 및 통합보건지소 설치계획에 따라 기존 보건지소가 폐지되는 해당 읍·면 주민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예방접종분야, 청량보건지소 폐지부분 재검토 등 특별대책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다. 울산광역시울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의안번호 제24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10.25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2.11.22

2)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관리법(2001.7.24) 및 동법시행령(2001.11.22)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하여, 옥외광고물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불법광고물로 인한 공중의 위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3) 주요골자

-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은 옥외광고물관련분야 공무원, 전문가로 구성 심의소위원회는 3인내지 5인 이내로 구성
- 위원회 심의사항
 - 표시면적 30제곱미터이상 지주간판
 - 1면의 표시면적 20제곱미터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
 -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안전도 검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및 건축사 관련 단체, 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취득자 및 단체
- 미풍양속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등 위반에 대한 조치 및 그 비용 징수
- 옥외광고물 수수료,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기준과 징수절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라. 울산광역시울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10.25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2.11.22

2) 제안이유

-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특례 및 일조권 등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경감토록 하는 등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존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한 특례규정 추가신설
 -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분할제한 면적이 미달될 경우 당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이 가능
- 건축물의 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대행하도록 함.
- 자연공원내 자연취락지구 및 집단시설지구의 건폐율, 용적률은 자연공원법을 적용토록 함.
- 준농림지역의 용적률을 현행 100퍼센트에서 80퍼센트 이하로 함.
-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한 가설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여 조례 운용상의 혼란을 방지함.

4) 심사결과 : 수정가결

5) 수정요지

- 법령(건축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사협회를 울산광역시 건축사회로 지역을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울산광역시 건축사회를 건축사협회로 수정함.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마. 울산광역시울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10.31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2.11.22

2) 제안이유

-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관 공동 위원장으로 규정함으로써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행정규제기본법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을 공동위원장(2인)으로 기능을 강화하며 부위원장 직제폐지
- 공동위원장 1인은 부군수가 되고, 1인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바. 울산광역시울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호)

제3절 회기별 의안처리 현황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10.31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2.11.22

2) 제안이유

- 2002년도 행정자치부주관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결과 개선대책 수용
 - 불용물품 처분제도 개선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예산절감.

3) 주요골자

- 불용물품중 활용가능품에 대한 소요조회의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 불용 결정함에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후 불용 결정한 사항을 불용 결정후 활용 가능품에 대하여 소요 조회로 변경하고
 - 공문으로 소요조회하는 절차를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조항 신설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사.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 (의안번호 제28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11. 7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2.11.22

2) 제안이유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 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 및 건물취득 (총무과)
 - 청소년들의 건전한 활동공간을 확충하여 청소년의 역량을 개발함은 물론 특성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자기개발과 자질능력을 함양하고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함.

3) 주요골자

- 취득재산
 - 토지(일반회계) : 4필지 9,923㎡ (2,000,000천원)
 - 건물(일반회계) : 1동 4,000㎡ (7,000,000천원)
- 취득물건 현황

구분		건수 (필지수, 동수)	면적 (㎡)	금액 (천원)	위치	비고
토지	청소년수련관	4	9,923	2,000,000	삼남.교동 292외 3	
건물	청소년수련관	1	4,000 (지하1,지상3층)	7,000,000	삼남.교동 292외 3	

-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계	계	1차년도 (2002년)	2차년도 (2003년)	3차년도 (2004년)
계	9,000,000	3,100,000	3,700,000	2,200,000
시비	4,900,000	1,750,000	1,700,000	1,450,000
군비	4,100,000	1,350,000	2,000,000	750,000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아.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의안번호 제2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11. 7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2.11.22

2) 제안이유

- 진하해수욕장 공중화장실 건립부지 및 건물취득 (문화공보담당관실)
 - 진하해수욕장내 공중화장실 부족으로 여름철 피서객 및 관광객의 불편이 많음. 인근 국유지를 매입하여 화장실을 설치하여 이용객의 편의도모 및 우리군의 관광 이미지를 제고코자 함.
- 별관청사 신축 건물 취득 (회계과)
 - 군청사 건물면적 부족으로 열악한 업무환경을 개선코자 목요장터 부지내에 별관청사를 신축한후 집행부 사무실 및 군금고(농협)를 이전하여 민원편의 및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코자 함.

3) 주요골자

- 취득재산
 - 토지(일반회계) : 1필지 497㎡ (80,000천원)
 - 건물(일반회계) : 2동 1,556㎡ (1,728,920천원)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 취득물건 현황

구분		건수 (필지수, 동수)	면적 (㎡)	금액 (천원)	위치	비고
토지	진하해수욕장 공중화장실건립	1	497	80,000	서생.진하 57-7	
건물	진하해수욕장 공중화장실건립	1	66 (1층)	120,000	서생.진하 57-7	콘크리트 스라브
	별관청사 신축	1	1,490 (지하1,지상3층)	1,608,920	울산.남구 옥동 248-4	철근 콘크리트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제56회 정례회

1. 개회배경

제56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의 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등 각종 안건을 심사코자 2002년 11월 22일 소집공고를 거쳐 2002년 11월 28일에 개회하였다.

2. 의사일정

제56회울주군의회(정례회)

2002.11.28~12.24(27일간)

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2.11.28 (목) 11:00	1	1. 제56회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건 2. 울산광역시울주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4. 2003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제56회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제2차정례회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2002.11.29 ~12. 5		상임위원회활동 (행정사무감사)	
2002.12. 6 ~12.11		상임위원회활동 (당초예산안 심사)	
2002.12.12 (목)		상임위원회활동 (일반안건 심사)	
2002.12.13 ~12.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 (당초예산안 심사)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2.12.16 (월) 11:00	2	1.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3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3. 2003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4. 2003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5. 2003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6. 2003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7. 2002년도 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8. 기타 일반 안건등	
2002.12.17 ~12.20		상임위원회활동 (결산추경안 심사)	
2002.12.21 (토)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 (결산추경안 심사)	
2002.12.23 (월)		상임위원회활동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2002.12.24 (화) 11:00	3	1.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2. 2002년도 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주요안건 처리 결과

가. 2003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32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11.21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2.12.16

2)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지급조례에 의거 운용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 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을 작성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운용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비고
계	전년도 이월금	이자수입	계	적립금	장학기금 사업비	
122,867	117,403	5,464	122,867	114,867	8,000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저소득 주민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장학금의 기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금운용은 울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어 원안의결 함.

나. 2003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33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11.21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2.12.16

2)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울주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설치된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 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을 작성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운용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비고
계	전년도 이월금	이자수입	계	적립금	사 업 비	
120,344	113,459	6,885	120,344	120,344	0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제3절 회기별 의안처리 현황

- 본 기금은 2000년 8월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기금증식을 위해 전액 적립단계에 있고 2003년도 기금운용 지출 계획에도 수입액 전액을 적립하고자 함으로 원안 의결 함.

다. 2003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34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11.21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2.12.16

2) 제안이유

-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을 작성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운용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비고
계	전년도 이월금	이자수입	기 타 (과징금)	계	적립금	사업비	
95,824	74,564	50	21,210	95,824	95,824	0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본 기금은 2000년 7월 27일자로 식품위생법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시·군·구 귀속비율이 제정되어 설치되었으나 아직 적립단계에 있고 2003년도 기금운용지출계획에도 수입액 전액을 적립하고자 함으로 원안의결 함.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라. 2003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35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11.21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2.12.16

2) 제안이유

-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을 작성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운용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비고
계	전년도 이월금	출연금	이자수입	계	적립금	사업비	
506,537	387,255	97,682	21,600	506,537	387,255	119,282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의 비용으로 원안의결 함.

마. 2003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3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11.21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2.12.16

2) 제안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을 작성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운용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비고
계	전년도 이월금	출연금	이자수입	계	적립금	사업비	
1,765,401	1,306,771	390,730	67,900	1,765,401	1,265,401	500,000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재해예방 및 안전시설설치 등의 비용으로 원안의결 함.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바.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의안번호 제37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11.22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2.12.24

2) 제안이유

- 웅촌 영아전문보육시범시설 건립부지 및 건물취득
 - 장백 및 쌍용하나빌리지 등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인구가 9,100명 정도이며 5세미만 아동이 1,824명으로 현재 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웅촌 장백아파트 주변에 영아전문보육 시범시설을 건립하여 영아의 건전보육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청량 삼정경로당 건립부지 및 건물취득
 - 당초 건립추진 부지인 청량면 삼정리 644번지의 부지매입이 어려워 청량면 삼정리 638-1번지로 위치변경 추진코자 함.
- 남부노인복지회관 건립부지 변경 및 건물취득
 - 남부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들의 종합적인 휴식공간 및 교양·오락등 노인들의 필요한 편의를 제공키 위하여 당초 관리계획에 의거 2001.11.24 기 승인된 남부노인복지회관은 건립부지 변경사유가 발생되어 “온천지역” 부근으로 부지를 변경 매입코자 하며, 국·시비 보조금 내시에 의거 건물을 신축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코자 함.

제3절 회기별 의안처리 현황

3) 주요골자

○ 취득재산

- 토지 : 7필지 9,315㎡ (725백만원)
 - 일반회계 : 2필지 2,957㎡ (264백만원)
 - 특별회계 : 5필지 6,358㎡ (461백만원)
- 건물(일반회계) : 3동 1,520㎡ (1,520백만원)

○ 취득물건 현황

구분		건수 (필지수, 동수)	면적 (㎡)	금액 (천원)	위치	비고
토지	웅촌 영아전문보육 시범시설 건립	1	1,113	202,000	웅촌.대북 231-1	
	청량 삼정경로당	1	1,844	62,000	청량.삼정 638-2	게이트볼장 및 부대조경시설
	남부노인복지회관 건립부지 변경	5	6,358	461,000	온양.발리 279-2외4	
건물	웅촌 영아전문보육시 범시설 건립	1	430 (3층)	598,000	웅촌.대북 231-1	
	청량 삼정경로당	1	99 (1층)	96,000	청량.삼정 638-2	
	남부노인복지회관 건립부지 변경	1	991 (2층)	926,000	온양.발리 279-2외4	

4) 심사결과 : 수정가결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5) 수정요지

- 「남부노인복지회관 건립부지 변경 및 건물취득」의 건 중 기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부지변경 부분과, 주 진입도로의 경사도가 심하고 인근 저수지에서 악취발생이 예상되는 등 부지선정이 적정치 못하여 재검토가 요구되는 「청량 삼정경로당 건립부지 및 건물취득」의 건에 대하여 관리계획 심사에서 제외함.
- 남부 노인복지회관의 건물 취득시 통합보건지소계획, 교통여건, 주변환경 등을 연계하여 위치변경 추진토록 할 것.

사.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

(의안번호 제40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12.17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2.12.24

2) 제안이유

- 범서 중부사회복지관 건립부지 변경취득
 - 범서등 중부지역 주민의 문화복지 혜택을 위하여 2001.11.24 범서읍 입암리 548번지 일원에 대하여 부지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승인을 기 득하였으나, 일부 편입토지 소유주와 보상협의를 되지 않아 부득이 범서읍 구영리 896-4번지의 2필지 5,849㎡를 변경매입하여 복지회관, 테니스장,

제3절 회기별 의안처리 현황

게이트볼장, 주차장등을 설치하여 종합적인 복지회관을 만들어 지역주민들에게 복지행정 서비스를 제공코자 함.

3) 주요골자

- 취득재산
 - 토지(일반회계) : 3필지 5,849㎡ (442,250천원)
- 취득물건 현황

구분		건수 (필지수, 동수)	면적 (㎡)	금액 (천원)	위치	비고
토지	범서 중부 사회복지관 부지변경취득	3	5,849	442,250	범서.구영 896-4외2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아.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1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12.17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2.12.24

2) 제안이유

-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정원 연장승인 통보”에 의거 주민자치기획단을 주민자치과로 승격하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고 존속기한을 연장하며 일부 사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중개정조례 본칙 및 부칙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5조 및 제6조 개정
 - 주민자치기획단 → 주민자치과로 승격하고 직제순위를 총무과 다음에 배치
 - 종합사회복지관운영사무, 자원봉사센터운영에 관한 사무를 경제사회국 → 총무국으로 이관.
 - 통상교류 사무를 경제사회국에 추가분장
 - 총무국 사무중 병무를 삭제

4) 심사결과 : 수정가결

5) 수정요지

- 부서간 조직을 일부조정하는 종합사회복지관운영, 자원봉사센터운영 등과 관련하여 주민자치과로 승격하는 것은 부서간 조직개편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신중성 있는 재검토가 요구되어 현행대로하기 위하여 개정안의 관련조항 수정
 - 안 제5조, 안 제6조제2항제2호중 개정안은 현행대로 함.
 - 안 제258호 신설단서중 “주민자치과”를 주민자치기획단“으로 수정
 - 안 부칙 제2조를 삭제
- 안 제6조제2항제1호중 중복된 의미를 가진 “통상지원 및 투자유치”를 “통상지원”으로 자구수정함.

부칙월.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2.12.17 제42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의안번호 울주군수
- 의결일자 : 추

2) 년

-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의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2002.12.24
기능보장 위해 한시정원 “시군·군구 행정정보화사업 전산
9 급 ”에 연장하기 한시정원 전산9311명의 존치기한을
적용 월 2004. 30 까지 의거 위하여 본 조례중개
정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²¹⁷

3) 주요골자

-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개정
- 정보화사업 진하기 행정자치부의 한시정원~~한시~~인²⁰⁰⁴ - 2002년 12자명
급 일까지 2002.12.31→ 1 제안이~~6~~에서 6.30일까지 적용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제57회 임시회

1. 개회배경

제57회 임시회는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8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김진근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2003년 3월 4일 소집공고를 거쳐 2003년 3월 11일에 개최하였다.

2. 의사일정

제57회울주군의회(임시회)

2003. 3.11~ 3.14(4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3. 3.11 (화) 11:00	1	1. 제57회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 2. 울산광역시울주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제57회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선임의건	
2003. 3.12 ~ 3.13		상임위원회활동	
2003. 3.14 (금) 11:00	2	1.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울주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6.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울주군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 8. 울산광역시울주군아동위원운영조례안 9.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심사보류 부결

3. 주요안건 처리 결과

가. 울산광역시 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3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1. 9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3. 3.14

2) 제안이유

- 선택지 형성 및 대단위 아파트 조성 등으로 인한 인구증가와 불합리한 리·반 경계를 조정하여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리장정수 및 관할구역의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리장정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리장정수 계를 315에서 318로 변경
- 신설되는 리별 반조정 현황

읍·면별	신설리명	반조정	주요조정사유
범서읍	평천9리	9개반	· 평천1리내 청구제네스아파트(2동 299세대) 신축 입주
	굴화3리	17개반	· 굴화1리, 굴화2택지 개발사업지구내 굴화강변그린빌아파트(13동 826세대)신축 입주
	굴화4리	12개반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나.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4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2. 7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3. 3.14

2) 제안이유

- 주민자치, 사회교육, 민방위교육기능을 통합하여 상호연계성 있는 프로그램운영 및 기구상호간 균형유지를 위하여 주민자치기획단(존속기한 2004. 6. 30까지)을 주민자치과로 승격하며, 일부사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5조 및 제6조 개정
 - 주민자치기획단을 주민자치과로 승격하고 총무과 다음에 배치하여 주민자치기능강화 및 기구간 균형을 도모함.
 - 주민자치, 사회교육, 민방위교육등 주민교육기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총무국 총무과소관 사무중 민방위에 관한 사무 및 경제사회국 복지위생과 소관 사무중 종합사회복지관운영(자원봉사센터 포함)에 관한 사무를 총무국 주민자치과로 이관함.
 - 총무과의 행사지원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중 통신에 관한 사무를 총무국 총무과로 이관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5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2.21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3. 3.14

2) 제안이유

- 지방세법개정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농업소득 조사위원회의 군 설치, 사업소세 재산할의 신고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세무서장의 주민세 소득세할 과세자료 통보기한을 “그 다음 달 말일까지”에서 “그 다음달 15일까지”로 단축하여 원활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함.
- 농업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사항 조사를 위한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현재 읍·면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읍·면의 기능을 민원·복지업무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동 위원회를 군에 설치하도록 함.
- 재산할 사업소세의 정확한 신고납부 및 납세편의를 위하여 신고 납부 기한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에서 7월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연장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라.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2.21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3. 3.14

2) 제안이유

-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이 허가한 2003년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에 의거 조문정리와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고, 국가유공자·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감면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중 단서조항인 자동차세 추징 규정을 삭제하여 국가유공자,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추징하지 않도록 함.
-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개정하여 무료노인복지시설, 일반노인정 등도 감면이 되도록 함.
-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근거규정인 지방세법 제274조와 제275조에서 적용시한을 “2002년 12월 31일”을 “2005년 12월 31일”로 개정하였으므로 이와 동일하게 3년 연장하도록 함.
- 문화재에 대한 감면의 명확성 제고를 위한 조문 정리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마. 울산광역시 울주군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안번호 제47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2.21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3. 3.14

2) 제안이유

-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향상을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함에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기금조성
 -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및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울산광역시 조정교부금 및 식품관련단체 출연금
- 기금용도
 - 영업시설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용자사업
 -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및 명예감시원 활동 지원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을 위한 사업지원
- 기금의 용자
 - 시설개선 또는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한 기계·설비를 필요로 하는 영업자로 하며, 한도액은 30,000천원
- 기금결산 : 출납폐쇄 후 80일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 군의회 제출 심의·의결

4) 심사결과 : 수정가결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 5) 수정요지 : 법령 및 용어의 약칭을 명시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 수정함.

바. 울산광역시울주군아동위원회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50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3. 4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3. 3.14

2) 제안이유

-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아동복지의 발전 및 아동위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아동위원의 역할
 - 지역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조사
 -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
 - 사회복지공무원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협력
 -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자문 등
- 아동위원의 정수
 - 읍·면당 2인(인구 2만명이상 초과인구 1만명당 1명추가)
- 아동위원의 임기
 - 임기는 3년, 연임가능(보궐아동위원은 전임자의 잔여임기)
- 협의회회 구성
 - 회장 및 부회장 1인씩 호선, 임기는 3년

- 협의회 기능
 - 아동위원의 담당구역과 담당사항을 정하는 것.
 - 아동위원의 역할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 아동위원의 역할에 대한 연구
 - 기타 아동위원의 역할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4) 심사결과 : 수정가결

5) 수정요지

- 법령 및 용어의 약칭을 명시하고 협의회 운영에 따른 회의
록 및 공무원의 미지정 등으로 조문 추가하여 수정코자 함.

사.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1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3. 4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3. 3.14

2)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울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2002년 12월 5일 제
정)에 광고물설치허가수수료 관련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제증
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관련 조항을 삭제
하고,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 2002. 2. 26 지적법시행규칙 개정시행에 따른 토지(임야)대장 등본상에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을 작성토록 규정되어 관련 수수료를 삭제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액은 별표 2와 같다는 것을 삭제
- “제3조 별표 1, 2, 4”를 “제3조 별표 1, 4”로 개정
- 별표 1의 「토지(임야)대장등본에 개별공시지가 병기급수수료 1필지 당 200원」을 삭제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제58회 임시회

1. 개최배경

제58회 임시회는 지방소도읍육성사업계획수립을위한의견청취의견과 제57회 임시회때 보류된 울산광역시울주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김석암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2003년 3월 21일 소집공고를 거쳐 2003년 3월 27일에 개최하였다.

2. 의사일정

제58회울주군의회(임시회)

2003. 3.27~ 3.29(3일간)

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3. 3.27 (목) 11:00	1	1. 제58회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 2. 울산광역시울주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제58회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선임의건	
2003. 3.28 (금)		상임위원회활동	
2003. 3.29 (토) 11:00	2	1. 울산광역시울주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2. 지방소도읍육성사업계획수립을위한 의견 청취의건	

3. 주요안건 처리 결과

가. 울산광역시울주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안(의안번호 제48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2.25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3. 3.29

2) 제안이유

- 2002.12.31 대통령령 제17867호로 개정·공포된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와 관련하여 인감담당공무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고,
-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시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하도록 함.
-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도록 하여 보험료 지급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고, 변상책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

과액을 당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도록 규정함.

4) 심사결과 : 수정가결

5) 수정요지 : 법령 및 용어의 약칭을 명시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 수정함.

나. 지방소도읍육성사업계획수립을위한의견청취의견
(의안번호 제53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3.20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3. 3.29

2) 제안이유

- 읍 지역을 경제, 사회, 문화적 자족기능을 갖춘 농어촌의 정주거점 지역으로 육성하여 지역민의 소득증대와 생활향상을 기하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제정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따라 2003년도 대상읍선정응모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소도읍종합육성계획수립지침에 의거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

3) 주요골자

- 대상지 선정평가 결과를 각 읍별 도시여건 분석에 따라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 인구에 있어서 최근 10년동안 인구변화 정도로 급격한 차이를 보이는 읍은 후순위 결정함 : 언양, 온양, 온산, 범서 순
- 토지이용면을 보면 토지의 면적은 범서읍이 가장 넓고 온산이 가장 적은 실정이나, 토지이용이란 대지, 학교용지, 도로, 공원 등과 같이 인구의 정주가 가능하고 도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지이용으로 토지 이용이 적은 지역을 우선하여 : 범서, 온양, 언양 순
- 주거현황평가는 정주민구의 안정을 기반으로 하는 주택보급이 가장 높은 정주여건이 안정된 상태로 : 온양, 범서, 온산, 언양 순
- 도시기반 시설로는 상수도, 도시계획도로, 도시공원, 주차장, 도시기반시설현황을 평가지표로 하여 : 온양, 언양, 온산·범서 순
- 사회경제기반시설을 보면 보건의료시설 현황,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금융기관, 판매영업시설, 산업별 현황 등이며, 사회경제 기반시설 분석 내역을 보면 시설이 미흡한 지역을 높은 점수로 평가하고 상대적으로 시설이 많거나 적정 규모로 입지가 된 경우에는 낮은 평가를 하고 있음 : 범서, 온양, 온산, 언양 순
- 교육시설관계를 보면 사회경제기반시설 평가와 마찬가지로 그 지역의 교육환경과 함께 도시적 정주성이 뒷받침되어야 함으로 정주성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교육시설인 유치원, 초등학교 시설의 수가 적은 지역에 우선순위로 하

제3절 회기별 의안처리 현황

여 : 온양·온산, 범서·언양 순

- 관광자원 분야를 보면 문화·관광자원의 개소, 레저·휴양 시설, 주요 문화관광 축제 등으로 평가하여 : 온양·언양, 범서·온산 순
- 종합평가 우선순위 : 온양, 언양, 온산, 범서 순임.

○ 온양읍 소도읍 육성계획

- 온양읍의 지역여건 분석
- 기본구상(온양의 미래상, 발전테마, 개발방향 및 과제, 실행 계획, 전략사업선정)
- 전략사업계획
 - 초록마을 만들기, 초록길 만들기, 남창천 친수공간 정비, 옹기마을 관광자원화
 - 예산지원계획 : 200억(국비 100억, 시비 50억, 군비 50억)
 - 옹기마을 관광자원화 : 11,848백만원(울산광역시, 자부담 2,320백만원)

4) 심사결과 : 의견서 채택

5) 의 건 서

- 지방소도읍 육성사업계획안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비를 국비지원금과 시와 군이 각각 50%를 부담하여 예산에 계상해야 하는바
-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향후 공청회 등을 거쳐 주민 의견 수렴을 철저히 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 제59회 임시회

1. 개회배경

제59회 임시회는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김석암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2003년 5월 21일 소집공고를 거쳐 2003년 5월 28일에 개최하였다.

2. 의사일정

제59회울주군의회(임시회)

2003. 5.28(1일간)

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3. 5.28 (수) 11:00	1	1. 제59회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 2.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3. 제59회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선임의건	

3. 주요안건 처리 결과

-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송정문 의원과 울산광역시 공인회계사 협의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이승춘, 윤형두 공인회계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였다.

□ 제60회 임시회

1. 개회배경

제60회 임시회는 2003년도 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외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김석암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2003년 6월 3일 소집공고를 거쳐 2003년 6월 9일에 개회하였다.

2. 의사일정

제60회울주군의회(임시회)

2003. 6. 9~ 6.21(13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3. 6. 9 (월) 11:00	1	1. 제60회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 2. 울산광역시울주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3년도 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제60회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선임의건	
2003. 6.10 ~ 6.13		상 임 위 원 회 활 동	
2003. 6.14 (토) 11:30	2	1.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2. 울산광역시울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울주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 운영에관한조례안 4. 울산광역시울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 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울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 6.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3. 6.14 (토) 11:30	2	7.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 8.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9.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 울산광역시울주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울산광역시울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2003. 6.16 ~ 6.18		상임위원회활동	
2003. 6.19 ~ 6.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2003. 6.21 (토) 11:00	3	1. 2003년도 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 가경정예산안 2. 군정질문	

3. 주요안건 처리 결과

가. 울산광역시울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4. 9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3. 6.14

2) 제안이유

- 문서의 전자결재화로 사용이 빈번해진 전자이미지공인 관리를 명확히하고, 그간의 운영상 나타난 규정의 불합리한 점과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전자이미지 공인의 사용에 대한 근거 및 관리조항 신설
- “신조, 개각”이라는 용어를 “등록, 재등록”으로 일부 개정
- 공고 내용의 명확화로 일부 개정
- 공인 변경사항에 대한 울산광역시 보고 조항 삭제

4) 심사결과 : 수정가결

5) 수정요지

- 제2조 제7항을 “⑦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합의제기관(이하 “합의제기관”이라 한다)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합의제기관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공인을 가질수 있다”로 신설함.

나. 울산광역시울주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제57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4.29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3. 6.14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2) 제안이유

-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 시스템 구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터넷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여 홈페이지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연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함.
- 항상 최신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의 게시자료가 건전한 운영에 저해가 될 때는 삭제함.
- 인터넷 민원처리를 위해 사이버민원실을 설치 운영함.
-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 의견교환을 위해 군수와의 대화방과 참여마당을 운영함.
- 국외에 군을 홍보하고, 국제협력, 관광유치, 통상정보 제공 및 의견교환을 위해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함

4) 심사결과 : 수정가결

5) 수정요지

- 제17조제2항중 "DB"를 "데이터베이스"로 수정하고, 부칙제2항을 삭제함

다. 울산광역시울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8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4.29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3. 6.14

2) 제안이유

- 급속한 정보화 환경변화에 따라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의 심의시기를 조정하여 실효성 있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법률 명을 변경함.
-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전년도 추진실적과 다음연도의 시행 계획 포함)의 심의시기가 매년 1월말까지이나 정보화의 급속한 환경변화로 심의 시기를 조정함.

4) 심사결과 : 수정가결

5) 수정요지

-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시기를 매년 4월말까지 하도록 수정

라. 울산광역시울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9호)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4.29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3. 6.14

2)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2002.11.29, 대통령령 제17788호)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시 이자율을 인하하고 대부 등에 대한 연체 요율을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등 국민의 편리를 도모하고,
-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 사무처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매각대금 분할납부의 이자율 인하
-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에 대하여는 대부료 특례 미적용
- 연체 이자율 차등 인하 및 연체료 부과기준 상한 설정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마. 울산광역시울주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60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4.29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3. 6.14

2)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울주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제3조, 제5조, 제7조에 의거 도로굴착공사 원상복구시 굴착지 복구 부담금의 징수 및 굴착공사의 시행,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비효율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사리도를 제외한 도로의 굴착지 복구는 원인자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허가 후 착공신고시 복구 부담금에 해당하는 복구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 또한 허가면적 및 양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복구부담금에 해당하는 복구 보증보험증권 등을 추가로 제출할 것을 명시함.
- 도로손괴자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는 것을 삭제
- 도로굴착지 복구 및 시설물 손괴복구는 원인자 등이 복구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명시
- 원인자 등이 직접 복구한 부분에 대한 하자 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증권 등을 제출할 것을 명시함.
- 기납부된 부담금의 환부 규정을 삭제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바. 울산광역시울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1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4.29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3. 6.14

2)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울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별표1】의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점용료 산정기준이 도로법시행령에 정하는 범위안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02. 5. 6일자 도로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료 비교4의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부분”을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로 개정하고자 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사.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의안번호 제62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5.10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3. 6.14

2) 제안이유

- 「범서읍청사 부지확장을 위한 토지·건물 매입」은 당초 청사이전계획을 현청사 부지확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 「서부노인복지회관 건물취득변경 및 부지매입」은 서부노인복지회관을 청소년수련관과 연계 건립코자 당초계획을 변경하며,
- 「온산 신온1리경로당 건립」은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추가로 경로당을 신축하고,
- 「삼남 공암마을경로당 건립」 및 「상북 순정마을경로당 건립」은 당초 사업비 1억원 미만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포함 대상이 아니었으나 사업비 증가로 계획에 반영되는 사항이며,
- 「울주군장애인복지회관 건물변경취득」은 시설규모의 확장 및 사업비 증액계획으로 변경하며
- 「서생진하마을회관건립부지 및 건물 변경취득」은 당초계획 부지의 협의매수가 불가하여 사업부지의 변경과 아울러 사업비를 증액코자 함.

3) 주요골자

- 취득재산
 - 토지(일반회계) : 9필지 4,613㎡ (894,471천원)
 - 건물(일반회계) : 8동 4,593.1㎡ (4,586,360천원)
- 취득물건 현황

구분		건수 (필지수, 동수)	면적 (㎡)	금액 (천원)	위치	비고
토지	범서읍청사 부지확장	2	1,360	224,380	범서.천상 412-1외1	토지매입 및 건물보상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구분		건수 (필지수, 동수)	면적 (㎡)	금액 (천원)	위치	비고
토지	서부노인복지회관 부지변경	1	1,590	200,000	삼남.교동 296	
	온산 신온1리 마을경로당	1	228	44,000	온산.덕신 30-10	
	서생 진하마을 회관 변경취득	5	1,435	426,091	서생.진하 254-1외4	
건물	범서읍 청사 부지확정	2	188	75,620	범서 천상 412-1 외1	
	서부노인복지회관 건물취득	1	1,157 (2층)	1,300,000	삼남.교동 296	
	온산 신온1리 마을경로당	1	82.50 (1층)	96,000	온산.덕신 30-10	
	삼남 공암마을 경로당	1	98.28 (1층)	137,000	삼남.상천 1010-4	
	상북 순정마을 경로당	1	66.06 (1층)	114,000	상북.길천 1088-1	
	울주군 장애인 복지회관 건물 변경취득	1	2,501.26 (지하1,지상3층)	2,388,000	삼남.교동 1499-166	
	서생 진하마을 회관 변경취득	1	500 (2층)	475,740	서생.진하 254-1외4	

4) 심사결과 : 수정가결

5) 수정요지

- 상북 순정마을 경로당 건립건은 부지의 여건, 건축비와 토목 공사비가 과다하게 산출되는 부분으로 토지의 효율성이 재검토 되어 제외하고 그외는 원안대로 가결함.

아.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3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5.14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3. 6.14

2) 제안이유

- 불합리한 리·반 경계를 조정하여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리장 정수 및 관할구역의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리장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리장정수 계를 318에서 319로 조정
- 신설되는 리조정현황

구 분	현 행	조 정		비고
리 명	궁근정리	궁근정리	신기리	
반 수	12개반	3개반	12개반	
세대및인구수	586세대 1,664명	116세대 320명	470세대 1,344명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제61회 정례회

1. 개회배경

제61회 정례회는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03년 7월 1일 소집공고를 거쳐 2003년 7월 10일에 개최하였다.

2. 의사일정

제61회울주군의회(정례회)

2003. 7.10~ 7.18 (9일간)

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3. 7.10 (목) 11:00	1	1. 제61회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건 2. 울산광역시울주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제61회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2003. 7.11 (금)		상임위원회활동 (일반 안건 심사)	
2003. 7.12 (토) 11:00	2	1.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 2.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울주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 조례안 6. 울산광역시울주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울산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결정 (변경)의견청취의건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3. 7.14 ~ 7.15		상임위원회활동	
2003. 7.16 (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	
2003. 7.18 (금) 11:00	3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주요안건 처리 결과

가. 울산광역시울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5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5.31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3. 7.12

2) 제안이유

- 사업부서의 업무중 이원화된 일부업무를 관련부서로 일원화 하고 업무의 대강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본 조례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 건축허가과와 지역경제과로 이원화된 공장설립업무를 경제사회국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일원화하고 통상지원 및 기업지원업무를 통합, 기업통상으로 조정하여 업무의 전문화 및 책임성 확보
- 복지시설업무 중 2억원 이상의 공공건축 업무를 건설도시국 건축허가과 공공시설담당으로 이관함으로써 기술분야의 부담을 줄여 복지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고 복지시설업무를 노인복지업무로 조정
- 건축허가과의 농지전용업무를 경제사회국 농산과 소관으로 일원화하고, 농산과 소관사무중 누락된 유통관리, 농업시설업무를 신설 및 변경하여 분장사무를 명확히 함.
- 대곡댐, 언양하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구역확대로 하천업무를 치수와 하수로 분리하여 앞으로 확대되는 행정수요에 대비코자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으로 분장
- 건축허가과와 도시과로 이원화된 개발행위업무를 건설도시국 도시과 소관으로 일원화하고 도시과 소관사무를 도시계획, 개발행위, 개발제한구역관리, 전원개발(보상, 이주) 등에 관한 사무로 재정립하여 업무의 성질을 명확히 함.
- 건축허가과 업무중 인·허가 및 복합민원처리업무가 타부서와 이원화되어 있어 해당 전문 부서로 일원화하고 읍·면사무 중 건축신고 관련업무를 수관하며, 2억원 이상의 공공건축업무와 소도읍개발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건축행정, 건축민원, 건축지도, 주택, 공공시설, 소도읍 업무로 재정립하여 업무의 성질을 명확히 함.

4) 심사결과 : 수정가결

5) 수정요지

- 건축허가과 업무 조정에 따라 건축허가과를 건축과로 수정함.

나.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5.31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3. 7.12

2) 제안이유

- 2003. 5. 9 표준정원 개정 고시로 우리군 정원이 증원 조정되어 행정수요가 증대된 기술부서와 읍·면의 현장 행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증원 고시된 63명중 46명을 정원의 총수에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조례본문
 - 제2조(정원의 총수) : 증원되는 인원 46명을 명기
 - 정원의 총수 : 584명 → 630명 (증 46명)
 - 집행기관의 정원 : 569명 → 615명 (증 46명)
- 조례부칙
 - 한시정원은 정원에 포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다.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7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5.31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3. 7.12

2) 제안이유

- 현행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중 위임근거 규정이 폐지된 건축관련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여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 확보, 읍·면사무소의 주민복지증진 기능강화를 위하여 본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구 건축법시행령 제117조제4항에 의한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옹벽 등 공작물축조신고, 무허가 건축물 단속, 단독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업무에 대하여 현행 읍·면장에서 군수로 개정
- 개발제한구역안 건축신고 지도단속 업무에 대하여 현행 읍·면장에서 군수로 개정
- 적용범위의 변경
 - 읍·면장은 이 개정조례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수행함.
 -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건축물에 관한 사용승인”
 - “사용승인전까지의 시정명령”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라.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3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6.27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3. 7.12

2) 제안이유

-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허가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에 맞추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 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자도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감면하도록 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마. 울산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결정(변경)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74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7. 3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3. 7.12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2)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0-360호(2000. 8.22)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울주군 고시 제2001-33호(2001. 6.11)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된 울산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에 대하여 사업추진중 골프장 진입동선 변경 및 불합리한 골프코스의 재배치 등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이전에 도시계획시설 구역계를 조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골프장)결정(변경)의견청취
 - 위 치 : 울주군 삼남면 방기리 산82-1 일원
 - 면 적 : 기정 238,000㎡, 증 10,000㎡, 변경후 248,000㎡
 - 최초결정일 : 2000. 8.22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0-360호
 - 주변경사유 : 진입동선 변경 및 골프코스 재배치

4) 심사결과 : 의견서 채택

5) 의 건 서

- 2000년 5월 2일 본의회에서 의견제시한 5개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주거지역 안전성 확보를 위한 흰스(그물망 등) 설치와 지역 고용창출의 위해 회사에서 제시한 내용을 명확히 이행할 것과 사업을 시행하면서 민원 등이 발생되거나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 행정, 주민과 원활한 협의를 거쳐 사업시행토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바. 울산광역시울주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5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7. 3 김지호의원 외 2명
- 의결일자 : 2003. 7.12

2) 제안이유

- 현행 위원회 구성원중 현실성이 없는 4-H 회장을 삭제하고 구성원의 구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현행 위원회 구성원중 4-H 회장을 삭제하고 리장, 새마을지도자(남,여), 노인회장, 부녀회장, 청년회장을 당연직으로 함.
- 위원의 임기를 현행대로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사. 울산광역시울주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7. 3 김지호의원 외 2명
- 의결일자 : 2003. 6.12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2) 제안이유

- 읍·면종합복지회관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복지회관의 위치와 운영위원회의 심의기능 등을 명확히 하여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골자

- 복지회관의 명칭 및 위치조항 신설
-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항 신설
- 운영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조항 신설
- 복지회관 운영관리 계획 수립 시기에 관한 조항 신설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제62회 임시회

1. 개회배경

제62회 임시회는 울산광역시울주군 폐기물관리예 관한 조례중개정조례 안외 8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김진근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2003년 9월 27일 소집공고를 거쳐 2003년 10월 4일에 개최하였다.

2. 의사일정

제62회울주군의회(임시회)

2003.10. 4~10.16 (13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3.10. 4 (토) 11:00	1	1. 제62회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 2. 울산광역시울주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3년도 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제62회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선임의건	
2003.10. 6 ~10.13		상임위원회활동	
2003.10.14 ~10.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	
2003.10.16 (목) 11:00	2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2.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울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폐지조례안 4. 울산광역시울주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부결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3.10.16 (목) 11:00	2	5.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7. 2003년도 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8.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9. 울산광역시울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 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군정질문	

3. 주요안건 처리 결과

가.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8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7.31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3.10.16

2) 제안이유

- 환경부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종량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시행이후 동결되었던 종량제봉투 가격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고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재정자립도향상 및 쓰레기 감량화를 유도

제3절 회기별 의안처리 현황

- 대형폐기물 처리품목을 세분화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시 개별 품목당 처리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

3) 주요골자

- 종량제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기준 마련
- 대형폐기물 처리품목 및 수수료 세분화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나. 울산광역시울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7.31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3.10.16

2) 제안이유

- 조례 조항중 법령상의 용어로 통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관리의 내실화.
-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가 활성화됨에 따른 자치단체간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 강화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분리 배출에 따른 관련 수수료 규정등을 마련하기 위함.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3) 주요골자

- 조례의 명칭 및 본문, 별지서식, 별표중 “음식물 쓰레기”를 법령상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
- 감량 의무대상사업장의 감량 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의 근거마련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과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리하는 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위탁계약·행정처분 내용 등을 상호 통보토록 하여 적정처리 토록 함.
-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함.
- 공동주택 음식물류 쓰레기 처리수수료 부과·징수 및 대형수수료 5%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 신설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다.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0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8.22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3.10.16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 국가와 지방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 수당인상계획이

통보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수당지급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법령에 맞도록 용어 정비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규정
 - 전임전문직공무원 → 전임계약직공무원
- 일반직 의사와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을 일률적으로 월30만원씩 인상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라. 울산광역시울주군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81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8.22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3.10.16

2) 제안이유

-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대통령령 제15903호, 1998.10.1) 제10조 규정에 의거 제정되었던 울산광역시울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조례 제133호, 1998.12.10제정)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폐지령(대통령령 제18003호, 2003.6.23)이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3) 주요골자

- 울산광역시울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폐지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마.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3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8.22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3.10.16

2) 제안이유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와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허가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에 맞추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도 국가유공자 및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와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감면하도록 함.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 :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바.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4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8.22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3.10.16

2) 제안이유

- 인감에 관한 증명수수료가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9조(수수료)의 신설(2002.12.31) 시행으로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감에 관한 증명수수료를 삭제하고,
- 입찰방법 개선에 따른 전자입찰제가 시행(2002. 7. 1)됨에 따라 전자입찰 참가수수료를 면제하여 지역중소건설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제3조(징수구분) 제1항 별표1 제증명등수수료 중 구분 란의
 - (증명) “1. 인감에 관한 증명” 삭제
 -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면허·교부·승인·입찰참가 신청 등) 7. 회계관계 (1) 입찰참가신청 다음에 “다만, 전자입찰 참가신청은 제외한다.”를 신설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사.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의안번호 제85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9.26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3.10.16

2) 제안이유

- 「삼남 상평경로당 부지 및 건물취득」 외 2건에 대하여 사업 계획 변경이나, 신규사업계획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
- 「삼남 상평경로당 부지 및 건물취득」은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경로당을 신축하고,
- 「보건소 이전 신축 및 서부노인복지회관 건물변경취득」은 남구에 위치한 보건소를 군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관내로 이전하며, 서부노인복지회관 예정부지가 청소년수련관 부지로 대두됨에 따라 보건소 이전부지와 같은 장소에 서부노인복지회관을 위치 변경하여 건립하며,
- 「남부노인복지회관 부지변경」은 의회의 남부노인복지회관 부지 재검토 요구에 따라 적정지로 부지를 선정 건립코자 함.

3) 주요골자

- 취득재산
 - 토지 : 1필지 331㎡ (150,000천원)
 - 건물 : 4동 4,247㎡ (7,896,000천원)

제3절 회기별 의안처리 현황

○ 취득물건 현황

구분		건수 (필지수, 동수)	면적 (㎡)	금액 (천원)	위치	비고
토지	삼남 상평경로당 부지 매입	1	331	150,000	삼남.교동 1499-177	
건물	삼남 상평경로당 건물 취득	1	85.95 (1층)	96,000	삼남.교동 1499-177	
	보건소 이전신축	2	3,000 (지하1,지상3)	6,300,000	삼남.교동 15B 1L	본건물1동 부속건물1동
	서부노인복지회 관 건물변경취득	1	1,157 (지하1,지상2)	1,500,000	삼남.교동 15B 1L	
	남부노인복지회 관 부지변경	1	991 (2층)	826,000	온양.발리 279외4	

4) 심사결과 : 수정가결

5) 수정요지

- 삼남상평경로당 부지 및 건물취득건 중 대상부지는 울산광역시
시의 소유로 유상매입보다는 울산광역시와의 재협의 추진으
로 무상양여 등의 결정이 있는 후 재상정토록 의견을 제시하
면서 제외하고
- 보건소 이전신축 및 서부노인복지회관 건물변경 취득건은 동
일 부지에 2개 시설을 건립계획하고 있어 서부노인복지회관
건물변경부분을 제외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함.

□ 제63회 임시회

1. 개회배경

제63회 임시회는 울산광역시울주군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3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김석암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2003년 10월 21일 소집공고를 거쳐 2003년 10월 27일에 개최하였다.

2. 의사일정

제63회울주군의회(임시회)

2003.10.27~11. 6 (11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3.10.27 (월) 11:00	1	1. 제63회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 2. 울산광역시울주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제63회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선입의건	
2003.10.28 ~10.31		상임위원회활동	
2003.11. 1 (토) 11:00	2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003.11. 3 ~11. 5		상임위원회활동	
2003.11. 6 (목) 11:00	2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세입포상금지급조례 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울주군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결

3. 주요안건 처리 결과

가. 울산광역시울주군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8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10.20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3.11. 6

2) 제안이유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및 모·부자 복지법 개정으로 인한 명칭 및 용어를 정비
- 현행 영유아보육법에서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에 대한 규정 및 행정규제 기본법 제4조 규정에 의한 “규제법정주의”를 위반한 미 근거 규정사항으로 관련조례를 개정

3) 주요골자

-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위탁계약서 중 법령에 맞도록 용어 정비
 - 생활보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녀
 - 모자복지법 → 모·부자 복지법
 - 편부모 가정 등 기타 결손가정의 자녀 → 결손가정의 자녀
- 공립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폐지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나.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의안번호 제90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10.20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3.11. 6

2) 제안이유

- 「문예회관 건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취득」 외 3건의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
- 「문예회관 건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취득」은 다기능, 다목적 문화예술활동 공간을 위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고,
- 「농어촌도서관 건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취득」은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농어촌도서관을 건립하며,
- 「두동 망향각 설치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취득」과 「두서 신전마을 경로당 건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취득」은 대곡댐 주변지역 복지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실향민의 애향심 고취와 향수를 달래기 위한 망향각을 설치하고, 신전마을 노인들의 휴식공간을 위한 경로당을 건립코자 함.

3) 주요골자

- 취득재산
 - 토지 : 19필지 13,367㎡ (2,751,364천원)
 - 건물 : 4동 6,350㎡ (10,185,113천원)

○ 취득물건 현황

구분		건수 (필지수, 동수)	면적 (㎡)	금액 (천원)	위치	비고
토지	문예회관 건립	11	7,756	2,100,000	범서.천상 385-1외10	
	농어촌 도서관 건립	5	5,010	600,000	온양.문화 16-2외4	
	두동 망향각 설치사업	1	300	2,000	두동.삼정 산141-3	
	두서 신전마을 경로당 건립	2	301	49,364	두서.전읍 739-1외1	
건물	문예회관 건립	1	3,960	6,000,000	범서.천상 385-1외10	
	농어촌 도서관 건립	1	2,300 (지하1,지상3)	4,000,000	온양.문화 16-2외4	
	두동 망향각 설치사업	1	50 (2층)	100,000	두동.삼정 산141-3	
	두서 신전마을 경로당 건립	1	100 (2층)	85,113	두서.전읍 739-1외1	

4) 심사결과 : 수정가결

5) 수정요지

- 문예회관 건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취득건은 당초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나 이에 대한 명확한 사유 설명없이 변경계획으로 하고 있는 부분과 대단위 사업으로 문화예술 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공감대 구성에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대한 문제, 다수의 이용성과 접근성 등 장소문제 등의 사유로 제외하고,

- 농어촌도서관 건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취득건은 농어촌도서관으로서 낙후된 농어촌지역의 균형적인 여건조성이 필요하므로 그 취지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계획 검토가 요구되어 제외하고
- 두서 신전마을 경로당 건립을 위한 건물취득건은 국도 35호선의 확장 도로변에 접하여져 있어 차량등에 대한 소음문제, 노인들의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제외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함.

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건 (의안번호 제91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10.20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3.11. 6

2) 제안이유

- 「청량면청사 철거 및 신축」 외 1건의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
- 「청량면청사 철거 및 신축」은 협소하고 노후화된 청량면청사를 철거, 신청사를 재건축하고,

제3절 회기별 의안처리 현황

- 「진하보건진료소 이전·신축」 또한 협소하고 노후화 된 보건진료소를 진하마을회관 신축예정부지로 이전 신축코자 함.

3) 주요골자

- 취득재산
 - 건물 : 2동 1,404㎡ (1,900,000천원)
- 처분재산
 - 건물 : 2동 764.08㎡ (125,517천원)
- 처분(철거)물건 현황

구분	재산의 소재지	구조	면적	재산가액	취득일자	비고
계			764.08	125,517		
건물	본동	청량.상남 595-7	철근콘크리트 (지상2층)	659.20	106,639	1983년
	별동 (민원실)	청량.상남 595-7	철근콘크리트 (지상1층)	104.88	18,878	1992년

- 취득물건 현황

구분	건수 (필지수, 동수)	면적 (㎡)	금액 (천원)	위치	비고
건물	청량면청사 신축	1	1,206 (3층)	1,699,952	청량.상남 595-7외8
	진하보건진료소 이전신축	1	198 (2층)	200,000	서생.진하 255

4) 심사결과 : 수정가결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5) 수정요지

- 진하보건진료소 이전신축건은 의료취약지역안의 주민들에 대한 경미한 의료행위를 위한 시설로 보건지소와는 개념이 다르고 보건진료소의 이용주민들을 진하해수욕장 방문객 등 타 지역 주민등을 위주로 하면서 이전신축하는 것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거 설치 운영하고 있는 보건진료소의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현부지 이전후의 부지활용에 대한 계획 등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현부지에 건립토록 의견을 제시하면서 제외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함.

□ 제64회 정례회

1. 개회배경

제64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의 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등 각종 안건을 심사코자 2003년 11월 12일 소집공고를 거쳐 2003년 11월 28일에 개최하였다.

2. 의사일정

제64회울주군의회(정례회)

2003.11.28~12.23(26일간)

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3.11.28 (금) 11:00	1	1. 제64회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건 2. 울산광역시울주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4. 2004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제64회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제2차정례회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2003.11.29 ~12. 5		상임위원회활동 (행정사무감사)	
2003.12. 6 (토)		상임위원회활동 (일반안건 심사)	
2003.12. 8 ~12.12		상임위원회활동 (당초예산안 심사)	
2003.12.13 ~12.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 (당초예산안 심사)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3.12.16 (화) 11:00	2	1.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울주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4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4. 2004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5.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6. 2004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7. 2004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8.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 2003년도 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2003.12.17 ~12.19		상임위원회활동 (결산추경안 심사)	
2003.12.20 (토)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 (결산추경안 심사)	
2003.12.22 (월)		상임위원회활동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2003.12.23 (화) 11:00	3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2. 2003년도 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주요안건 처리 결과

가.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4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11.20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3.12.16

2)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2006년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수익사업용 재산은 원칙적으로 과세전환 또는 감면율을 축소, 감면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감면을 축소·폐지하는 등 현행 감면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종교단체 소유 의료용 부동산에 대하여 도시계획세 “면제”를 “50% 경감”으로 축소 조정함.
- 문화재에 대한 감면중 문화재보호법과 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상업용부동산도 재산권의 제한을 받으므로 면제대상에 포함함.
-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중 전용면적 40㎡이하인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를 면제하였으나 “국민임대주택”을 추가하여 면제하도록 함.
-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 취득한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세율 1,000분의3 적용기간을 “5년간”에서 “3년간”으로 단축함
- 마을회등 주민공동체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면제규정을 삭제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제3호·제4호 규정에 의한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때에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7년간 전액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 하도록 함.

- 법인 및 공장의 지방이전시 지방세감면 대상지역 범위를 수도권정비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동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내)으로 확대함
- 농업기반공사의 농지개량공사용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 “면제”를 “50%경감”으로 축소 조정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나. 울산광역시울주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5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11.20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3.12.16

2) 제안이유

- 군립공원 위원회 위원장 직위를 상위법에 맞추어 상향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에 기여하고
- 읍·면사무소의 기능을 주민들에게 필요한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으로 전환됨에 따라 읍·면장의 권한일부를 대통령령으로 폐지하였으므로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제3절 회기별 의안처리 현황

- 군립공원위원회 위원장 직위 상향조정
 - 군립공원 위원회 위원장을 건설도시국장에서 부군수로
- 대통령령 제17952호(2003.4.4)에 의거 특별위원인 당해 공원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장 조항 삭제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다. 2004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9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11.21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3.12.16

2)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울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지급조례에 의거 운용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 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을 작성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운용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비고
계	전년도 이월금	이자수입	계	적립금	장학기금 사업비	
120,355	116,723	3,632	120,355	112,355	8,000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저소득 주민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장학금의 기금운용은 울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어 원안 의결 함.

라. 2004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97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11.21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3.12.16

2)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울주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설치된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을 작성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운용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비고
계	전년도 이월금	이자수입	계	적립금	사 업 비	
132,083	123,580	8,503	132,083	132,083	0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제3절 회기별 의안처리 현황

- 본 기금은 2000년 8월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기금증식을 위해 전액 적립단계에 있고 2004년도 기금운용 지출 계획에도 수입액 전액을 적립하고자 함으로 원안 의결 함.

마.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98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11.21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3.12.16

2) 제안이유

-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을 작성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운용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비고
계	전년도 이월금	이 자 수 입	민 간 부담금	기 타 (과징금)	계	적립금	사업비	
133,139	105,139	3,500	500	24,000	133,139	133,139	0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 본 기금은 2000년 7월 27일자로 식품위생법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시·군·구 귀속비율이 제정되어 설치되었으나 아직 적립단계에 있고 2004년도 기금운용지출계획에도 수입액 전액을 적립하고자 함으로 원안의결 함.

바. 2004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9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11.21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3.12.16

2) 제안이유

-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을 작성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운용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비고
계	전년도 이월금	출연금	이자수입	계	적립금	사업비	
623,320	506,537	99,783	17,000	623,320	506,537	116,783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의 비용으로 원안의결 함.

사. 2004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100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11.21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3.12.16

2) 제안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을 작성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운용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비고
계	전년도 이월금	출연금	이자수입	계	적립금	사 업 비	
2,001,787	1,524,796	400,000	76,991	2,001,787	1,501,787	500,000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재해예방 및 안전시설설치 등의 비용으로 원안의결 함.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아. 울산광역시울주군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12. 9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3.12.23

2) 제안이유

-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기침에 의거 지급되던 공무원 당직수당이 2004년부터 자치단체에서 실비소요액을 산정,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여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공무원의 당직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당직수당 지급근거를 신설함.
 - 울산광역시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심사결과 : 수정가결

5) 수정요지

- 2004년 예산편성지침에서 기준액 산정방법으로 당직시설상태, 당직근무인력,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비를 산정하여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당직수당 기준액을 조례상에 명시함.

자.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의안번호 제107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12.13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3.12.23

2) 제안이유

- 간절곶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부지내 서생면 대송리 산 110-6번지상 단독주택 건축과 관련하여 근린공원 조성 사업 시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골자

- 취득물건 현황

구분		건수 (필지수, 동수)	면적 (㎡)	금액 (천원)	위치	비고
토지	간절곶 근린공원 부지매입	1	314	202,189	서생.대송 산110-6	토지매입, 지장물보상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제65회 임시회

1. 개회배경

제65회 임시회는 울산광역시울주군도시계획조례안의 5건의 안전심의와 집행부로부터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김석암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2004년 1월 15일 소집공고를 거쳐 2004년 1월 28일에 개최하였다.

2. 의사일정

제65회울주군의회(임시회)

2004. 1.28~ 2. 4 (8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4. 1.28 (수) 11:00	1	1. 제65회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 2. 울산광역시울주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제65회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선임의건	
2004. 1.29 (목) 10:00	2	1. 2004년 주요업무 보고 청취 ○ 기획감사담당관실 ○ 문화공보담당관실 ○ 보건소	
2004. 1.30 (금) 10:00	3	1. 2004년 주요업무 보고 청취 【경제사회국】 ○ 지역경제과 ○ 복지위생과 ○ 환경보호과 ○ 농 산 과 ○ 축수산과	

제3절 회기별 의안처리 현황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4. 1.31 (토) 10:00	4	1. 2004년 주요업무 보고 청취 【총 무 국】 ○ 총 무 과 ○ 주민자치과 ○ 회 계 과 ○ 지방세과 ○ 민원지적과	
2004. 2. 1		공 휴 일	
2004. 2. 2 (월) 10:00	5	1. 2004년 주요업무 보고 청취 【건설도시국】 ○ 건 설 과 ○ 도 시 과 ○ 건 축 과 ○ 산 립 과	
2004. 2. 3 (화)		상임위원회활동 (조례안 심사)	
2004. 2. 4 (수) 11:00	6	1.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울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울주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4. 울산광역시울주군도시계획조례안 5. 울산광역시울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울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 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7. 군정질문의견	

3. 주요안건 처리 결과

가. 울산광역시울주군도시계획조례안 (의안번호 제103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12. 3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4. 2. 4

2) 제안이유

-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003. 1. 1부터 시행
-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절차를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필지당 1천원으로 함
-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울산광역시울주군재무회계규칙준용
- 울산광역시울주군도시계획위원회조례 및 울산광역시울주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폐지

4) 심사결과 : 수정가결

5) 수정요지

- 조문의 간결함을 위하여 중복된 조항 일부를 수정
- 위원회 회의운영의 객관성과 민주성을 위해 위원장에게 주어진 권한 일부를 합리적으로 조정.

나. 울산광역시울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4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12. 3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4. 2. 4

2) 제안이유

-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되고 건축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의 인용법령 조문 및 용어를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수정하고
- 비 도시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을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건축행정의 적정을 기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재해관리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울주군건축조례를 적용하도록 조례 적용범위 개정
- 건축심의 요청시의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명시
-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해 관리지역으로 변경된 준 도시지역의 경우 조경기준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 용도제한 및 구조안전 규정 등을 건축법에서 울산광역시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규정 삭제
- 비도시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율 규정 등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규정을 삭제
- 건축물의 대지가 2이상의 지역·지구 등에 걸치는 경우의 건축기준 적용방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적합하도록 통일하되 일조권의 경우 각각 해당지역 등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일조권을 보호함.
- 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 적용 방법을 울산광역시건축조례와 통일되도록 하여 적용시의 혼란을 방지함.
- 근린상업지역 및 준 주거지역에서 일조권 규정을 완화 적용하여 온 주상복합건축물의 개념과 불분명했던 공동주택 일조권 규정을 명확히 함.
- 공개공지를 도로변에 설치하도록 하여 기존의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함.
-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 규정하여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도록 한 소규모 옥상 광고탑 및 수조 등의 신고대상을 완화하여 실질적으로 구조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모의 시설물로 한정
- 기타 조례 운용상의 불필요한 조문 및 혼선을 야기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보완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다. 울산광역시울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12.24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4. 2. 4

2) 제안이유

- 전자이미지공인의 관리부서를 명확하게 하고, 전자이미지공인 공고를 의무화하는 개정 사무관리규정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관련 공인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전자이미지공인의 대장과 컴퓨터 파일의 관리부서를 명확화 하기위해 일부개정
- 전자이미지공인을 일반공인의 관리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원형 변경시 재등록 근거 명시
- 전자이미지공인의 공고 의무화로 일부 개정
- 공인의 폐기시 전문관리기관으로의 이관 의무화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라. 울산광역시울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의안번호 제110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12.24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4. 2. 4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2) 제안이유

- 1회용품 등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날로 늘어가는 폐기물에 따른 국토를 보전하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위반행위에 대하여 부족한 단속인력 현실을 개선하고
- 1회용품 사용자인 소비자의 관심과 직접적인 참여를 통하여 군민의 1회용품 사용억제 생활화 유도과 사업자의 1회용품 사용억제 의무 조기준수 실현을 위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병행하여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3) 주요골자

- 신고 및 포상금 지급대상
 -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의 1회용품 사용 또는 무상제공, 재활용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않은 위반 사업자 신고자
-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기준
 - 사업장 면적, 객실 수에 따라 과태료 10~300만원 부과
 - 사업장 면적, 객실 수에 따라 포상금 3~100만원 한도
- 과태료 징수에 따른 의견진술, 처분통지 및 이의제기 등

4) 심사결과 : 수정가결

5) 수정요지

- 조문의 표현이 부정확하고 적용 또는 해석상의 논란 대상이 될 우려가 있어 조례안중 조문 일부를 자구 수정.

마. 울산광역시울주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의안번호 제111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12.31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4. 2. 4

2) 제안이유

- 종전 사회단체보조금을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하여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지원하였으나 2004년부터는 통합하여 자치단체별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 그 시행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코자 보조금지원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절차의 구체화
 - 지원계획 공고 ⇒ 신청·접수 및 검토 ⇒ 상임위원회 심의 ⇒ 지원결정 통보
-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 구 성 : 군의원, 교수, 민간전문가, 공무원 등 9인 이내
 - 기 능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 사후평가 및 별도 계정설정 등 사후관리 강화
 - 실적보고,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결과 등 보고 의무화

4) 심사결과 : 수정가결

5) 수정요지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관한 기능을 강화하고자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의 위원수보다 민간 위원수가 50%이상이 되도록 하고,
- 심의할 의안을 심의 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제출토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바.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2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 1.14 이몽원의원의외 4명
- 의결일자 : 2004. 2. 4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2003.7.18)의 개정으로 지방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고, 공무원여비지급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에 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월550,000원에서 900,000원으로 조정하고, 보조활동비를 월 200,000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 신설
- 의원의 국외 여비지급 범위를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인상 금액을 반영하여 현실화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사.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의안번호 제113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 1.20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4. 2. 4

2) 제안이유

- 2002. 11. 22일 의회에서 의결된 진해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예정부지가 국유재산 매각불가 통보 및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경관녹지)으로 지정되어 공중화장실 건립이 불가능함에 따라 위치를 변경코자 함.

3) 주요골자

- 취득물건 현황

구분		건수 (필지수, 동수)	면적 (㎡)	금액 (천원)	위치	비고
건물	진해해수욕장 공중화장실 변경취득	1	83	120,000	서생.진해. 57-16 앞 공유수면	콘크리트 슬라브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제66회 임시회

1. 개최배경

제66회 임시회는 울산광역시울주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김석암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2004년 3월 15일 소집공고를 거쳐 2004년 3월 24일에 개최하였다.

2. 의사일정

제66회울주군의회(임시회)

2004. 3.24~ 3.26 (3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4. 3.24 (수) 11:00	1	1. 제66회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 2. 울산광역시울주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제66회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선임의건	
2004. 3.25 (목)		상임위원회활동	
2004. 3.26 (금) 10:00	2	1. 울산광역시울주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울주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부결

3. 주요안건 처리 결과

가.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7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 3.10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4. 3.26

2) 제안이유

-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자중 중학생을 제외하고 고등학교 재학생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코자 하며,
- 장학금액이 1급지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인문계기준)의 지급액을 초과하는 고등학교(자립형 사립고 등)의 경우 1급지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인문계기준)학비 전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중·고등학생” 부분을 “고등학생”으로 변경
- “중·고등학교 재학생”부분을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개정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 기업체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규정 신설
- “중학생과 고등학생수의 균형” 부분을 삭제
- 장학금액이 1급지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인문계)의 공납금 금액을 초과하는 고등학교(자립형 사립고 등)의 경우 지급금액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상한선이 1급지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인문계기준)의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단서조항 신설

4) 심사결과 : 수정가결

5) 수정요지

- 안 제6조의 조문은 장학금 지급기준, 범위, 집행기준 등 복잡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이해하기 쉽게 명확히 작성하려는 것임.

나. 울산광역시울주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8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 3.10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4. 3.26

2) 제안이유

-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자 중 중학생을 제외하고 고등학교 재학생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코자 하며,
- 장학금액이 1급지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인문계 기준)의 지급액을 초과하는 고등학교(자립형 사립고 등)의 경우 1급지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인문계기준) 학비 전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중·고등학생 자녀” 부분을 “고등학생 자녀”로 변경
- “중학교의무교육 지역을 실제 납입액만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부분을 삭제
- 장학금액이 1급지 평준화지역 고등학교(인문계)의 공납금 금액을 초과하는 고등학교(자립형 사립고 등)의 경우 지급금액 상한선이 1급지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인문계기준)의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단서조항 신설

4) 심사결과 : 수정가결

5) 수정요지

- 안 제6조의 조문은 장학금 지급기준, 범위, 집행기준 등 복잡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이해하기 쉽게 명확히 작성하려는 것임.

다.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 3.10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4. 3.26

2) 제안이유

-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거나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현행 위원장 1인과 6인이내의 위원에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정기분 납세고지서중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보통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신설
- 신고납부세목의 신고납부 동시이행절차가 신고절차와 납부절차로 분리됨에 따라 그 의무불이행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성실 가산세를 각각 적용하도록 함.
- 현재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인 주행세 법정세율을 1,000분의 175로 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라.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0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 3.10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4. 3.26

2) 제안이유

- 도로명 부여사업과 사회복지, 농업시설 등 늘어나는 행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2004년도 지방공무원 확대지침에 의거 33명(표준정원 17명, 보정정원 16명)의 증원을 정원의 총수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현 정원 630명, 표준정원 647명, 보정정원 679명)

3) 주요골자

- 안제2조(정원의 총수) : 증원되는 인원 33명을 명기
 - 정원의 총수 : 630명 → 663명 (증33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615명 → 647명 (증32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5명 → 16명 (증 1명)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5) 의견제시

- 부서별 증원계획 인력 33명(본청30, 보건소1, 읍1, 의회1)중
 - 기획감사담당관실 공직자윤리인력사무 1명,
지방분권투자심사사무 1명
 - 문화공보담당관실 홍보분야 전문계약직 1명
 - 민원지적과 도로명부여 등 사무증가 1명
 - 지역경제과 기업유치 전담 2명
 - 복지위생과 5명중 사회복지분야 2명
 - 환경보호과 3명중 1명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 농산과 농업통상 전문계약직 1명
- 산림과 녹지공원업무증가 1명 등의 부분은
업무의 성질 및 사무의 양 등으로 볼 때 기존인력 및 증원
계획인력 상호간 운영의 합리화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청의 증원계획인력 30명중 11명을 감하여 읍·
면에 증원토록 의견을 제시

□ 제67회 임시회

1. 개회배경

제67회 임시회는 울산광역시울주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의 3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김석암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2004년 5월 12일 소집공고를 거쳐 2004년 5월 18일에 개최하였다.

2. 의사일정

제67회울주군의회(임시회)

2004. 5.18~ 5.20 (3일간)

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4. 5.18 (화) 11:00	1	1. 제67회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 2. 울산광역시울주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제67회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선임의건	
2004. 5.19 (수)		상임위원회활동	
2004. 5.20 (목) 10:00	2	1. 울산광역시울주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원전소재지방자치단체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 4. 망양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변경의 견청취의건	심사보류

3. 주요안건 처리 결과

가. 원전소재지방자치단체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 (의안번호 제123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 4.23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4. 5.20

2) 제안이유

- 원자력발전소가 건설·가동중에 있는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전사고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상호 협의하고 정부와 한수원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 풍조를 일소
- 원자력 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안사항들에 대하여 공동 대응코자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을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협의회 구성(안 제3조)
 - 5개 지방자치단체(경주시, 기장군, 울주군, 영광군, 울진군)
- 주요 협의사항(안 제4조)
 - 원자력발전소 건설·운영관련 각종현안과 민원사항
 -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
 - 원전방사능 방재 및 원자력시설보호등에 관한 사항
 - 원전을 활용한 지역발전방안 등

- 회의개최(안 제5조)
 - 협의회 회의는 년2회 개최하고, 협의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수시소집 가능
- 경비부담(안 제10조)
 - 협의회 및 실무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공통경비 부담원칙(협의회 창립 첫째 각 자치단체가 5,000천원씩 부담)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5) 의 견 서 : 원전소재지방자치단체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중 향후 수정·보완해야할 사항

- 규약안 제1조의 목적에 “행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가 제2조 명칭에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로 해야 규약 전체 내용과 맞게됨.
- 제3조3항 “간사를 둘 수 있으며”를 “간사를 둔다”로
- 제5조 회의개최에 정기회의 개최 기일을 정하지 않아 수시회의와 구분이 가지 않음.
- 제5조3항의 회의가 있을 때마다 안건을 준비하여 위원에게 미리 배포한다고 되어 있는데 미리가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 없어 기일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제5조6항에 회의결과를 각 자치단체에 송부하고 각 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다에 해당 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다 와 같이 해당 각 자치단체에 송부한다로 명확히 해서 전 지자체, 또는 해당지자체와 혼동을 방지함이 타당할 것임.
- 제7조 자문위원에 ()안의 자문의원과 내용에서 자문위원과의 상이한 점과 자문위원은 몇 명 내외 등 구체적인 구성방법.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나. 망양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변경의견청취의견
(의안번호 제124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 5. 8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4. 5.20

2) 제안이유

- 건설부 고시 제665호('90. 10. 15)로 결정되고 경상남도 고시 제 330호('90. 10. 24)로 지적승인된 망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개발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결정(변경) 내역

구 분	당 초		변 경 (m ²)	변 경 후		비 고	
	면적(m ²)	구성비 (%)		면적(m ²)	구성비 (%)		
합 계	286,800	100.0	2,426	289,226	100.0	분할측량결과	
상업용지	14,433	5.0	감1,759	12,674	4.4		
주거용지	소계	174,118	60.7	1,662	175,780	60.8	
	일 반 주택지	174,118	60.7	감58,195	115,923	40.1	
	공 동 주택지	-	-	59,857	59,857	20.7	
공공용지	소 계	98,249	34.3	2,523	100,772	34.8	
	도 로	78,075	27.2	감2,575	75,500	26.1	26개노선(증4)
	공 원	8,604	3.0	289	8,893	3.1	어린이공원 3개소(감2)
	학 교	11,570	4.1	430	12,000	4.1	초등학교 1개소
	주차장	-	-	1,720	1,720	0.6	노외주차장 1개소 신설
	하 천	-	-	2,656	2,659	0.9	회야강하천정비 계획수용·신설

4) 심사결과 : 의견서 채택

5) 의 건 서

- 공동주택지 인근 일반주택지등 일조권, 조망권 등 차후 주민불편과 민원이 예상되므로 충분한 검토후 사업시행.
- 당초 토지구획정리사업시 본 의회에서 의견제시한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공시설용지 확보.
- 또한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제외된 회야강변 자투리땅에 대한 매입등 민원해소 대책.
- 초등학교 앞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한 인도 설치가 절실히 요구됨.
- 공동주택지와 어린이 공원이 경계표시가 될 수 있도록 인도 등 설치

다.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번호 제125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 5.11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4. 5.20

2)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659-2번지의 공유재산은 1981년부터 2003.6.30까지 1급관사 및 울주군실업팀선수단 숙소로 사용하여온 20년이 지난 노후화 된 건물로 수시 보수하여 사용할 경우 예산 낭비요인이 되고 재산소재지가 남구 관할로 군 자체적인 다방면 활용도가 적으며 토지의 규모나 가치성에 비하여 이용의 효율성이 낮아 이를 매각하고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 군지역내 대체재산을 매입하여 오는 6월30일로 임차 만료되는 1급관사(군수), 3급관사(실업팀, 교환공무원 등의 숙소)등의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매각대상 재산현황

소재지	종별	토 지		건물면적		건축년도	참고
		지목 (용도지역)	면적 (㎡)	구조	연면적 (㎡)		
울산광역시 남구신정동 659-2	단독 주택	대지 (일산상업 지역)	608.8 (184평)	2층조적조 스라브와가	215.12 (65평)	1981. 11.30	가 감정액 700백만원

- 매입대상 재산현황

소재지	종별	건 물			건축 년도	용도	매입가액
		구조	동수	면적 (㎡)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공동주택 (아파트)	철근 콘크리트	3동	1동/120 내외	1992년 이후	1·3급 관사	약600백만원

4) 심사결과 : 수정가결

5) 수정요지

- 매입부분 중 1호 관사는 매입계획대로 취득하고, 3호 관사는 활용계획이 부적절하여 불링실업팀을 기존 3급관사(남구 신정동 올림푸스 골든 1동 1010호)로 활용하고,
- 일부 공중보건의 숙소사용에 대하여는 향후 보건소 신축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 교환공무원 숙소는 취득보다는 임차 활용하는 방안이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차원에서 타당하므로 수정가결하고 기타는 원안 가결함.

□ 제68회 임시회

1. 개회배경

제68회 임시회는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5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김석암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2004년 6월 12일 소집공고를 거쳐 2004년 6월 19일에 개회하였다.

2. 의사일정

제68회울주군의회(임시회)

2004. 6.19~ 7. 1 (13일간)

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4. 6.19 (토) 11:00	1	1. 제68회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 2. 울산광역시울주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4.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제68회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선임의건	
2004. 6.21 ~ 6.23		상임위원회활동	
2004. 6.24 (목) 11:00	2	1.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 3.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울주군주민투표조례안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4. 6.25 ~ 6.28		상임위원회활동	
2004. 6.30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	
2004. 7. 1 (목) 11:00	3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 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 4.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제88회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임시회회기변경안 	
2004. 7. 2 (금) 10:00	4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장단 선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의장선거 나. 부의장선거 다. 상임위원장선거 	
2004. 7. 3 (토) 10:00	5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임위원회 구성 	

3. 주요안건 처리 결과

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번호 제12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 6. 8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4. 6.24

2) 제안이유

- 석남사 공중화장실 신축
 - 문화관광부의 관광지화장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관광지 등의 피서객 및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 울주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석남사 소유 재래식 화장실을 철거하고 같은 위치에 현대식으로 신축
- 울주군 전천후 게이트볼장 및 생활체육시설 조성
 -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울주군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사업과 연계하여 군민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체육여건을 조성하고, 울주군 전천후 게이트볼장과 아울러 족구장, 배구장 등 다양한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기위한 토지매입임.
- 온산읍청사 증축
 - 온산읍사무소 본관의 2층과 3층(792㎡)은 문화관광부 문화예술 기반구축 및 지역주민의 문화체험 공간조성 지원방침에 의거 2001년 12월부터 “울주문화의집”으로 운용하고 있어 매월 개최하는 각종 단체들의 대·소 회의실 및 직원 휴게실 등이 없어 청사사용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를 해소코자 증축하려는 것임.
- 봉계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 2004년도 재래시장활성화 국비보조사업으로 결정되어 진입로 부지매입, 장옥신축, 주차장조성 등의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재래시장활성화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임.
- 상서경로당 신축
 - 온양 상서마을의 기존 경로당이 노후되어 누수 등이 발생하고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협소하여 이용에 불편이 많아 기존부지에 신축하려는 것임.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 지랑경로당 신축
 - 삼동 지랑마을이 기존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으나 구조체의 균열 및 누수현상이 심화되어 이용에 애로가 많아 기존경로당 철거후 인근부지에 신축하고자 함.
- 중리경로당 신축
 - 두동 하월평 중리마을의 노인들이 여가활동과 친목도모를 위한 경로당이 없어 노인들의 단체활동 등 노인복지증진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이를 신축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하려는 것임.
- 범서읍 보건지소 이전 신축지 부지매입
 - 현재 범서읍 보건지소의 건물은 1986년도에 건축된 노후된 건물로 읍의 인구수에 대비 진료실 및 민원인 대기공간이 협소하고 잦은 수선공사 및 의료장비 미 설비로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에 애로가 있어 이를 해소코자 인근 대로변으로 이전 신축코자 함.

3) 주요골자

- 취득물건 현황

구분		건수 (필지수, 동수)	면적 (㎡)	금액 (천원)	위치	비고
토지	울주군전천후게이트볼장부지매입	2	3,358	406,318	웅촌.곡천 252-10외1	
	봉계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8	374	400,000	두동.봉계 510-4외7	
	범서읍 보건지소 신축부지	1	613	300,000	범서.입암 428-4	토지매입 및 건물보상

제3절 회기별 의안처리 현황

구분		건수 (필지수, 동수)	면적 (㎡)	금액 (천원)	위치	비고
건물	석남사 공중화장실 신축	1	60 (1층)	130,000	상북.덕현 산117	콘크리트 기와
	온산읍청사 증축	1	210 (2층)	210,000	온산.덕신 36-4	휴게실,식당, 회의실
	봉계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2	1,057	1,000,000	두동.봉계 526외	장옥2동
	상서경로당	1	95.86 (1층)	116,000	온양.동상 1014-2	
	지랑경로당	1	100 (1층)	120,000	삼동.조일 627-1	
	중리경로당	1	82.64 (1층)	121,000	두동.월평 1166-5	

4) 심사결과 : 수정가결

5) 수정요지

- 두동면 하월평리 중리경로당 신축건은 2003년도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시행중인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 추진 중이므로 본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함이 타당하여 제외하고 기타는 원안 가결함.

나.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0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 6. 8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4. 6.24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2) 제안이유

- 시범사회복지사무소의 신설과 지방분권·균형발전 추진 및 수질오염 총량제 등 관련 9명 증원에 따른 일부사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생사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사회복지사무소 신설
 - 사회복지사무소에 두는 과 및 대장의 사무분장 중 “위생”사무 추가
 - 복지지원과 : 복지행정, 조사상담, 서비스연계, 복지지설
 - 복지사업과 : 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아동복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자원봉사센터, 위생
- 사회복지사무소 신설에 따른 업무조정중 위생업무의 “주민자치과”로의 이관 삭제
- 부칙사항 : 다른 조례의 개정
 - 울산광역시울주군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
 - 식품기금출납명령관 “총무국장”을 “사회복지사무소장”으로 수정

4) 심사결과 : 수정가결

5) 수정요지

- 사회복지사무소장 업무분장에 관한 사무중 중복사무 조항 삭제
 - 안 제7조의2(사회복지사무소에 두는 과)의 제2항제2호 종합사회복지관운영,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사무 삭제

다.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1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 6. 8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4. 6.24

2) 제안이유

- 시범사회복지사무소 신설 및 지방분권특별법 등 3대 특별법 시행, 수질오염 총량제 등 늘어나는 행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2004년도 공무원확대지침에 의거 9명의 증원을 정원의 총수에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현정원 663명, 표준정원 647명, 보정정원 679명)

3) 주요골자

- 제2조(정원의 총수) : 증원되는 인원 9명을 명기
 - 정원의 총수 : 663명 → 672명 (증9명)
 - 1. 집행기관의 정원 : 647명 → 656명 (증9명)
 -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6명 → 16명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라.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2호)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 6. 8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4. 6.24

2) 제안이유

- 시범사회복지사무소의 신설로 읍·면장에 권한 위임하는 사무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와 관련한 업무등을 본청으로 이관 및 위생사무의 부서를 조정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사회복지사무소 신설에 따른 사회복지업무 위임사무 읍·면
→ 본청으로 이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
 - 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 위생업무 사회복지사무소로 부서명칭 변경에 따른 부서조정
 - 별표1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중 복지위생과를 사회복지사무소로(복지위생과 → 사회복지사무소로)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마.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3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 6. 8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4. 6.24

2) 제안이유

- 사회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 관련제도를 개선하려 하는 것임.

3) 주요골자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함.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11월~2월)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일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함.
-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함.

4) 심사결과 : 수정가결

5) 수정요지

- 비밀엄수 조항 내용이 추상적이고,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으며,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제52조와 기타 개별법령에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 준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신설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바. 울산광역시울주군주민투표조례안 (의안번호 제134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 6. 8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4. 6.24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

제3절 회기별 의안처리 현황

표의 대상, 군의 책무, 주민투표청구 주민수,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 정책결정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의견 반영을 통한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3) 주요골자

-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대상을 한정
- 투표청구 주민수를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로 정함.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 처리기간 및 투표운동 제한사항을 규정

4) 심사결과 : 수정가결

5) 수정요지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에 관하여 “7인 이상위원”이라는 포괄적 안으로 제정된 안에 대하여 위원회 운영의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7인이상 11인 이내 위원”으로 상한 기준을 마련함.

사.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6호)

1) 심의경과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 6.25 김진근의원외 3명
- 의결일자 : 2004. 7. 1

2) 제안이유

- 시범사회복지사무소의 신설로 관련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의정활동 추진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에 사회복지사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상임위원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사회복지사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아.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7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 6.25 김진근의원외 3명
- 의결일자 : 2004. 7. 1

2) 제안이유

- 시범사회복지사무소의 신설로 관련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의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소장” 신설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자.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8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 6.30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4. 7. 1

2) 제안이유

-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처리지침”에 의거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부칙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부칙개정
 - 조례 제293호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조례중개정조례 부칙개정
 - 제1조(시행일) : 주민자치과에 대하여
2004년 6월30일까지 적용 → 2005년 6월30일까지 적용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아. 제3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의견

- 제3대 후반기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 의장에는 서생면 출신인 김용원 의원이, 부의장 선거는 두동면 출신인 서우규 의원이 선출되어 후반기 의장단을 구성하였다.
- 이어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온산읍 출신인 이몽원 의원이, 내무위원장으로 삼남면 출신인 김진근 의원이, 산업건설위원장으로 범서읍 제2선거구 출신인 송정문 의원이 선출되어 울주군의회 제3대 후반기 상임위원장 구성이 완료되었다.

제4절 예산 및 결산 처리현황

□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제52회 정례회)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 7. 3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2. 9.14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 같은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결산검사 위원회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단위 : 원)

회 계 별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잉 여 금
합 계	212,753,931,072	155,995,670,910	56,758,260,162
일반회계	178,335,762,940	136,360,908,230	41,974,854,710
특별회계	34,418,168,132	19,634,762,680	14,783,405,452

4. 결산검사위원 감사의견 요지

○ 세입부문

-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751억 1,972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현액보다 9.5% 더 많은 1,917억 6,905만원임. 수납액은 1,783억 3,576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3%임. 미수납액은 130억 549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6.8%를 차지하며, 이중 지방세 미수납액은 77.1%인 100억 2,747만원으로, 사유는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무재산, 고질적 체납, 거소불명 등입니다.
- 지난해와 비교하여 전체 미수납액은 비슷하나 고질적 체납액은 전년도보다 7억 900만원이 증가하였음. 차년도 이월 및 불납결손이 되지 않도록 당해연도 징수에 필요한 대책이 요구됨.
- 12억 9,373만원의 지방양여금이 세입에서 누락되었음. 세입부서와 예산부서에서 예산의 기간귀속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결과이며, 결산검토에서 발견되어 2001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처리하였음.

○ 세출부문

-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751억 1,972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363억 6,100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의 77.9%가 집행되었음.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111억 7,800만원으로서 전체 예산현액의 6.4%임. 원인별 내용을 요약하면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와 예산집행 잔액이 각각 75억 4,400만원과 32억 5,100만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96%임. 이는 전체 예산규모가

증가한 영향도 있으나, 예산의 신중한 편성과 추경을 통하여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금액은 3억 2,035만원이며 254만원은 예산편성 지침의 각 목내 세목예산변경 사용원칙에 따라 융통처리 되었음.

5. 심의결과 의견 요지

○ 세입부문

- 2001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이월금 279억 6,964만원을 포함하여 2,097억 601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273억 566만원임. 수납액은 2,127억 5,393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3.5%이며 불납결손액은 4억 3,065만원, 미수납액은 141억 2,108만원임. 지방세 100억 2,747만원과 세외수입 29억 7,023만원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에서 11억 1,558만원이 체납되었음.
-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징수율이 46.1%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율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강화와 체납발생시 재산압류 등 신속한 법적절차 이행과 지속적인 징수노력이 요구됨.

○ 세출부문

- 2001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097억 601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559억 9,567만원으로 예산현액의 74.3%가 집행되었음. 불용액은 129억 9,618만원으로 예산현액의 6.2%를 차지하고 있음.
- 현액대비 불용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도 9%에서 6.2%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불용액의 대부분이 예비비와 예산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집행 잔액으로 불필요한 예산은 결산추경시 삭감조정하는 등 예산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이 160건에 332억 2,051만원이고, 사고이월이 49건에 43억 9,678만원으로 총 210건에 407억 1,416만원임. 이 금액은 전년도에 비해 45.5%가 증가한 것으로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시기 또는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한 사전검토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앞으로 사업계획검토 및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200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제52회 정례회)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 7. 3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2. 9.14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 예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지출결정액	지 출 액	불 용 액
일반회계	7,958,693	414,878	367,366	47,511

4. 결산검사위원 감사의견 요지

- 불용으로 처리된 사항 중 어정관리의 적조방제사업 예산액 39백만원이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예비비지출 예산의 필요성이 없어졌으나, 이를 차후의 추경예산편성에서 적절히 반영하지 않아 예비비계정에서 불용으로 처리되었으며, 이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신중함과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5. 심의결과 의견 요지

- 예비비 예산액은 79억 5,869만원으로 한해대책사업비 외 8건에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4억 1,488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6,737만원을 지출하고 적조 방제사업 1건에 대해 4,751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음.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을 하기 위한 경비로써 금번 예비비는 적절한 시기에 집행한 것으로 사료되나, 상복면 청사 신축감리비 2,170만원, 일용인부임 1,400만원, 직급보조비 인 기타업무추진비 3,250만원은 예측이 가능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53회 임시회)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 9.16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2.10. 7

2.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편성한 200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골자

- 예산총액 (단위 : 천원)

회계별	2002년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제2회추경)	증가율 (1회추경대비)
합 계	216,920,186	192,875,253	24,044,933	12.5%
일반회계	169,193,300	145,814,379	23,378,921	16.0%
특별회계	47,726,886	47,060,874	666,012	1.4%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692,907	599,931	92,976	15.5%
의료보호기금	71,307	71,307	0	
생활보호자생활안정기금	510,066	479,775	30,291	6.36%
주차장	406,028	391,199	14,829	3.8%
발전소주변지역지원	37,393,168	36,883,324	509,844	1.4%
농공단지조성사업	127,790	127,790	0	
댐주변지원사업비	8,525,620	8,507,548	18,072	0.2%

4. 심의결과

○ 2002년도 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 요구액	예산 심 의 내 역				확 정 예산액	일시차입 한 도 액
		삭 감 액		예 비 비			
		세입	세출	편성액	확정액		
합 계	216,920,186		4,859,849	4,011,945	8,871,794	216,920,186	6,507,606
일 반 회 계	169,193,300		4,229,849	3,676,887	7,906,736	169,193,300	5,075,799
특 별 회 계	47,726,886		630,000	335,058	965,058	47,726,886	1,431,807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692,907		0	0	0	0	20,787
의료보호 기금	71,307		0	2,700	2,700	71,307	2,139
생활보호자 생활안정기금	510,066		0	0	0	0	15,302
주 차 장	406,028		0	17,886	17,886	406,028	12,181
발전소주변 지역지원	37,393,168		630,000	0	630,000	37,393,168	1,121,795
농공단지 조성사업	127,790		0	0	0	0	3,834
댐주변지원 사업비	8,525,620		0	314,472	314,472	8,525,620	255,769

5. 심의내역

○ 세입부문

-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1,928억 7,525만원보다 240억 4,493만원이 증액된 2,169억 2,018만원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458억 1,438만원보다 233억 7,892만원이 증액된 1,691억 9,33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

제4절 예산 및 결산 처리현황

산 470억 6,087만원보다 6억 6,601만원이 증액된 477억 2,68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변동사항 없이 원안 가결됨.

○ 세출부문

- 사전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은 청소년 수련관 건립공사 관련 예산 등 총 26건에 대하여 48억 5,98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음.
- 회계별 조정내용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요구금액의 18%인 42억 2,985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억 3,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음.
- 예산안 심사에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과 예산편성 관계규정의 적정여부 및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중점 심사기준으로 정하여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원안심사 하였으며, 예산심의 때마다 지적되고 있는 법적인 사전 절차를 미이행한 부분, 일부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 예산의 과다 계상된 부분, 사업계획에 있어서 재검토가 요구되는 일부사업은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200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56회 제2차 정례회)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12. 9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2.12.24

2.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편성한 2002년도 제3회 일반·특별 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골자

- 예산총액 (단위 : 천원)

회계별	2002년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제3회추경)	증가율 (2회추경대비)
합 계	232,684,429	216,920,186	15,764,243	7.26%
일반회계	183,277,543	169,193,300	14,084,243	8.32%
특별회계	49,406,886	47,726,886	1,680,000	3.52%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692,907	692,907	0	0%
의료보호기금	71,307	71,307	0	0%
생활보호자생활안정기금	510,066	510,066	0	0%
주차장	406,028	406,028	0	0%
발전소주변지역지원	37,393,168	37,393,168	0	0%
농공단지조성사업	127,790	127,790	0	0%
댐주변지원사업비	10,205,620	8,525,620	1,680,000	19.70%

4. 심의결과

- 2002년도 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 요구액	예산 심 의 내 역				확 정 예산액	일시차입 한 도 액
		삭 감 액		예 비 비			
		세입	세출	편성액	확정액		
합 계	232,684,429		268,396	16,928,427	17,196,823	232,684,429	6,980,533
일 반 회 계	183,277,543		268,396	12,312,803	12,581,199	183,277,543	5,498,326
특 별 회 계	49,406,886		0	4,615,624	4,615,624	49,406,886	1,482,207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692,907		0	0	0	692,907	20,787
의료보호 기금	71,307		0	0	0	71,307	2,139
생활보호자 생활안정기금	510,066		0	0	0	510,066	15,302
주 차 장	406,028		0	60,924	60,924	406,028	12,181
발전소주 변지역지원	37,393,168		0	4,130,000	4,130,000	37,393,168	1,121,795
농공단지 조성사업	127,790		0	106,088	106,088	127,790	3,834
댐주변지 원사업비	10,205,620		0	351,912	351,912	10,205,620	306,169

5. 심의내역

- 세입부문

-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2,169억 2,019만원보다 157억 6,424만원이 증액된 2,326억 8,443만원임. 회계별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691억 9,330만원보다 140억 8,424만원이 증액된 1,832억 7,75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77억 2,689만원보다 16억 8,000만원이 증액된 494억 68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변동사항 없이 원안 가결됨.

○ 세출부문

- 세출예산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청량 삼정경로당 신축공사 시설비 외 4건에 대하여 2억 6,839만 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음.
- 회계별 조정내용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요구금액의 1.9%를 삭감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음.
- 예산안 심사에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과 예산편성 관계규정의 적정여부 및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중점 심사기준으로 정하여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원안심사 하였으며, 예산심의 때마다 지적되고 있는 법적인 사전 절차를 미이행한 부분, 일부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 예산의 과다 계상된 부분, 사업계획에 있어서 재검토가 요구되는 일부사업은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음.
- 특히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명시이월사업의 과다발생은 건전재정 측면에서 볼 때 예산의 낭비요인이 될 수 있는바, 향후 예산안편성시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보다 철저히 분석하여 이월사업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토록 집행부에 요구하였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56회 제2차 정례회)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11.21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2.12.16

2.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30조에 따라 편성한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골자

- 예산총액 (단위 : 천원)

회계별	2003년예산액	2002년예산액	증감	증가율
합 계	155,895,780	160,071,873	△4,176,093	△2.61%
일반회계	140,007,975	119,622,574	20,385,401	17.04%
특별회계	15,887,805	40,449,299	△24,561,494	△60.72%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528,567	599,931	△71,364	△11.89%
의료보호기금	32,650	21,700	10,950	50.46%
생활보호자 생활안정기금	501,861	479,775	22,086	4.60%
주 차 장	364,499	339,712	24,787	7.29%
발전소주변지역지원	4,878,528	30,374,000	△25,495,472	△83.93%
농공단지조성사업	131,700	126,681	5,019	3.96%
댐주변지원사업비	9,450,000	8,507,500	942,500	11.07%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4. 심의결과

○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 요구액	예산 심 의 내 역				확 정 예산액	일시차입 한 도 액
		삭 감 액		예 비 비			
		세입	세출	편성액	확정액		
합 계	155,895,780		2,890,746	2,081,137	4,971,883	155,895,780	4,676,873
일 반 회 계	140,007,975		2,589,746	2,031,137	4,620,883	140,007,975	4,200,239
특 별 회 계	15,887,805		301,000	50,000	351,000	15,887,805	476,634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528,567		0	0	0	528,567	15,857
의료보호 기금	32,650		0	0	0	32,650	980
생활보호자 생활안정기금	501,861		0	0	0	501,861	15,056
주 차 장	364,499		1,000	0	1,000	364,499	10,935
발전소주변 지역지원	4,878,528		0	0	0	4,878,528	146,356
농공단지 조성사업	131,700		0	50,000	0	131,700	3,951
댐주변지원 사업비	9,450,000		300,000	0	300,000	9,450,000	283,500

5. 심의내역

○ 세입부문

- 2003년도 예산의 규모는 2002년도 당초예산 1,600억 7,187만원보다 41억 7,609만원이 감소된 1,558억 9,578만원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002년도 당초예산 1,196억 2,257만원보다

제4절 예산 및 결산 처리현황

203억 8,540만원이 증액된 1,400억 79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02년도 당초예산 404억 4,930만원보다 245억 6,149만원이 감소된 158억 8,78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변동사항 없이 원안 가결됨.

○ 세출부문

- 예산요구액중 별관청사신축 공사시설비 부족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 1억 6,889만 2,000원을 증액하고, 의회사무과 일반수용비 등 170건에 대하여 30억 5,963만 8,000원을 예비비로 조정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사회단체보조금 문화재 보존관리비 8,200만원에 대하여 문화원에서 관리하는 사업을 집행부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담당부서 자체사업의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목변경 조정하였음.
- 회계별 조정내용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요구금액의 1.8%인 25억 8,974만 6,000원을 삭감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요구금액의 1.9%인 3억 1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음.
- 예산안 심사에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과 예산편성 관계규정의 적정여부 및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중점 심사기준으로 정하여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원안심사 하였으며, 사업비의 부족 부분에 대하여는 증액하였으나 예산심의 때마다 지적되고 있는 법적인 사전절차를 미이행한 부분, 일부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 예산의 과다 계상된 부분, 사업계획에 있어서 재검토가 요구되는 일부사업은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60회 임시회)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5.28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3. 6.21

2.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편성한 2003년도 제1회 일반·특별 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골자

- 예산총액 (단위 : 천원)

회계별	2003년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제1회추경)	증가율
합 계	190,937,581	155,895,780	35,041,801	22.48%
일 반 회 계	174,280,651	140,007,975	34,272,676	24.48%
특 별 회 계	16,656,930	15,887,805	769,125	4.84%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610,198	528,567	81,631	15.44%
의료보호기금	54,051	32,650	21,401	65.55%
생활보호자생활안정기금	525,597	501,861	23,736	4.73%
주 차 장	392,806	364,499	28,307	7.77%
발전소주변지역지원	8,814,510	4,878,528	3,935,982	80.68%
농공단지조성사업	111,596	131,700	△20,104	△15.26%
댐주변지원사업비	6,148,172	9,450,000	△3,301,828	△34.94%

4. 심의결과

○ 2003년도 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 요구액	예산 심 의 내 역				확 정 예산액	일시차입 한 도 액
		삭 감 액		예 비 비			
		세입	세출	편성액	확정액		
합 계	190,937,581		2,003,636	7,596,194	9,599,830	190,937,581	5,728,128
일 반 회 계	174,280,651		1,983,636	6,746,561	8,730,197	174,280,651	5,228,420
특 별 회 계	16,656,930		20,000	849,633	869,633	16,656,930	499,708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610,198		0	0	0	610,198	18,306
의료보호 기금	54,051		0	24,301	24,301	54,051	1,622
생활보호자 생활안정기금	525,597		0	0	0	525,597	15,768
주 차 장	392,806		0	1,000	1,000	392,806	11,784
발전소주변 지역지원	8,814,510		20,000	119,646	139,646	8,814,510	264,435
농공단지 조성사업	111,596		0	29,896	29,896	111,596	3,348
댐주변지원 사업비	6,148,172		0	674,790	674,790	6,148,172	184,445

5. 심의내역

○ 세입부문

-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1,558억 9,578만원보다 350억 4,180만원이 증액된 1,909억 3,758만원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400억 797만원보다 342억 7,268만원이 증액된 1,742억 8,06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산 158억 8,781만원보다 7억 6,912만원이 증액된 166억 5,69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변동사항 없이 원안 가결됨.

○ 세출부문

- 문수사 극락전 공양간 개축공사 사업비 외에 44건에 대하여 20억 363만 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음.
- 회계별 조정내용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요구금액의 5.8%인 18억 8,363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요구금액의 2.6%인 2,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음.
- 예산편성시 구체적이 사업계획 없이 예산만 편성하는 사례가 있음. 이 경우 사업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의 이월, 불용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 예산안 심사에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과 예산편성 관계규정의 적정여부 및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중점 심사기준으로 정하여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원안심사 하였으며, 일부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 예산의 과다 계상된 부분, 사업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일부사업은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제61회 정례회)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6.27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3. 7.18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 같은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단위 : 원)

회 계 별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잉 여 금
합 계	278,670,741,942	172,839,246,140	105,831,495,802
일반회계	215,397,345,600	147,811,582,570	67,585,763,030
특별회계	63,273,396,342	25,027,663,570	38,245,732,772

4. 결산검사위원 감사의견 요지

- 세입부문
 - 일반회계 수납액 2,153억 9,734만원은 예산현액의 102.15%로서 전년도대비 1.05% 증가하였으며 금액으로는 45억 3,9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음. 이는 지방세 22억 8,048만원과 2002년도의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교부금이 2003년도에 입금된 금액 12억 100만원(증액교부금) 및 세외수입 10억 8,291만원의 증가에 주로 기인함.

- 일반회계중 보건소는 세입이 발생하는 계와 무관한 행정계에서 징수결의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세입의 정확한 금액의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납부금액에 의하여 징수결의가 이루어져 징수결의의 지연과 미수납액의 관리가 불가능함. 따라서 보험청구와 보호청구의 징수결의는 진료계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계는 해당계(방역계 등)에서 하여야 함. 또한 12개 보건지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3조와 '99년에 재경 13301-231에서 규정한 내용을 검토하여 수입대체 경비를 직접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을 권고함.
- 당해연도에 과년도 수입 중 불납처분한 금액은 전년대비 4억 8,813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가산금을 적용시킴에 따라 과년도 수입은 11억 8,731만원이 늘어났음. 따라서 체납금액을 줄이기 위하여 당해년도 징수결정된 세액에 대한 수납에 노력을 집중하고 가산금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과년도분에 대하여 시효완성 전이라도 무재산과 공매시 무배당이 예상되는 체납세액에 대하여 적절히 불납결손 처분할 것을 권고함. 참고로 체납현황 중 이장과 반장 및 위원회에 소속된 사람에 대한 체납금액도 132건에 6,127만원 있음.

○ 세출부문

- 지출원인행위가 회계연도 마감 전에 있었음에도 결산서에 미기재한 다수 사항들과 삼남과 언양 및 응촌 운동장의 경우 감사원의 지침 확정 후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음에도 당해연도에

이월처리한 사업등 이월사업과 관련한 오류와 이월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부분이 상당수 발견되었음.

- 이월사업비 관련규정의 개정에 따른 예산부서의 이해부족과 각 실·과의 조정요구에 대한 예산부서의 검토 부족 및 각 실·과의 사업에 대한 관리소홀 등이 위와 같은 규정적용의 오류를 발생시킨 주요 원인으로 판단됨.

5. 심의결과 의견 요지

○ 세입부문

- 2002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이월금 407억 1,415만원을 포함하여 2,733억 9,858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936억 3,429만원임. 수납액은 2,786억 7,074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4.9%이며 불납결손액은 9억 1,878만원, 미수납액은 149억 6,355만원임. 지방세 110억 6,395만원과 세외수입 32억 3,138만원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에서 6억 6,820만원이 체납되었음.
-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징수율이 44%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율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강화와 체납발생시 재산압류 등 신속한 법적절차 이행과 지속적인 징수노력이 요구됨.

○ 세출부문

- 200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733억 9,858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728억 3,924만원으로 예산현액의 63%가 집행되었음. 불용액은 270억 6,46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9%를 차지하고 있음.
- 현액대비 불용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도 6.2%에서 9.9%로 증가하였음. 아직도 불용액의 대부분이 예비비와 예산집행 잔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액으로 불필요한 예산은 결산추경시 삭감조정하는 등 예산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이 138건에 413억 3,842만원이고, 사고이월이 36건에 21억 4,081만원, 계속비 이월이 2건에 30억 9,622만원으로 총 176건에 465억 7,646만원임. 이 금액은 전년도에 비해 14.4%가 증가한 것으로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시기 또는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한 사전검토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특히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을 명확히 구분하여 불필요한 사업은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등 앞으로 사업계획 검토 및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200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견 (제61회 정례회)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6.27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3. 7.18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지출결정액	지 출 액	이월액	불 용 액
일반회계	12,581,199	2,615,039	1,428,879	1,125,343	60,817

4. 결산검사위원 감사의견 요지

- 예비비사용액은 26억 1,504만원으로서 구제역 방역과 태풍 라마 순으로 인한 피해복구비로 주로 사용되었음.

5. 심의결과 의견 요지

- 예비비 예산액은 125억 8,119만원으로 구제역 긴급 방역비 외 6건에 26억 1,503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4억 2,887만원을 지출하고 태풍피해 '루사' 피해복구사업 외 5건에 대해 11억 2,53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구제역 예방사업비 외 10건에 대하여 6,081만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음.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을 하기 위한 경비로써 금번 예비비는 적절한 시기에 집행한 것으로 사료되나, 국설치에 따른 물품구입비 3,500만원,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실 설치비 6,000만원은 예측이 가능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결산서 제출시 예비비의 지출단위 사업별로 작성되어야 하나 집행과목별로 작성되어 사업 집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시정되어야 할 것임.
- 예비비와 연결된 사업비는 사업 완료와 동시에 추경예산편성시 삭감조정하는 등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62회 임시회)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9.25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3.10.16

2.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편성한 200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골자

- 예산총액 (단위 : 천원)

회계별	2003년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제2회추경)	증가율 (1회추경대비)
합 계	220,766,970	190,937,581	29,829,389	15.62%
일 반 회 계	199,072,432	174,280,651	24,791,781	14.23%
특 별 회 계	21,694,538	16,656,930	5,037,608	30.24%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610,198	610,198	0	0%
의료보호기금	53,303	54,051	△748	△1.38%
생활보호자 생활안정기금	525,597	525,597	0	0%
주 차 장	392,806	392,806	0	0%
발전소주변지역지원	11,795,510	8,814,510	2,981,000	33.82%
농공단지조성사업	111,596	111,596	0	0%
댐주변지원사업비	8,205,528	6,148,172	2,057,356	33.46%

4. 심의결과

○ 2003년도 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 요구액	예산 심 의 내 역				확 정 예산액	일시차입 한 도 액
		삭 감 액		예 비 비			
		세입	세출	편성액	확정액		
합 계	220,766,970	30,000	564,065	11,923,738	12,457,803	220,736,970	6,622,109
일 반 회 계	199,072,432	30,000	564,065	10,950,333	11,484,398	199,042,432	5,971,273
특 별 회 계	21,694,538	0	0	973,405	973,405	21,694,538	650,836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610,198	0	0	0	0	610,198	18,306
의료보호 기금	53,303	0	0	24,303	24,303	53,303	1,599
생활보호자 생활안정기금	525,597	0	0	0	0	525,597	15,768
주 차 장	392,806	0	0	1,000	1,000	392,806	11,784
발전소주변 지역지원	11,795,510	0	0	119,646	119,646	11,795,510	353,865
농공단지 조성사업	111,596	0	0	29,896	29,896	111,596	3,348
댐주변지원 사업비	8,205,528	0	0	798,560	798,560	8,205,528	246,166

5. 심의내역

○ 세입부문

-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1,909억 3,758만원보다 297억 9,938만원이 증액된 2,207억 3,697만원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742억 8,065만원보다 247억 6,178만원이 증액된 1,990억 4,24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

제4절 예산 및 결산 처리현황

산 166억 5,693만원보다 50억 3,760만원이 증액된 216억 9,453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세입예산중 기타 잡수입의 두동은편 상리경로당 주민부담금 1건 3,000만원에 대하여 세입예산에 계상이 부적정하여 삭감조치 함.

○ 세출부문

- 문화공보담당관실의 2004년 울주달력제작 외에 48건에 대하여 5억 6,406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음.
- 회계별 조정내용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요구금액의 2.8%를 삭감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요구금액 전액을 편성 조정하였음.
- 예산안 심사에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과 예산편성 관계규정의 적정여부 및 사업의 우선순의 등을 중점 심사기준으로 정하여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원안심사 하였으며, 일부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 예산의 과다 계상된 부분, 사업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일부사업은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200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64회 제2차 정례회)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12. 9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3.12.23

2.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편성한 2003년도 제3회 일반·특별 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골자

- 예산총액 (단위 : 천원)

회계별	2003년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제2회추경)	증가율 (1회추경대비)
합 계	243,319,470	220,736,970	22,582,500	10.20%
일반회계	221,632,610	199,042,432	22,590,178	11.30%
특별회계	21,686,860	21,694,538	△7,678	△0.03%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610,198	610,198	0	0%
의료보호기금	53,303	53,303	0	0%
생활보호자생활안정기금	525,597	525,597	0	0%
주차장	382,928	392,806	△9,878	△2.51%
발전소주변지역지원	11,795,510	11,795,510	0	0%
농공단지조성사업	113,796	111,596	2,200	1.97%
댐주변지원사업비	8,205,528	8,205,528	0	0%

4. 심의결과

○ 2003년도 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 요구액	예산 심 의 내 역				확 정 예산액	일시차입 한 도 액
		삭 감 액		예 비 비			
		세입	세출	편성액	확정액		
합 계	243,319,470	0	0	18,595,135	18,595,135	243,319,470	7,299,584
일 반 회 계	221,632,610	0	0	18,362,135	18,362,135	221,632,610	6,648,978
특 별 회 계	21,686,860	0	0	233,000	233,000	21,686,860	652,606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610,198	0	0	0	0	610,198	18,306
의료보호 기금	53,303	0	0	24,303	24,303	53,303	1,599
생활보호자 생활안정기금	525,597	0	0	0	0	525,597	15,768
주 차 장	382,928	0	0	55,235	55,235	382,928	11,488
발전소주변 지역지원	11,795,510	0	0	119,646	119,646	11,795,510	353,865
농공단지 조성사업	113,796	0	0	33,816	33,816	113,796	3,414
댐주변지원 사업비	8,205,528	0	0	0	0	8,205,528	246,166

5. 심의내역

○ 세입부문

-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2,207억 3,697만원보다 225억 8,250만원이 증액된 2,433억 1,947만원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990억 4,243만원보다 225억 9,017만원이 증액된 2,216억 3,26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산 216억 9,453만원보다 767만원이 감액된 216억 8,68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변동사항 없이 원안 가결됨.

○ 세출부문

- 예산안 심사에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과 예산편성 관계규정의 적정여부 및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중점 심사기준으로 정하여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원안심사 하였으며, 결산추경 예산은 대부분 종료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특히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명시이월사업의 과다발생은 건전재정 측면에서 볼 때 예산의 낭비요인이 될 수 있는바, 향후 예산안편성시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보다 철저히 분석하여 이월사업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토록 집행부에 요구하였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64회 제2차 정례회)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11.21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3.12.16

2.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30조에 따라 편성한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골자

- 예산총액 (단위 : 천원)

회계별	2004년예산액	2003년예산액	증감	증가율
합 계	185,106,529	155,895,780	29,210,749	18.74%
일반회계	181,426,934	140,007,975	41,418,959	29.58%
특별회계	3,679,595	15,887,805	△12,208,210	△76.84%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425,417	528,567	△103,150	△19.51%
의료보호기금	35,900	32,650	3,250	9.95%
생활보호자 생활안정기금	519,292	501,861	17,431	3.47%
주 차 장	384,586	364,499	20,087	5.51%
발전소주변지역지원	2,159,537	4,878,528	△2,718,991	△55.73%
농공단지조성사업	36,738	131,700	△94,962	△72.10%
댐주변지원사업비	118,125	9,450,000	△9,331,875	△98.75%

4. 심의결과

○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 요구액	예산심의내역				확정 예산액	일시차입 한도액
		삭감액		예비비			
		세입	세출	편성액	확정액		
합 계	185,106,529		8,177,326	2,550,656	10,727,982	185,106,529	5,553,196
일반회계	181,426,934		8,039,626	2,544,798	10,584,424	181,426,934	5,442,808
특별회계	3,679,595		137,700	5,858	143,558	3,679,595	110,388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425,417		0	0	0	425,417	12,763
의료보호 기금	35,900		0	2,900	2,900	35,900	1,077
생활보호자 생활안정기금	519,292		0	0	0	519,292	15,579
주차장	384,586		0	2,958	2,958	384,586	11,538
발전소주변 지역지원	2,159,537		137,700	0	137,700	2,159,537	64,786
농공단지 조성사업	36,738		0	0	0	36,738	1,102
댐주변지원 사업비	118,125		0	0	0	118,125	3,544

5. 심의내역

○ 세입부문

- 2004년도 예산의 규모는 2003년도 당초예산 1,558억 9,578만원보다 292억 1,074만원이 증액된 1,851억 652만원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003년도 당초예산 1,400억 797만원보다 414억

제4절 예산 및 결산 처리현황

1,895만원이 증액된 1,814억 2,69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03년도 당초예산 158억 8,780만원보다 122억 821만원이 감소된 36억 7,95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변동사항 없이 원안 가결됨.

○ 세출부문

- 예산요구액중 의정홍보비 외 341건에 대하여 81억 7,73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음. 회계별 조정내용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요구금액의 4.4%인 80억 3,962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요구금액의 3.7%인 1억 377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음.
- 예산안 심사에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과 예산편성 관계규정의 적정여부 및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중점 심사기준으로 정하여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원안심사 하였으며, 사업비의 부족 부분에 대하여는 증액하였으나 예산심의 때마다 지적되고 있는 법적인 사전절차를 미이행한 부분, 일부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 예산의 과다 계상된 부분, 사업계획에 있어서 재검토가 요구되는 일부사업은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68회 임시회)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6. 8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4. 7. 1

2.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편성한 2004년도 제1회 일반·특별 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골자

- 예산총액 (단위 : 천원)

회계별	2004년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제1회추경)	증가율
합 계	263,687,149	185,106,529	78,580,620	42.45%
일 반 회 계	239,315,553	181,426,934	57,888,619	31.91%
특 별 회 계	24,371,596	3,679,595	20,692,001	562.34%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425,417	425,417	0	0%
의료보호기금	63,647	35,900	27,747	77.29%
생활보호자생활안정기금	519,292	519,292	0	0%
주 차 장	400,840	384,586	16,254	4.23%
발전소주변지역지원	19,506,616	2,159,537	17,347,079	803.28%
농공단지조성사업	37,659	36,738	921	2.51%
댐주변지원사업비	3,418,125	118,125	3,300,000	2,793.65%

4. 심의결과

- 2004년도 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 요구액	예산 심 의 내 역				확 정 예산액	일시차입 한 도 액
		삭 감 액		예 비 비			
		세입	세출	편성액	확정액		
합 계	263,687,149		2,480,479	14,064,899	16,545,378	263,687,149	7,910,614
일 반 회 계	239,315,553		2,520,479	13,682,285	16,202,764	239,315,553	7,179,467
특 별 회 계	24,371,596		△40,000	382,614	342,614	24,371,596	731,148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425,417		0	0	0	425,417	12,763
의료보호 기금	63,647		0	28,747	28,747	63,647	1,909
생활보호자 생활안정기금	519,292		0	0	0	519,292	15,579
주 차 장	400,840		0	5,126	5,126	400,840	12,025
발전소주변 지역지원	19,506,616		△40,000	348,741	308,741	19,506,616	585,198
농공단지 조성사업	37,659		0	0	0	37,659	1,130
댐주변지원 사업비	3,418,125		0	0	0	3,418,125	102,544

5. 심의내역

- 세입부문
 -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1,851억 652만원보다 785억 8,062만원이 증액된 2,636억 8,714만원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814억 2,693만원보다 578억 8,861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만원이 증액된 2,393억 1,55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6억 7,959만원보다 206억 9,200만원이 증액된 243억 7,15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변동사항 없이 원안 가결됨.

○ 세출부문

- 건설과 미불용지 보상비외 2건에 대하여 1억 4,080만원을 증액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외 53건에 대하여 25억 2,047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음.
- 회계별 조정내용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요구금액의 4.35%를 삭감 조정하였음.
- 각 부서별로 많은 명목은 용역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용역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실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지 용역으로 그치는 사례가 많아 예산 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음. 꼭 필요한 용역은 실행하되 사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함.
- 예산안 심사에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과 예산편성 관계규정의 적정여부 및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중점 심사기준으로 정하여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원안심사 하였으며, 일부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 예산의 과다 계상된 부분, 사업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일부사업은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제5절 행정사무감사

□ 2002년도 (제56회 정례회)

1. 감사목적

집행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건의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근 거

-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19조의2
-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3. 감사실시기간 : 2002. 11. 29 ~ 12. 5 (7일간)

4. 감사대상사무 : 2001. 6. 1 ~ 2002. 10. 31까지 추진한 사무전반

5.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반편성

구 분	대상	감사대상기관(부서)	감사반	감사장소
계	30개부서			
의회운영위원회	1	의회사무과	의회운영위원장의 6명	제1회의실
내무위원회	20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국(5) 보건소 전읍면(12)	내무위원장의 5명	제1회의실 및 읍·면사무소
산업건설위원회	9	경제사회국(5) 건설도시국(4)	산업건설위원장의 5명	제2회의실

6. 감사실시결과

○ 총 관

구 분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계		115	69	46
의회운영 위원회	의회사무과	5	1	4
내 무 위원회	소 계	66	41	25
	공 통	1	1	
	기획감사담당관실	5	5	
	문화공보담당관실	7	3	4
	총무국	22	13	9
	보건소	3	3	
	읍 면	28	16	12
산업건설 위원회	소 계	44	27	17
	공 통	2	2	
	경제사회국	25	13	12
	건설도시국	17	12	5

○ 시정 및 건의요구 내용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 고
의 회 사 무 과	1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 철저	의회운영 전반에 대해 정확한 판단과 의견을 의원들에게 전달하여 의원들이 보다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좌에 철저	건의
	2	울주군의회 인터넷관리 철저	우리군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민원에 대해 집행부보다 처리기간이 신속하지 않음. 앞으로 처리 기간을 정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홈페이지 관리에 철저를 요함	시정
	3	의회사무국 설치방안 검토	우리 의회의 의회사무국 설치가 시급한 실정임. 이에 따라 관계법령을 검토, 집행부와 협의하여 국 설치가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등에 건의 요망	건의
	4	읍·면별 현안사항에대 한 민원 및 각종 행사에 대한 사전 전달 철저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의 주요민원발생 및 각종 행사에 대해 뒤늦게 알고 있음. 주요 민원사항에 대한 동향을 의회사무과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알려주고, 각종 행사사항은 집행부와 협의하여 해당 읍·면 의원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조치	건의
	5	제3대의회 개원후 외국인 방문에 대한 집행부와 협의체계 마련	집행부의 각종 업무추진을 위해 외국인이 방문할시 집행부만 방문하고 의회와는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유감. 향후 예산 등 투자와 관련하여 외국인 등 집행부 방문시 의회와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체계 마련	건의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 고
내 무 위 원 회 공 통	1	보조금 정산철저	보조금은 보조금사업계획서에 의거 예산의 목적 위배여부, 사업내용 및 금액 산정 적정성 유무등을 조사검토한 후 결정 지원하여야 하고, 사업완료후 사업추진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에 의거 정산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나, 형식적인 방법에 의거 정산을 하고 있는바, 모든 보조금지원사업은 관련법령에 의거 구체적으로 사업계획대 추진실적 사업비집행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정산검사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할 것	시정
	1	이월사업 과다발생	무리한 예산 편성으로 기간내 사업을 처리하지 못하여 매년 이월사업이 과다 발생되고 있으며 또한 감사에 여러 차례 지적되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사업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 사업을 활용토록 하는 등 이월사업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근본적인 계획을 수립 할 것	시정
	2	조직관리 업무 소홀	수도법의 개정으로 상수도보호구역의 허가 관리단속 업무가 군으로 이관되었으나 직원의 보강이 없었고, 구조조정으로 대민부서는 정원이 감원된 반면, 지원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실은 2명 증원되었으며, 군수 부속실에는 관련지침을 위배하여 직원을 보강하는등 조직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바, 부족한 정원은 상부기관에 증원 요청하는 등 조직관리에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할 것.	시정
	3	군홈페이지 주민참여 게시판 관리철저	군홈페이지의 「군수에게 바란다」 등의 주민참여 게시판에 근거 없는 자료,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 등이 장시간 방치되는 경우가 있으며, 답변은 신속히 되나 실질적인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다수로 시정할 것.	시정

제5절 행정사무감사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 고
기획감사담당관실	4	예산편법 사용 시정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 통상 업무를 위한 전문계약직 인건비와 총무과 단 순노무 일용인부임을 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 사결과 삭감하였으나, 타 목적예산으로 편법 채용 및 사역한 것은 회계질서를 위배하는 사항으로 시정토록 할 것	시정
	5	특별교부세 사업선정 및 교부절차 부적정	특별교부세는 일반적인 재정운영에 산정 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보전되어 야 할 사항이나 청량면 삼정 경로당 신 축사업비는 우리군 예산에 기 반영되어 있음에도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바, 그 절 차와 사업선정이 부적정한 것으로 소신 있는 행정이 요구됨	시정
문화공보담당관실	1	군정홍보지 배부방안 검토	군정홍보지(아름다운울주) 제작배부 목적 은 좋은 시책이나, 현재 집행부의 계획대 로 주민들에 전달이 되지 않고 있는바, 전달 여부를 정확히 파악, 조사하여 전 군민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며, 또한 군정홍 보지는 순수한 소식지로서 어느 특정인 에 대한 정치성 홍보내용 등을 게재하는 일은 삼가 할 것	시정
	2	기자실 폐쇄에 따른 대책방안 마련	기자실 폐쇄이후 현재 기자들이 문화공 보담당관실을 이용하고 있어 기자와 관 계공무원 모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각종 시책홍보에도 어려움이 있으므로, 최근 타 자치단체(창녕군등)에서 기자실 브리핑룸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사항 등 을 참고하여 기자단 활용을 위한 다각적 인 방법을 강구토록 할 것	건의
	3	영화 「방아 쇠」 제작 지원 신중검토	영화 「방아쇠」 제작 지원의 목적은 향후 제작세트장을 보존하면서 관광자원화 하 는 것으로 지원(1억5천만원) 계획을 하고 있으나, 본 지역은 사유지이고 촬영이후 세트장 관리문제, 관광자원화를 위해서는 상당액의 예산투입문제 등이 있으므로 집 행시 신중을 기하도록 할 것	건의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 고
문 화 공 보 담 당 관 실	4	신불산 관광 자원 개발 종합계획 수립검토	신불산 개발은 그동안 영남알프스 관광 벨트화등을 내세워 신불산 케이블카 추진을 위해 국·내외 많은 우수시설 현지 답사 등을 하면서, 최근에는 사업중지계획을 발표하는 등 현재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이 전무한 바, 신불산 개발에 대하여 많은 주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으므로 단편적인 생각으로 추진하지 말고,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체계 있게 추진하기 바람	시정
	5	간절곶 해맞이행사 적정규모 추진	간절곶 해맞이 행사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행사로 전국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의미를 부여해 행사를 계속할 경우 군차원이 아닌 울산광역시와 협의하여 적정 규모로 추진토록 할 것	건의
	6	진하해수욕장 내의 전망대 관리철저	진하해수욕장 전망대의 건립 당시 목적은 관광성과 경영수익사업을 전제로 한 시설물로서 그 당시의 주변환경 여건상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고, 현재는 건물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지금은 시대상황이 많이 변화되고 있으니 전망대의 당초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책강구	시정
	7	문화재관련 사업 국·시비 보조금 확보방안 강구	문화재관리에 관련된 사업비는 국·시비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으로, 문화재 관련 사업계획시 국·시비 보조금 확보에 노력을 하기 바라며, 특히 창포당 복원사업은 순수 군비로 계획하고 있으나, 이 또한 문화재적 사업의 성격으로 국·시비 보조금 확보 방안 강구	건의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 고
총 무 국	1	읍·면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자체기준 마련	주민들의 생활편의 시설을 근거리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 읍·면에 소규모 체육시설을 설치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원전특별지원금 지원중단에 따른 재원부족으로 현재 추진중인 온양, 응촌면을 제외한 지역은 타 시설로 대체하거나 계획이 취소되어 읍·면간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운동장 시설이 열악한 해당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토록 할 것	건의 (총무과)
	2	군민건강달리기대회 활성화 방안마련	군민건강달리기대회 경비 중 많은 부분이 주민들의 대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품구입에 사용되었으나, 경품권 배부와 관련한 민원 발생으로 행사의 주목적과 부수적인 행사가 전도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또한 이른 시간에 언양, 온산에서만 개최되어 그 지역주민들을 제외한 타읍·면 주민들은 참여가 안되고 있는 실정인 바 군민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시정 (총무과)
	3	각종행사 표준 의전모델 마련	온산근린체육공원은 많은 군예산이 투입된 사업으로 행정기관에서 주관해야할 개장식행사를 민간단체에 위탁했다는 사유로 행사진행을 방관하여, 각계의 많은 인사가 초빙되었으나 내빈소개등 행사진행이 미숙하여 군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던바, 이는 의전행사를 소홀히 한 결과이며, 본 군에 표준의전 모델이 없었다는데 기인되므로 조속한 시일내 표준의전모델을 마련 할 것.	시정 (총무과)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 고
총 무 국	4	온산 근린 체육공원 조성공사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공사계약 부당	총 공사비 29억여원이 투입된 온산근린 체육공원은 당초 계약금액이 692백만원 이었으나, 2차에 걸친 설계변경에 따라 10억여원 이상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환 경성 검토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 어 당초 매입한 부지가 불용지로 됨에 따 라 대체부지 매입과 과도한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공사계약에 의하여 빚어진 것 으로, 추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추진과정에 많은 의혹이 발생 하여 좀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조사가 요구되어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기로 함	시정 (총무과)
	5	전보제한 미준수	전보제한은 행정의 연속성 전문성등을 위하여 법제화되어 있는 것으로 부득이 한 경우,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준수해야할 것이나, 전보제한 기간내 34명이 전보된 것은 관 련기준을 무시한 것으로, 앞으로 이러한 경우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할 것	시정 (총무과)
	6	산림조합 수의계약에 따른 제반 사항 검토	수의계약 낙찰률이 일반공사의 수의계약 은 최저91.69%에서 최고97.09%, 공개입찰 낙찰률은 최저 86.86%에서 최고91.30%로 서 수의계약과 공개입찰과의 현격한 차이 가 나고 있음. 산림조합의 경우 개별법에 의하여 수의계약하게 되어 있지만 최저 93.87%에서 최고100%까지 높은 낙찰률로 수의계약 되어 있으며, 이러한 높은 낙찰 률은 제고할 필요성이 있고, 전문성이 요 구되지 않는 일반적 노동인력으로 가능한 조림지풀베기사업 등은 예산절감 및 인력 난 해소를 위하여 일반공공근로사업 검토 가 요구됨.	건의 (회계과)

제5절 행정사무감사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 고
총 무 국	7	각종 공사 계약현황 읍·면 통보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경우 읍·면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 지역주민들과 읍·면직원간의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바 군에서 공사계약 후 읍·면에 통보 해줌으로써 공사시행 과정에서 지역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는 사전에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봄.	건의 (회계과)
	8	상북면청사 하자에따른 근본적인 대책 마련	상북면청사는 당초 설계상 냉난방시설, 전기, 통신시설과 부지선정 및 진입로 확보등 많은 문제로 2회에 걸쳐 설계변경된 것으로, 최근에 준공(2001.7.24)된 신축 건물이나 전기 통신시설이 외부에 노출되어 우수시 통신이 두절되고, 또한 건물 곳곳에 누수가 되는 등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여 근본적인 대책(하자보수)을 마련토록 할 것	건의 (회계과)
	9	범서읍 청사이전 조속 추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범서읍청사 이전에 대하여 같은 읍내의 각각 다른 3곳(입암, 송현, 구영지구)에서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바 군에서 적극적으로 모든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조속히 추진이 되도록 할 것.	건의 (회계과)
	10	군청사 입구 도로부지 무단점유 조치	군청사정문(계시대 주변)이 인도부분을 점유하고 있어 보행자 통행 및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최근 언론에 보도된바 있고, 또한 군청내 유료주차장화에 따른 진입차량의 여유면적이 없어 교통사고 위험이 내재되고 있으므로, 무단점용하고 있는 도로부분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원상복구토록 할 것	시정 (회계과)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 고
총 무 국	11	세입추계 관리소홀	업무보고서상 지방세 과세표준액의 현실화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전년대비 1%상승하였다고 되어 있고, 해마다 농지전용 부분등 각종 사유로 인해 지목이 변경되는등 지가의 상승효가가 있으나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세부문의 종합토지세는 평균 -0.1%를 감소 추계하고 있는 것은 세입자료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작은 부분이라도 건전재정 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해야 할 것임	시정 (지방세과)
	12	발전소주변 지역 보상 수탁수수료 일반회계 관리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으로 추진되는 각종보상사무수탁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회계질서를 문란케하는 것으로 회계질서상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임(부산광역시 기장군의 경우는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관리하고 있음)	시정 (지방세과)
	13	군금고 이전문제 신중검토	현재 군지정금고(농협)는 청사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군청사 뒷편(6차선도로 건너편) 별관청사 신축계획에 군지정금고가 이전계획을 하고 있어, 금고 이용에 많은 불편이 예상되는 바 직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관계부서간 충분히 협의토록 할 것	건의 (지방세과)
	14	과오납 발생에 따른 대책마련	과오납이 2000년도 1,085건에 398,485천원, 2001년도 1,725건 449,600천원 2002년 9월30일현재 790건 107,624천원으로 매년 상당액 발생되고 있고, 대부분의 사유가 세액산출착오, 세액조정 등에 기인되고 있는 것은 관계공무원의 업무연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과오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시정 (지방세과)

제5절 행정사무감사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 고
총 무 국	15	채납자 및 결손처분자 지속관리	징수불가능 채납액의 결손처분이 상당액 발생되고 있고, 특히 1,000만원 이상 고액 결손처분된 경우가 2000년도 27건, 2001년도 8건 2002년도 6건 등이 되는바, 단순 결손처분 했다는 사유로 행정처리를 다했다고 하지 말고, 고액 결손처분자에 대하여 별도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할 것	건의 (지방세과)
	16	채납세 징수 철저	현년도 및 과년도 채납액 14,911백만원 중 1,000만원 이상이 125건에 7,246백만원으로, 고액채납자를 별도 관리하는 등 채납액 징수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특히 범서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은 공사준공이 끝났음에도 종합토지세 채납액 115,041천원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사전 부서간 채납액 징수 협조가 소홀히 된데 있다고 여겨지는 바,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채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	시정 (지방세과)
	17	행정정보 공개 민원처리 소홀	행정정보공개는 원칙적으로 요구정보를 공개토록 되어 있으며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공공기관의 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등의 심의를 위하여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바, 비공개 20건, 부분공개 31건을 처리하였음에도 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은 주민의 알 권리를 봉쇄한 경우로 여겨짐. 임의적으로 비공개등의 범위를 확대하지 말고 정보공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편의에 서서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임	시정 (민원 지적과)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 고
총 무 국	18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장애 신속 조치	민원봉사실내에 비치된 등기부등본 무인 발급기 사용시 장애발생이 잦고 작동의 어려움으로 불편함이 많으므로, 우리군청 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편의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장애발생시 조속한 기계 정비와 도우미의 안내등의 대책이 필요 함	건의 (민원 지적과)
	19	장기적인 대민창구 인력배치 방안 강구	일시사역인부의 사역목적은 일시적이고 특정된 사업분야에 사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사역인부 기준을 벗어나 매년 13여명의 일시사역인부를 창구업 무 등에 교체사역 함으로써 한시적으로 책임의식 결여, 업무의 연속성등이 없어 대민행정이 소홀해지고 있으므로 장기 적인 대민창구 인력배치 방안을 강구.	건의 (민원 지적과)
	20	임의보조금 지원납발	12개의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정액 또 는 임의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특히 정액보조단체에 유사한 사업내용으로 여러 단체에 임의보조금지원을 남발하 고 있음. 예산편성지침상 정액단체는 임 의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 으므로, 임의보조금지원시 구체적인 지 원기준을 마련하여 유사사업이 여러단 체에 중복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시정 (주민자치 기획단)
	21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체납액관리 철저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체납액이 30명에 56,005천원으로 관리되고 있고, 이중 91 년도 대부액에 대한 체납액도 계속관리 되고 있으며, 특히 금융기관의 장(농협조 합장)으로 충분한 재력이 있는 자도 체 납액을 관리하고 있는등 체납정수를 소 홀히 하고 있으므로, 체납자에 대한 전수 조사등 체납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	시정 (주민자치 기획단)

제5절 행정사무감사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 고
총 무 국	22	읍·면 주민건의사항 조속처리	2002년 군수 연두 방문시 건의 180건에 완결38건 추진중 142건, 2002년 8월 군수 읍·면방문시 건의 98건중 완결 35건, 추 진중 63건등 상당수가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주민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조 속한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시정 (주민자치 기획단)
보 건 소	1	정수물품 관리철저	에어컨디셔너, 냉장고, CO ₂ , 인큐베이터 등의 정수물품 승인일이 2001년9월19일 로 되어 있으나, 동일 감사자료상 정수 물품승인책정부서(회계과)의 정수책정 일은 9월6일로 되어 있으며, 일부 물품 은 자료에서 누락되어 있는 등, 물품관 리와 감사자료 작성에 소홀함이 지적된 바 시정할 것	시정
	2	한방무료 진료 수혜자 확대 방안 강구	한방무료진료 시설이 특정지역(언양, 운 양)에만 설치 운영되어 전 지역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바, 본 제도에 대 한 홍보를 강화하고, 인근지역에서 쉽 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방안을 마련 하는 등 많은 농어촌지역 주민들에게 균등하게 수혜가 될 수 있는 방안 강구	시정
	3	공중보건의 지도감독 철저	공중보건의 복무 및 근무태만에 대하여 감사시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부도덕한 공중보건의의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고, 공중보건의의 본연의 임무인 진료불성실의 사유로 민원이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공중보건의와 보건행정에 대한 불신이 발생한 바 공중보건의 지 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윤락행 위등방지법위반으로 경고 조치된 공중 보건의의 행위에 대한 처분이 미약하므 로 재조치 방안 강구	시정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 고
읍	1	각종 시설공사 지역업체 우선계약	읍·면 포괄사업 및 각종 공사계약시 지역현황을 잘 아는 관내소재 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경우 세수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민들의 사소한 부분까지도 책임감을 가지고 공사할 것으로 판단되나, 많은 읍·면에서 타지역 업체와 계약체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추후 공사계약시 지역업체를 우선토록 검토할 것	시정 (공통)
	2	소하천 점·사용관리 철저	국·공유재산관련법상 국공유재산에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에도 일부 소하천에 학원, 공작물, 진입로등의 용도로 점사용허가 되어 있는 바, 현장확인하여 조치하고, 점·사용허가시 목적을 변경하여 사용치 못하도록 소하천 점·사용관리를 철저히 할 것	시정 (공통)
면	3	재해장비 관리철저	읍·면 양수기 표본시험가동결과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양수기가 있는바, 전체 양수기를 시험가동 하여 불능양수기를 정확히 파악, 수리 및 교체하고, 수방자재, 산불진화장비 등도 재해발생즉시 사용가능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시정 (공통)
	4	감사자료 작성 미비	감사자료상 2002년도 예산집행현황의 목별관리를 임의적으로 묶어 작성하였으며, 2001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누락되었고, 읍·면 포괄사업 현황과 각종 공사계약현황의 연도별 구분 작성되지 않는 등 감사자료 작성에 소홀한 바,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시정 (공통)

제5절 행정사무감사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 고
읍 면	5	읍·면지편찬위원회의 비품관리 철저	읍·면지편찬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읍·면지편찬을 위하여 구입한 비품은 해당 읍·면에서 인수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관리토록 해야 하나, 다수의 읍·면에서 적정치 못하게 관리되고 있는바, 관계규정에 따라 비품관리를 철저히 할 것	시정 (공통)
	6	읍지편찬에 따른 지도 소홀	2002년10월22일 읍지발간기념식을 가졌으나 현재까지 인쇄비용 2,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읍지 1,700부를 수령하지 못하는 등 읍지를 기다리는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이 있으므로 조속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시정 (온산읍)
	7	지역행사 지도관리 소홀	2002년10월22일 온산 근린체육공원 개장식 및 온산읍지 발간회, 온산읍 한마음 전진대회가 동시에 개최되었으나, 행사진행이 미숙하여 초청 인사들로부터 원성이 되고 있는 것은 읍장으로서 관내 행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써 향후 사회단체등 공공행사시 사전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	시정 (온산읍)
	8	인사이동에 따른 사무 인수인계 소홀	2002년8월1일자 읍장 전보와 관련 업무 인수인계시 전임자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안이 수립되었음에도 후임읍장에게 인계되지 아니함으로써 현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인력과 관련 많은 이해관계인의 민원이 발생된바, 읍장의 역할은 지역주민들의 화합이 최선의 과제이므로 향후 읍정을 떠나가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신 있게 추진하기 바람.	시정 (온산읍)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 고
읍	9	울주군 문화의집 지도관심	울주군문화의집이 온산읍청사 2층에 소재하고 있고, 주로 온산읍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읍사무소의 관리가 아니라는 사유로 시설내용, 운영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직접적인 관리부서는 아니지만 읍민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로써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건의 (온산읍)
	10	각종 시설공사 특정업체 편중지양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각종공사계약이 일부업체에 편중되고 있는 사항을 지적하였으나, 금번 감사자료에서도 특정업체에 편중되고 있는 것은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향후 지역내 업체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공정한 계약이 되도록 할 것	시정 (온산읍)
	11	환경미화원 지도관리 철저	언양읍에는 총 6명의 환경미화원이 읍시가지 중심으로 청소를 하고 있으나, 이면도로에는 청소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바, 환경미화원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지도 및 관리로 깨끗한 시가지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시정 (언양읍)
면	12	대운산 제3주차장 부지확보 신중검토	온양읍의 중요현안사항인 대운산 제3주차장부지 대상지는 제1주차장 확보시 중점 거론된 지역이나 지주의 완강한 반대로 확보치 못하게 되어, 1km이상 떨어진 현재의 제1주차장 시설을 확보하게된 바 있으므로, 제3주차장 대상부지는 행정예비협조적인 토지소유자의 사익의 기대심리와 관련된 사안이라 판단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검토가 요구됨	건의 (온양읍)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 고
읍 면	13	읍청사 이전부지 선정 조속 추진	읍청사 이전계획이 2년 이상 지나고 있으나 현재까지 부지선정도 못하고 있는 것은 추진의지의 부족으로 판단됨.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 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건의 (범서읍)
	14	각종 시설공사 특정업체 편중지향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각종공사계약이 일부업체에 편중되고 있는 사항을 지적하였으나, 금번 감사자료에서도 특정업체에 편중되고 있는 것은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향후 지역내 업체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공정한 계약이 되도록 할 것.	건의 (범서읍)
	15	석유화학 공업단지 후면 진입 도로 개설 방안 건의	과거 청량면의 상권은 타 읍·면보다 활발하였으나 현재는 인근 석유화학공업단지의 소음, 악취 등의 공해로 인해 오히려 상권이 열악한 처지에 있음. 석유화학공단 후면으로부터 청량면으로의 진입도로를 개설하면 인근의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 청량면의 상권도 예전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진입도로 개설 방안을 관련기관에 꾸준히 건의토록 할 것.	건의 (청량면)
	16	무허가 건축물 단속철폐	무허가 건축물 단속실적 중 2002.10.31일 고발 예정인 2건에 대하여 현재까지 조치되지 않고 있는바, 무허가 건축물은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조속히 조치토록 하고, 무허가 건축물의 완공 후 철거하는 것은 작게는 개인적인 손해이며, 크게는 국가적인 손해로서 사전 단속업무를 강화토록 할 것.	시정 (청량면)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 고
읍	17	주민자치센터 설치 효율적인 운영방안 검토	주민자치센터를 면복지회관 3층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운영시 장소의 협소문제가 예상되므로 건물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운영등 시설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할 것	건의 (청량면)
	18	회야댐주변 수자원관리 지역내 농민불편 해소방안 강구	회야댐주변 배 과수원부지 255ha는 울산광역시 수자원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각종 행위를 제한함에 따라 2년간 방치로 병충해 발생 진원지가 되어 인근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행정에서 업무처리가 늦어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군 소관부서 및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여 시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건의할 것.	건의 (청량면)
면	19	산불감시원 추천업무 철저	군에서 산불감시원 추천시 기준을 초소감시원은 만 65세 이하인자, 순찰감시원은 만 60세 이하인 자로 기동력을 갖춘자를 우선 추천토록 하였으나, 기준을 무시하고 33년생을 추천하여 다른 희망자들로 하여금 민원이 발생된 경우가 있으므로, 추후 산불감시원 추천시 희망자들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천토록 할 것	시정 (웅촌면)
	20	주민자치위원회 여성위원 보강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인원 중 여성위원이 1/3이상 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총 23명의 위원중 여성위원이 5명으로 위축되어 있는바 많은 여성위원이 참석토록 조치하기 바람	건의 (두동면)

제5절 행정사무감사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 고
읍	21	대민행정 친절당부	두서면의 정원은 11명이나 환경미화원, 일시사역인부, 공공근로인부를 포함하여 총 20여명이 근무하고 있음, 외부인의 방문시 근무자 모두를 공무원으로 보고 있으므로, 직원 모두 대민행정을 친절히 할 수 있도록 할 것	건의 (두서면)
	22	면정자문 위원회 운영 소홀	면정자문위원회는 면의 주요시책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대표기능을 가진 위원회로서 월 1회이상 회의를 개최토록 되어 있으나, 감사대상 기간(2001.6.1~2002.10.31)동안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은 면정자문위원회 운영을 소홀히 한 것임	시정 (상북면)
면	23	면청사 관리철저	상북면 청사는 2001.7.24일 준공된 신축 건물이나 적은 양의 우수에도 누수가 되고, 벽체의 곳곳에 균열이 발생되고 있는 등, 많은 하자가 있다고 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면밀히 관찰하여 하자보수 기간 내에 완벽한 보수가 되도록 관련 부서간 협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	건의 (상북면)
	24	영남알프스 배내골 고로쇠 약수제	배내골의 고로쇠 수액을 홍보하기 위한 고로쇠약수제에 연 7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음에도 행사기간 중 35농가의 수입금이 1,500만원정도로 사업의 수입추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지역단위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산물 행사로 많은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건의 (상북면)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 고
읍 면	25	면정자문위원회 관리소홀	면정자문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전까지는 존치되어야 함에도 주민자치위원회 구성(2002.10.25)전에 면정자문위원회를 폐지(2002.6.24)한 것은 면정자문위원회 관리 및 운영을 소홀히 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할 것	시정 (삼남면)
	26	주민자치위원회의 면정 의견수렴기능 지도강화	면정자문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대표기능을 해왔으나, 주민자치센터설치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폐지되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으므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지도강화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면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건의 (삼남면)
	27	면소규모사업 시설용역비 계상 검토	읍·면의 소규모사업은 사업비에 비하여 건수가 많고 또한 토목직이 없는 읍·면은 사업건별로 설계용역비를 별도 집행하므로 소규모사업 목적달성이 우려되는바 소규모사업총괄 금액에 대한 별도 설계용역비를 편성하여 원활한 사업이 운용되도록 검토건의	건의 (삼남면)
	28	하천제방 정비공사 부실에 대한 원인분석 철저	하천제방정비를 끝낸 지역에 금번 호우 및 태풍으로 재차 제방이 유실된 지역이 여러 곳 발생한 바, 유실사유에 대한 조사 및 진단을 정확히 하여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항구적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건의 (삼동면)

제5절 행정사무감사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 고
산 업 건 설 위 원 회	1	예산운용 철저	예산은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연말에 집중되고 있고 추경예산에 사업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등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	전부서 (시정)
	2	감사자료 작성미흡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사업비 사업물량 등이 실제내용과 다르거나 중복 작성되어 있는 등 감사자료 작성이 미흡함	전부서 (시정)
경 제 사 회 국	1	위원회 통합운영 방안 검토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물가대책 위원회, 에너지절약위원회)에 대하여는 폐지 또는 통합 운영 방안 검토	지역경제과 (건의)
	2	각종 행사 지원비 집행 철저	철쭉제 행사 및 온산읍민 한마음 전진대회등 각종 행사지원비가 행사시기가 맞지 않거나 예산편성 목적과 다른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바 앞으로는 예산이 반드시 실제행사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요구	지역경제과 (시정)
	3	이동판매 주유 차량에 대한 지도 단속 철저	가정용 난방유(석유)를 배달하는 이동주유차량의 경우 주유호수내의 잔류되는 유량이 많아 실제 주민의 구입 유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동 판매 주유차량에 대한 철저한 지도 단속과 차량주유기 호수를 투명한 색깔로 교체 검토 요구	지역경제과 (건의)
	4	불법주정차 단속 철저	불법 주정차단속이 특정지역에만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주민의 불만이 많으므로 적발 다발 지역에 대하여는 공용주차장 설치 등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요구	지역경제과 (시정)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 고
경 제 사 회 국	5	재래시장 관리 철저 및 현대화 사업 추진	관내 재래시장 장옥 사용자의 불법시설 물 설치로 상인간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 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과 지 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에 대한 현대화 사업계획 수립 추진이 검토요구 됨.	지역경제과 (건의)
	6	만5세 영유아보육 지원비 확대지원 방안 검토	만5세 영유아 보육지원비가 면지역에만 한정지원되고 있어 읍지역 주민의 불만 이 있을 뿐 아니라 지역간의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읍지역에도 보육비가 지 원될 수 있도록 검토요구	복지위생과 (건의)
	7	단체 주관 행사시기 조정 및 행사통합 방안장구	여성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가 10월중에 집중 개최되어 인력동원에 따른 농촌 일손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인 력동원이 예상되는 행사는 가급적 농번 기를 피해 실시토록 하고 비슷한 성격의 행사는 통합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검 토요구	복지위생과 (건의)
	8	경로당보수 공사 시행 철저	경로당 보수공사 시행시 하자가 발생하 지 않도록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부실시공 업체에 대하여는 반드시 제재 조치 요망	복지위생과 (시정)
	9	기금관리 및 운용 철저	2000년도 기금설치 후 현재까지 기금운 용계획과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않고 있는 노인복지기금과 식품 진흥기금에 대하여 반드시 의회의 의결 을 받도록 하고 특히,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는 조속히 조례로 제정하여 기금 이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요망	복지위생과 (시정)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 고
경 제 사 회 국	10	간이상수도 관리 철저	간이상수도의 집수정과 관정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관로가 노후되어 누수현상 발생과 수질오염이 우려되는바, 정기적인 현장 확인 실시 및 관로교체 검토요망	환경보호과 (시정)
	11	대곡댐 건설 관련 사업의 동시시행 검토	대곡댐 상류지역의 축산폐수처리 설치와 관련 가정오수관 연결공사시 상수도관 매설 사업을 동시에 시행하여 관로 매설을 위한 마을안길 굴착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	환경보호과 (건의)
	12	약수터 관리 철저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불합격판정을 받은 약수터에 대하여는 신속한 사용중단 조치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환경보호과 (시정)
	13	대기오염 단속철저	온산공단지역의 경우 일출직전에 공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대기오염 단속 전담반을 설치하여 신속한 단속과 수시점검 등 지속적인 공해방지 대책 수립 추진	환경보호과 (건의)
	14	공중화장실 위탁업체 관리 철저	공중화장실 관리상태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시설물관리 및 청소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용역위탁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주민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특히 계약이행을 소홀히 하고 있는 그린개발에 대하여는 적절한 제재조치 요망	환경보호과 (시정)
	15	“공무수행” 표시판 부착 청소 차량 단속철저	청소용역업체에서 운행하는 차량에 “공무수행” 표시판을 부착하여 불법 주정차 하는 사례가 많아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청소용역 업체 차량운행시 “공무수행” 표시판을 부착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환경보호과 (시정)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 고
경 제 사 회 국	16	농산물유통 비용 절감을 위한 프로 그램 개발	농산물이 생산되어 소비자에게 공급되기 까지의 복잡한 유통과정 때문에 생산자 와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당하고 있으므 로 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터넷전자 상거래 프로그램 개발 및 포 장상자 개발 등 다양한 유통대책 수립요망	농산과 (건의)
	17	여성 영농 참여 확대 방안 강구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수가 남성보다 여성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므로 농 산정책 수립시 여성농민에게 적합한 농 업기술 교육 등 여성영농 의욕고취를 위 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남성위주가 아닌 여성영농참여 확대방안 강구	농산과 (건의)
	18	휴경농지 활용 방안 검토	관내에 산재한 휴경농지의 방치로 미관 저해 및 실농민의 사기저하가 우려되는 바 고소득 대체농지로 활용 등 다각적인 이용방안 검토	농산과 (건의)
	19	해외시장 판로개척 창구 일원화방안 검토	농산물의 해외시장 개척 홍보비등으로 농협·원예조합 등에 많은 비용이 지원 되고 있고, 현재 지역경제과에도 해외수 출 판로개척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와 활 동경비로 많은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해외시장 판 로개척 창구를 일원화하는 방안검토요망	농산과 (건의)
20	관정개발 및 사후 관리 철저	농업용 관정개발시 시추공에 대한 폐공처리 소홀로 지하수 오염과 관정개발 당시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지 못해 관정개발 후 단기간내 지하수가 고갈되 어 사용이 불가능한 곳이 많아 예산이 낭 비되고 있으므로 관정개발과 사후 관리 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농산과 (시정)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 고
경 제 사 회 국	21	미발주된 수해복구 사업 조기 발주 및 공사감독 철저	미발주된 수해복구 사업에 대하여는 조속히 사업발주하여 우수기가 도래 되기 전까지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장확인시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상복산전 간운곡들 및 금호곡들 농로피해 복구공사”에 대하여는 신속한 보완조치와 철저한 공사감독을 실시하고 특히, 부실시공업체인 신대명건설에 대하여는 적절한 제재조치 요망	농산과 (시정)
	22	전복치패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철저	최근 잡는 어장에서 기르는 어장으로 어업정책 방향이 전환되고 있어 전복치패사업 등 어민의 고소득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여 사업비가 지원되도록 하고, 전복치패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는 불가사리 제거사업에 대하여는 군비 지원을 지양하고 어민 단체가 직접 참여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방안검토	축수산과 (시정)
	23	한우불고기 축제 활성화 방안강구	언양한우불고기축제 행사결과 행사시기, 장소선정, 행사내용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바, 축제행사등 지역특산물 판매홍보, 행사계획시에는 가급적 지역민이 다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 강구	축수산과 (건의)
	24	한우조형물 설치 장소 선정철저	한우판매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한우조형물 설치사업은 그 지역의 특산물을 알리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장소선정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축수산과 (시정)
	25	진하해수욕장 모래보충시 회야강하구 준설 모래 반입금지	회야강 하구 준설사업시 채취한 사토를 인근 진하해수욕장 백사장 모래부족으로 보충하고 있어 해수욕장 모래사장으로서의 역할이 되지않아 피서객들로부터 많은 불만이 표출되어 있는바 해수욕장 모래 보충시 회야강하구 준설시 채취되는 사토대신 질좋은 모래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안검토	축수산과 (시정)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 고
건 설 도 시 국	1	지하수 실태 조사 철저	농촌지역에서 음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지하수가 대부분 무신고 개발된 것으로서 수질 오염시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고, 향후 광역 상수도 설치와 관련 미신고된 지하수의 폐공 처리시 비용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지하수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수질오염 예방과 불법 폐공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강구	건설과 (시정)
	2	수해 피해지역 복구 철저	수해피해가 반복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응급복구 보다는 예산이 다소 투입되더라도 항구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책강구	건설과 (건의)
	3	교량 안전점검 철저	태풍“루사”로 인해 웅촌 초천교량 상판 침하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는바, 교량 안전점검시 소규모 교량 및 잠수교량에 대해서도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해 사전예방 철저	건설과 (시정)
	4	미발주된 수해복구 사업 조기 발주 및 공사감독 철저	미발주된 수해복구 사업에 대하여는 조속히 사업발주하여 우수기가 도래되기 전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장확인시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언양천 제방축조공사에 대하여는 신속한 보완조치와 철저한 공사 감독을 실시하고 특히, 부실시공업체인 광원토건에 대하여는 적절한 제재조치 요망	건설과 (시정)
	5	토지구획 정리사업 추진철저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과정에서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연됨에 따라 인근 주민의 불편이 가중될 뿐 아니라 지역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바,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사업이 중단 또는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파악하여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강구	도시과 (건의)

제5절 행정사무감사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 고
건 설 도 시 국	6	온천업소 지도 감독 철저	등역온천지구내 하천수 유입사실이 언론 에 보도됨에 따라 우리군의 이미지 실추 는 물론, 이용객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으 므로 온천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과 온천수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이용객 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강구	도시과 (시정)
	7	그린벨트 지역 지원사업 조기발주 및 공사 감독 철저	미발주된 그린벨트지역 지원사업에 대하 여는 조속히 사업발주하여 주민불편사항 을 해소토록하고 현장확인시 부실시공으 로 지적된 양동농로포장공사에 대하여는 신속한 보완조치와 철저한 공사감독을 실시하고 특히, 부실시공업체인 (주)LK건 설에 대하여는 적절한 제재조치 요망	도시과 (시정)
	8	GB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철저	그린벨트 구역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각 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소극적인 조치로 상당부분 원상복구가 되지 않고 있는바, GB내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원상복구 등 적극적인 조치요 망	도시과 (시정)
	9	신리오수 처리장 사후관리 대책수립	신리오수처리장이 준공될 경우 운영 관 리에 따른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사후시설 운영, 관리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사전검토하여 대책 수립	도시과 (건의)
	10	읍면환경 개선사업 추진철저	원전특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읍면환경개선사업 시행시 당초사업 계획보다 물량 증가 등의 사유로 설계변 경하여 사업비가 증액 집행되고 있는바, 사업계획수립시 철저한 사전검토 요망	도시과 (시정)
	11	지정게시대 및 게시판 관리철저	현수막 게시대 및 지정게시판이 노후 또 는 파손되어 각종 광고물이 불법으로 설 치 부착 되고 있는바 관리상태를 점검하 여 보수대상 게시대 및 게시판에 대하여 는 신속한 보수요망	건축허가 과(시정)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 고
건 설 도 시 국	12	마을회관 관리부서 일원화방안 검토	마을회관 건립공사 시행시 원청업체가 아닌 하도급 업체가 시공함에 따라 누수, 균열등의 하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우량업체가 시공할 수 있도록 시공사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기능이 비슷하면서도 여러부서에 분산, 관리되고 있는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대하여는 관리부서를 일원화하는 방안검토	건축허가과 (건의)
	13	허가 또는 집단민원 처리절차	각종 허가민원에 대하여는 가·부를 명확히하여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고 특히, 집단민원 처리시에는 반드시 현지확인 후 이해 당사자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처리요망	건축허가과 (시정)
	14	등억온천 주변마을 정비계획 수립추진	등억온천주변마을 정비계획을 위한 용역이 완료되었음에도 세부사업계획이 미수립되었는바, 용역결과에 따라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토록 할 것	건축허가과 (시정)
	15	채석장관리 절차 및 주민피해 예방대책 강구	채석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등으로 인근 주민 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으므로 기 허가된 채석장에 대하여는 방진 및 세륜시설 가동여부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신규 또는 연장허가 되는 채석장에 대하여는 철저한 환경성 검토와 사전대책을 강구하여 주민 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	산림과 (시정)
	16	산불 초동진화를 위한 야산인접 마을 진입로 확보방안 검토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 복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바, 산불의 조기발견과 초동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하고 특히, 산불발생시 초동진화가 용이한 소방차 진입을 위해 야산인접마을 진입로 확보방안 검토	산림과 (건의)
	17	임도개설 사업 시행 절차	집중호우시 임도개설로 인한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므로 임도개설사업 시행시 충분한 수로 확보 등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 요망	산림과 (시정)

□ 2003년도 (제64회 정례회)

1. 감사목적

집행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건의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근 거

-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19조의2
-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3. 감사실시기간 : 2003. 11. 29 ~ 12. 5 (7일간)

4. 감사대상사무 : 2002. 11. 1 ~ 2003. 10. 31까지 추진한 사무전반

5.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반편성

구 분	대상	감사대상기관(부서)	감사반	감사장소
계	30개부서			
의회운영위원회	1	의회사무과	의회운영위원장의 6명	제1회의실
내무위원회	20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국(5) 보건소 전읍면(12)	내무위원장의 5명	제1회의실 및 읍면사무소
산업건설위원회	9	경제사회국(5) 건설도시국(4)	산업건설위원장의 5명	제2회의실

6. 감사실시결과

○ 총 괄

구 분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계		95	76	19
의회운영 위원회	의회사무과	7	5	2
내 무 위원회	소 계	50	43	7
	기획감사담당관실	10	8	2
	문화공보담당관실	8	6	2
	총무국	15	14	1
	보건소	3	2	1
	읍 면	14	13	1
산업건설 위원회	소 계	38	28	10
	공 통	1	1	
	경제사회국	22	16	6
	건설도시국	15	11	4

○ 시정 및 건의요구 내용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 고
의 회 사 무 과	1	군정소식지에 의회홍보 철저	군정소식지인 아름다운 울주의 의회홍보 난이 행정정보보다 미비함. 비회기 기간중에는 의회홍보외에도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 동 홍보 등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 홍 보에 철저를 기할 것.	시정
	2	의회소식지 발간계획 수립시행	의회소식지를 발간하여 의정홍보 할 수 있도록 자체계획 수립·시행토록 할것	건의
	3	지역행사 및 진정·건의서 지역의원에게 신속히 전달	지역별 행사현황에 대한 소식 전달이 늦 고, 또 각 지역 주민의 진정·건의서 등 이 지역의원에게 전달이 잘 안되는 바, 지역별 행사 및 진정·건의서 등을 지역 의원에게 신속히 전달되도록 할것	시정
	4	울주군의회 홈페이지 군민이용도 제고	울주군 홈페이지에서 의회 홈페이지를 찾기 쉽도록 개선책을 강구하고, 우리군 의회 홈페이지의 자료에 내실을 기하여 군의회 홈페이지의 위상을 높이고,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시정
	5	진정·건의서 처리결과 관리 철저	의회에 접수되는 진정서, 건의서를 신속히 처 리토록 하고, 집행부 이첩사항에 대해서는 즉 시이첩한 후 처리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 대 장에 기재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시정
	6	타기관 단체와의 간담회 등 행사시 사전 협의	11월27일 후계농업경영인과의 간담회 개 최와 같이 사전에 개최시기 및 행사내용 을 협의하지 않아 내용을 알지 못하여 참석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의장단에서 추진하여 결정하였다하 더라고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사전 협 의할 것.	건의
	7	의회차량 효율적 운영	의회차량은 2대로 한대는 의전용 차량이 고 한대는 공무상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기사가 없어 효율적으로 이 용하고 있지 못하는결로 알고 있음. 공무 상 출장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시정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 고
기 획 감 사 담 당 관 실	1	예비비사업 집행철저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이나 어떤 사태 또는 실제 예산집행단계에서 과부족현황이 발생될 때 이를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써 세출예산을 보전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그러나 일부 집행된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용역비 등의 사업내용은 집행기준, 시기, 방법 등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임의성으로 집행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바, 향후 예비비 집행사업은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집행되어야 할 것임	시정
	2	특별교부세 대상사업 선정철저	특별교부세는 기준 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때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제도로써 지역개발사업에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나 사업의 성격, 그 지역의 특성 등을 전혀 고려치 않고 단순한 논리에 의한 사업장 선정이 되어 특별교부세 사업의 목적을 실효하고 있는바 향후 특별교부세 사업은 그 지역의 특성, 용도, 지역균형개발의 효과 등을 감안함과 동시에 편중편성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하여 선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시정
	3	성립전예산 편성 철저	성립전 예산은 국가 또는 광역시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경예산 성립이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도록 법령상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2003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등 7건은 성립전 예산 편성이후 추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것으로 예산편성을 소홀히 하고 있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임.	시정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 고
기 획 감 사 담 당 관 실	4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립철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운영의 계획적, 안정적 운용과 합리적인 자원배분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역개발의 기준이 되는 계획으로,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과거 1년간 실적치와 미래 3년간 발전계획적 성격인 바 사업계획 선정에 대의기관인 의회 의견수렴은 물론이고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수립하여야 하나, 일부 사업장은 대의기관인 의회에서조차 전혀 알지 못하는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은 자칫 부실사업이 우려되는 바 사업장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특히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수립되어 추진중인 대단위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 되지 못하고 있으면서 대단위 신규사업(외고산전 통용기마을문화관광자원화사업 118억, 서울 농축산물판매장개설 80억, 범서전용축구장조성사업 60억, 문예회관건립 81억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사업의 실효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성 있는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기바람	시정
	5	자치법규집 추록 철저	자치법규집은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으로서 항상 정비가 되어 주민들의 이용에 한치의 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가 되어야 할 것인바 추록계획을 연간 1~2 회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자칫 오류를 발생케 할 소지가 있는 바 자치법규제·개정 공포 즉시 추록(홈페이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임.	시정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 고
기 획 감 사 담 당 관 실	6	칭찬합시다 주인공 선정 제도개선	칭찬합시다 주인공 선정 제도는 행정조직의 경쟁력과 결속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공무원 상호간 인터넷 등을 통한 단순한 투표방식에 의해 선정이 되고 있고, 대상자 선정기준 또한 모호할 뿐 아니라 특히 참여인원이 30%정도에 머물고 있고 칭찬공무원을 유공 공무원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는 등 당초 목적과는 달리 운영되고 있어 직원간 위화감 조성의 우려를 낳고 있으므로 공무원 상호간 투표방식을 주민에 의한 칭찬대상 공무원의 선정 방법 등으로 개선하여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	건의
	7	예산재배정 사업 지도 관리 철저	재배정사업은 사업의 시기성, 성격 등의 현안사업 특수성에 기인하여 읍면에서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안에서 재배정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읍면으로 재배정하는 것으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하지 말고 사업에 대한 읍면별 사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집행 및 운영이 효율적이 되도록 할 것	시정
	8	명예군민 감사관제도 운영 만전	2003년 10월 13일 명예군민감사관을 행자부 지침에 의거 읍·면별 1명으로 12명을 위촉하여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비리제보, 공무로 인한 지역주민 불평, 불만사항 등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사정보 제공 임무를 하고 있는 바, 위촉위원들이 이 제도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목적에 반하는 우려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운영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위촉에 있어서도 그 지역 특성을 잘 알고 전문성이 있는 자를 추천하여 위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건의

제5절 행정사무감사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 고
기획감사담당관실	9	이월사업 관리철저	이월사업은 당해연도 예산편성된 사업이 기간내 사업을 처리하지 못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해마다 무리한 예산편성으로 기간내 사업을 처리하지 못하여 이월사업이 과다 발생되고 있어 불용으로 처리되는 예가 있으므로 이월사업 발생에 대한 궁극적인 대책 마련과 근본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월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시정
	10	포괄사업비 집행철저	포괄사업비는 예상치 못한 긴급을 요하는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임에도 2002년도 농로포장 5건, 안길확포장 1건, 화장실 설치 등 11건, 2003년도 농로포장 4건, 진입로 확포장 2건, 주민자치센터 설치 증축 등의 사업은 사전에 예견되는 사업으로 불수 있고 특히, 상북 이천지구 임도보수공사 등의 사업은 예산편성하여 집행함이 마땅하나 포괄사업비로 집행한 것은 사업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향후 긴급성을 요하는 부분에만 집행하도록 할 것	시정
문화공보담당관실	1	예산편성 소홀	2003년도 예산집행 내용을 보면 10월 30일 현재 지출액이 44.53%, 미집행액이 55.47%로서, 미집행사유 대부분이 시기 미도래로 분석하고 있는 것은 예산편성시의 신중성이 결여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연말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시정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 고
문화공보담당관실	2	영화 방아쇠 촬영장 주변환경 정비만전	영화 방아쇠 제작관련 촬영세트장 시설비 지원을 위해 2002년도 1회 추경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02년도 11월 제작사의 자금난으로 제작중단 상태임. 제작사의 투자자금확보 등이 불투명함에도 2003년도 명시이월 시켰으며, 행정사무감사일 현재까지 사업의 진척이 없어 불용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예산 편성 및 운용의 검토가 소홀히 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을 뿐 아니라, 특히 연말까지 영화제작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단순히 불용처리 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을 뿐 현재까지 설치되어 방치 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복구 계획이 없음. 시설물의 방치로 흉물화 되어 가는 문제, 시설물 설치를 위한 주변환경 훼손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연경관을 원상 회복할 수 있도록 복구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	시정
	3	간절곶 동요제 개최장소 선정	간절곶 동요제의 시행 근본목적은 간절곶의 이미지 홍보를 바탕으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행사이나 즉 제1회 행사시만 간절곶에서 했을 뿐 2, 3회는 간절곶과 관련이 없는 장소에서 시행하므로 참여한 어린이 등이 실제로 간절곶의 자연을 몸소 접하고 느낄 수 있는 곳이 아닌 타지역의 장소를 선정 시행하므로서 행사의 목적이 달성되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참여 어린이들이 간절곶을 실제 느끼면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시정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 고
문화공보담당관실	4	이월사업 관리소홀	<p>명시이월 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언양향교 화장실 보수공사 10,000천원중 실시설계비 608천원만 집행, 영화제작 세트설치 150,000천원 전액 영화세트장 설치중으로 미집행, 사고이월사업인, 군정홍보 비디오 촬영 27,995천원 전액 미집행 등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이월사업에 대한 검토가 소홀히 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있으므로, 대상 사업을 선정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논리로 추진하다가 안되면 불용처리하면 되는 것으로 검토추진하지 말고 신중성 있게 검토하여 군민이 군사업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임</p>	시정
	5	향교석전제 시상계획 개선	<p>언양향교 추계석전제 봉행행사와 관련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헌신한 자와 부모에게 효도하고 웃어른을 공경함에 있어 모범이 되는 군민을 발굴 표창하면서 상금(부상) 등의 비용을 삼동 둔기회에서 부담(기탁)하고 있는 행사계획이 표창자의 선정 등에 투명성있는 계획 및 집행이 되지 않고 있어 기탁자의 목적에 반하는 행사로 전락되고 있다는 여론인바, 자금의 관리, 표창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투명성 있고 명확히 하여 기탁자의 뜻과 수상자의 업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행사추진 개선방안 강구</p>	건의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 고
문 화 공 보 담 당 관 실	6	진하해수욕장 관리철저	진하해수욕장내의 전망대 관리를 건축당시의 목적대로 경영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였으나 경영수익사업 시설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진하해수욕장 종합행정봉사실, 전망대로 활용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진하해수욕장 개장기간(50일)외에는 아무런 활용방안이 검토되지 않고 있는 부분과 진하해수욕장내 전망대앞에 설치된 진하해수욕장 안내간판의 설치장소 부적정에 대한 의견이 의회는 물론이고 언론, 각종단체 등에서 수없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 등에 대하여 정밀분석을 통하여 전망대의 경영수익 활용 방안과 진하해수욕장 안내간판 이전계획을 검토하기 바람.	시정
	7	간절곶 해맞이행사 성격 제고	간절곶 해맞이 행사계획이 매년 막대한 군비투자가 되고 있으나 행사의 질 향상이 되지 못하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음. 2003. 1. 1 행사이후 자체 행사결과 보고에 따른 제반 문제점 도출 사항 등에 대해서도 전혀 개선 계획을 검토치 않고 있는 것은 자연관광자원을 퇴색시키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음. 간절곶주변 각종 시설물 정비, 숙박시설개선, 주차시설 문제 등의 모든 지역적인 여건이 개선되도록 함과 아울러 여건이 충족된 후 군차원의 완벽한 행사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던지 아니면 행사의 근본적인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광역시 단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던지 행사 성격을 분명히 검토 추진하기 바람	건의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 고
문화공보담당관실	8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 지원체계 미흡	<p>정월 대보름 달맞이 행사는 토속적 전래 민속문화행사로써 군지역, 읍·면지역의 대표성 행사가 아닌 마을단위 행사로 자연이 전래되어 오고 있는 행사임.</p> <p>따라서 달맞이 행사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군 단위의 특정지역만을 위한 행사가 아닌 군지역 전체 군민을 위한 행사가 바람직할 것인바, 행사지원에 있어서도 읍·면별 계획성 없는 무분별한 차등지원이 아닌 체계적이고 형평성에 맞는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할 것</p> <p>☞ 2003년도 달맞이 행사지원내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대표)행사 : 서생면(진하달맞이) 10,000천원 ◦ 읍·면지역 행사 : 6개읍·면 14,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양읍 : 3,000천원, 청량면 : 2,000천원 웅촌면 : 2,000천원, 두동면 : 2,000천원 상북면 : 3,000천원, 삼남면 : 2,000천원 ◦ 온산·온양·범서읍, 두서·삼동면 : 지원없었음. 	시정
총무국	1	직장실업팀 운영과 군위상 제고방안 강구	<p>직장실업팀은 그 직장의 이미지 제고 및 홍보를 바탕으로 두면서 운영하는 것으로, 2003년 경기대회 성적을 보면 대통령기 시도대항, 대한불링협회장배, 대한체육회 장기 등 단위기관장배 경기 등에는 우수한 실적을 거양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제 군민 등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군홍보 위상에 대한 전국체전, 아시안게임 등에서는 전혀 괄목할 만한 실적이 없는 것은 실업팀에 대하여 안일하고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현재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운영방안 강구</p>	시정 (총무과)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 고
총 무 국	2	업무추진비 집행철저	업무추진비는 월별,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되 업무추진비 지출시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다만,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지역 등 불가피한 경우는 업무추진비 예산계상 총액의 30%범위내에서 현금으로 지출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월별, 분기별 집행기준과 신용카드 사용여부에 대한 기준없이 매월 임의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은 예산집행 및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는 것으로 시정을 요구함	시정 (총무과)
	3	우호협력 교류사업을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사업으로 추진	우호협력 교류사업으로 중국의 3개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중소기업 경제협력 교류 및 문등시와의 공무원 교환근무 협정서 체결에 따른 파견근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제도적 통제를 벗어나면서 항구적인 실익보다 우선 걸치레적인 외면을 중시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되면서 군민의 의견이 수렴된 해외교류사업인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장구	시정 (총무과)
	4	읍면운동장 조성사업 전면재검토	읍면운동장사업은 2000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감사원 감사에서도 읍면별 운동장조성 사업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추진과정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고, 특히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에도 또 다른 체육시설(범서전용축구장)을 계획하는 등 사업의 우선순위 및 사업의 투명성을 결여하고 있어 그간의 계획 등에 대한 군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따라서 읍면운동장 사업을 비롯한 체육시설 사업 전반에 대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군지역의 실정에 맞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투명성있게 선정하여 군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계획 및 추진이 되도록 하기 바람.	시정 (총무과)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 고
총 무 국	5	군민 건강 달리기대회 전반적인 재검토	군민의 건강증진과 화합을 목적으로 연 1~2회의 계획으로 남부, 서부지역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울주군의 지역적 특성으로 참여군민의 개최 지역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여 참여율이 저조한 바, 개최지역의 범위를 현행 1~2개소에서 읍면별 개최방안 검토가 요구되며, 특히 제5회 군민건강달리기 대회시 참가 대상 군민을 2,800명으로 계획하면서 참가자에 대한 기념품(T셔츠) 증정 후 남은 재고 1,100여벌을 행사 참가여부에 관계 없이 그 지역의 각종 단체에 배부한 것은 예산은 물론이고 실제 행사에 참석한 목적 및 자긍심을 훼손한 결과로 증정결과 남은 물품은 차기대회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력이 요구됨	시정 (총무과)
	6	새마을 시설물 소유권 관리철저	새마을 시설물은 공공시설물로서 군비(국, 시비포함)를 투자한 시설물이나 현재 관리시설물 총 141개소 중 소유권자별 실태를 보면, 울주군(울산군수, 울주구청장포함) 기관소유 13개, 마을회관17개, 새마을회31개, 개인11, 마을명의35, 어촌계1, 기타1, 소유권이 없는 것이 32개소로 분류되고 있는 것은 새마을시설물(공공시설물)관리실태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을 뿐 아니라, 특히 최근 두동 은편상리 마을회관은 군비투자한 공공시설물임에도 회관 소유권의 미정리로 인하여 관리되어 오던 마을회관(공공시설물)을 2003. 2. 11일 군의 협의없이 우선 소유자의 임의 처분한 사례가 발생되었음. 따라서 새마을시설물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군에서 투자한 공공시설물의 소유권정리 및 임의매각 처분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제도적 방점을 강구토록 하기바람.	시정 (주민 자치과)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 고
총 무 국	7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사후관리철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용자·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미수 용자금은 2004년 2월말까지 전액 회수조치하고, 지원 용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반환조치를 하는 등 지원 후 사후관리(12. 31한 용자지원사업 목적여부 전수실태조사)를 철저히 할 것	시정 (주민 자치과)
	8	천상복지회관 개념정립만전	감사자료에 의하면 천상복지회관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관 관련법령을 위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천상복지회관 운영에 있어서도 관련 조례 개정 등의 검토가 동시에 병행되어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계획없이 단순한 논리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행정의 신뢰도를 상실하게 될 것이므로 천상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여 관련조례 개정 시행이 되도록 하기바람	시정 (주민 자치과)
	9	공유재산 관리계획 소홀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집행부에서 사업의 목적범위에 맞는 부지, 건물 등의 규모, 금액에 대한 사항을 신중성있게 검토 심의하여 결정(선정)한 내용을 의회의 의결로 확정된 계획이나, 의회의 의결받은 사업에 대하여 별다른 추진없이 또다른 목적을 추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있는 사례 및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때는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음에도 남부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의회 의결없이 임의로 당초 의회 의결받은 부지가 아닌 다른 부지로 변경 매입한 것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례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시정 (회계과)

제5절 행정사무감사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 고
총 무 국	10	국공유재산 대부 사후관리 철저	국공유재산 대부는 목적에 의한 대부계약으로 대부계약체결 후 현실적으로 오랜기간 동안 대부목적외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대부 목적에 어긋나는 사항으로 철저한 조사를 하여 불법으로 전용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	시정 (회계과)
	11	용역비 집행 철저	용역은 추진사업에 맞는 목적을 두고 시행하는 것이 근본 목적인 바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것은 그 목적에 위배되므로 용역은 사업을 시행할 때부터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용역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시정 (회계과)
	12	발전소주변 지역 보상 수탁수수료 세외수입관리	발전소 주변지역지원금으로 추진되는 각종 보상사무 수탁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세입예산(세외수입)으로 편성관리하여야 하나, 특별회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는 것은 예산·회계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으로 반드시 세외수입으로 예산 편성되어 집행이 되도록 조치요망 (기획감사담당관실, 도시과, 지방세과)	시정 (지방세과)
	13	체납세 징수 만전	해마다 [2001년 체납액 11,367백만원에 징수액 1,631백만원(14.35%), 2002년 체납액 12,508 백만원에 징수액 2,190백만원 (17.51%), 2003년 11월말 현재 체납액이 13,120백만원에 징수액 2,141백만원 (16.32%)] 늘어나고 있는 체납액 대 징수율이 저조할뿐 아니라, 특히 군 소속 위원회 위원 및 이·반장, 각종 사회단체 임원 등 저명인사에 대한 체납액이 46,097천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체납세 징수에 안일하고 소홀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체납세 징수에 특단의 노력을 강구할 것	시정 (지방세과)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 고
총 무	14	민원지적과 인력재검토	민원지적과의 업무는 군민을 직접 맞이 하면서 대민행정의 질을 전달하는 부서로서 민원창구 근무자는 반드시 일정한 지식이 있는 공무원(2002년도 일시사역 인부 2명, 2003년 11. 26자 신규 공무원 2명으로 대체)으로 배치하여야 할 것이며, 표준정원제 시행과 관련하여 민원지적과 근무 일시사역인부(14명)에 대한 전면 재검토로 민원행정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강구	건의 (민원 지적과)
	15	부동산 중개업 지도단속 철저	부동산중개업의 단속결과(등록 126개소, 행정처분 17개소)를 보면 부동산 중개업의 등록자에 한하여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음. 이는 단속의 행위를 소극적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지도단속에 적극성을 갖고 등록한 업소뿐 아니라 특히 미등록 업소의 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가 형성되도록 하기 바람	시정 (민원 지적과)
보 건 소	1	감사자료 작성소홀	민간경상보조(307-02)의 집행현황에서 방문보건 대상자 이·미용비 지급(은진미용실 외 26개소)과 방문보건 대상자 목욕비 지급(광천탕외 20개소)은 예산편성, 집행, 정산결과를 전혀 알 수 없도록 자료를 작성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되며, 일시사역인부 사역현황도 사역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등 자료작성이 미흡하므로 감사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시정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 고
보 건 소	2	보건소이전 신축관련 통폐합 보건지소 운영 대안 마련 요구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은 본격화되고 있으나 보건소 이전 신축에 따른 인근 보건지소(언양, 삼남, 상북)의 통폐합에 관한 계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기존의 보건지소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의료행위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보건소 이전으로 인한 양질의 의료행위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강구 하기 바람	건의
	3	의약품 수불관리 철저	의약품 품명이 154종에서 수불재고량이 제로로되어 있는 품목이 22개 품목이나, 이는 의사의 처방에 따른 대체 품목이 된 것으로만 막연히 설명하고 있을 뿐 대체 품목에 대하여 전혀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약품 수급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음. 의약품관리는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항상 투명성 있고 질환에 따른 의약품이 즉시 수급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시정
읍 면	1	업무추진비 집행철저	업무추진비는 월별,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되 업무추진비 지출시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다만,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지역 등 불가피한 경우는 업무추진비 예산계상 총액의 30%범위내에서 현금으로 지출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월별, 분기별 집행기준과 신용카드 사용여부에 대한 기준없이 매월 임의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은 예산집행 및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는 것으로 시정을 요구함.	시정 (전읍면)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 고
읍 면	2	지방세 고지서 교부자 관리소홀	지방세 고지서를 리·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울주군세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고지서 교부자(리·반장)에 대한 위탁 송달자로 위촉됨을 승낙(신속, 정확한 전달 및 책임감 부여)을 받은 후 시행토록 하고 있으나 2001. 4. 26(지방세13400 -1679호) 지방세 고지서 송달방법 개선시행 이후 리·반장에 대한 위촉승낙서 징구없이 고지서 교부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자칫 형식적인 고지서 교부로 각종 이의신청 및 고지효력에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본 제도의 목적에 위배됨이 없도록 반드시 사전 위촉 승낙서 징구 후 시행토록 시정바람	시정 (전읍면)
	3	소하천 점·사용 허가 및 부과징수 업무 단일화 방안 강구	소하천 점·사용 허가 및 부과징수에 있어 허가는 울주군사무의위임조례에 의거 읍면장에게 권한위임되어 있으나, 부과징수는 위임이 되지 않은 본청(건설과)에서 부과징수하므로써, 소하천 관리에 있어 본청 및 읍면장 각각 의견을 달리 정립하여 업무의 이원화에 따른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되는바, 관련부서간 의견조율로 일원화 시킬 수 있는 방안 강구 (기획감사담당관실, 건설과, 읍면)	시정 (전읍면)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 고
읍 면	4	예산의 재배정사업 관리소홀	재배정사업은 사업의 시기성, 성격등의 현안사업 특수성에 기인하여 읍면에서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배정 추진하는 사업으로,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배정 사업이 본청에서 실제 관리하고 있는 내용과 상이하거나 전무한 실정으로서 현안사업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바 관련자료 재정비 하는 등 즉시 시정토록 할 것	시정 (전읍면)
	5	지방세징수 (체납세) 노력 주문	읍면의 기능이 조정되면서 지방세 관련사무가 축소되었다고 하나, 지방세(군세)징수 등의 사무는 울주군사무의위임조례에 의거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되어 있는 사무이며, 특히 읍지역은 재무팀의 조직 기능을 갖고 있고, 면지역은 세무직이 있으므로 본청의 지방세과와 긴밀한 협조로 당해연도 지방세 징수는 물론이고 각종 체납액 징수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기 바람	시정 (전읍면)
	6	민방위대 의무해제자 노고격려 서한문발송 소홀	민방위기본법에 의거 매년 민방위대원의무해제가 되는 자에 대하여 그간 노고격려 등을 위한 서한문을 민방위대 의무해제가 되는 연도 직전년도말까지 (2003.1.1자 해제자는 2002. 12. 31일까지) 개인별 통보토록 민방위대 편성지침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2003년도 민방위대 편성 제외자에 대하여 의무해제사실 및 노고격려 등의 서한문 발송을 하지 않고 있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바 즉시 이행토록 하기바람	시정 (전읍면)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 고
읍 면	7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비 편성 검토	읍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대부분 3,000만원 미만의 단위사업(건수는 많은 편임)으로 별도 실시설계비 없이 예산편성 되어 있어 행정기구 및 정원규정상 읍면의 토목직이 부족하여 각종 시설사업 실시설계에 막대한 어려움이 있는 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읍면의 시설비에 대한 별도 실시설계비를 편성할 수 있는 방안 강구(기획감사담당관실, 읍면)	시정 (전읍면)
	8	보안등 유지보수 관리소홀	울주군보안등관리규정에 의하면 보안등의 유지관리는 읍면장 책임하에 관리토록 되어있고, 또한 정기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보안등의 고장 또는 점·소등 여부 확인 및 고장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수리,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보안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보안등 보수공사 단가 내역서를 군 (건설과)에서 2003. 1. 4(건설58000-58호) 전읍면에 통보가 되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미계약하고 있는 사례, 단가계약이 아닌 예산액에 대한 총액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례 및 또한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일관성없이 집행(보수공사 전,중,후 사진확인 없는 등)하고 있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는 바 보안등 보수공사에 따른 계약 및 예산집행 방법을 재검토하여 보안등 유지보수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시정 (전읍면)
	9	불법농지 전용 조사 및 관리 철저	관할구역안의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었는지의 여부는 물론이며 특히 농지전용 신고를 한자가 신고를 한 후 농지전용 목적사업 계획을 임의변경하고 있는지의 여부 및 전용신고면적 잔여농지에 대한 불법전용 사용할 우려가 매우 높으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시정 (전읍면)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 고
읍 면	10	65세이상 노인 교통수당 지급 적극 추진	65세이상 노인에게 교통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있으며 지급방법으로 교통수당 지급 신청에 의거 지급토록 노인복지사업 지침(보건복지부)에 규정되어 있으나 미신청자 중 동제도를 잘 모르는 경우 또는 거동이 불편한 등의 사유로 수혜를 보지 못하는 노인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장 행정을 강화하여 사실 사유 파악 및 해당노인 전원에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언양읍, 두동면 제외)	시정 (전읍면)
	11	예산집행 소홀	공원지역의 공공요금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예산편성 과목은 환경미화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하면서 실제 집행은 유사과목 예산편성 되어 있는 녹지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집행하고 있는 것은 예산회계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는 바 향후 예산편성시 사업의 성격에 맞는 예산과목에 편성 집행이 되도록 할 것	시정 (운산읍)
	12	깨끗한 시가지 도시환경 유지 및 환경미화원 증원 검토	언양읍은 서부권 지역의 교통중심지역으로서 특히, 서울산(삼남)인터체인지의 주진출입지역 및 고속철도 울산역 확정에 따른 울산역사의 주진입도로가 예상될 뿐 아니라, 24호 국도 인터체인지의 언양권 주진입도로 등의 역할에 따른 교통중심지로서 그 기능이 배가될 뿐 아니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울산의 관문으로서 도시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인바, 현재의 환경미화원(6명) 인력을 분석하여 필요시 관련부서와 협의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환경보호과, 언양읍)	건의 (언양읍)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 고
읍	13	신용카드 사용 촉구	접대성, 소모성 경비 등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 적법성을 확대하고자 “2001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시 신용카드 사용관리요령”이 시달되었음에도 행정사무감사일 현재 까지 신용카드발급없이 업무추진비 등 신용카드 사용대상 관련 예산을 전액 현금으로 집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2003. 11. 20일(회계13310-4228호) 군(회계과)에서 “지방자치단체 신용카드 사용관리철저”의 제목으로 공문서를 전실과 소 읍면에 시달하면서 신용카드 발급현황과 신용카드발급대장 사본을 2003. 11. 21한 제출토록 하고 있음에도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등 신용카드 사용목적을 위반하고 있어 즉시 시행토록 촉구함	시정 (두서면)
	14	시설사업 설계시부터 신중추진	2003년도 제1회 추경(의결일 2003. 6. 21) 시 확정된 연봉마을진입로 포장공사 등 6건의 공사계약일이 6.25일 2건, 6.26일 1건, 6.30일 3건 등으로, 이는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조기발주된 것으로 볼수 있으나, 다른 방향으로 보면, 의회 의결일로부터 최소 4일~최대 9일사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설계과정의 정확성, 투명성 등이 다소 소홀해 진 것이 있지 않았느냐하는 우려가 있음. 즉, 설계과정부터 조그마한 잘못이 있다고 보면 결국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며 조기발주도 중요하지만 설계과정부터 정확성과 투명성있게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시정 (삼남면)

제5절 행정사무감사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 고
산업 건설 위원회 공통	1	예산의 효율적 운영	예산은 연간 계획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추경 등에 사업성 예산 편성으로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므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특히 보조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은 신중한 검토와 계획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집행잔액 반납후 다음 연도에 동일사업에 군 예산을 들여 사업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시정
	1	재래시장 활성화방안 마련	지역정서를 대변하는 주5일 장인 재래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 마련, 주변환경 정비와 지역 특산품 판매 등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 강구	건의 (지역 경제과)
경 제 사 회 국	2	버스승강장 관리 철저	우리군 관내에 버스 승강장이 154개소가 있음. 국도 35호선 확·포장 공사로 승강장이 철거되고 있는데 대하여, 우리군에서 설치한 승강장은 전수 조사를 통하여 보상이 안된 부분은 관할청과 협의하여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승강장 주변 환경 정비에 철저를 기할 것.	시정 (지역 경제과)
	3	고용촉진 훈련생 관리철저	고용촉진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훈련생 교육에 대하여 훈련비를 지원하면서 까지 양성하고 있는데 중도 포기자가 많음. 이에 대하여는 훈련비를 환수조치하고, 훈련 이수를 통한 자격증 취득자에 대하여는 취업알선 등을 통하여 사업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방안마련	시정 (지역 경제과)
	4	버스노선 조정	울산 - 언양간 국도 24호 버스노선을 범서읍 천상을 경유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의 협의 조정	시정 (지역 경제과)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 고
경 제 사 회 국	5	화물자동차 차고지 관리철저	차고지 허가후 차고지에 주차를 하지 않고 주택가나, 도로 이면 주차로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또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흉물로 방치되고 있으므로 수시 단속조치	시정 (지역 경제과)
	6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	관내 모범음식점 지정을 121개소 까지 할 수 있는데 반해 72개소만 지정되어 있음. 관광 울주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확대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또한 모범업소와 음식에 대한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건의 (지역 경제과)
	7	중부사회 복지관 건립관련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 2002년 변경승인을 받고도 복지관 건립 부지가 선정되지 않아 건립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구영구획 정리지구 공공용지를 이용 할 수 있는지와 부지 선정을 재검토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 마련	시정 (복지 위생과)
	8	경로당관리 철저	노인 복지 정책 중 경로당 편의시설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고장시에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임. 시설업체와 계약을 통하여 정기적인 점검으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후 관리 철저 그리고 시설 설치시에는 경로당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치하고, 동절기 경로당 일제 점검을 통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시정 (복지 위생과)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 고
경 제 사 회 국	9	장애인 복지시책 확대 추진	장애인 복지정책에 관하여 특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바라며, 특히 신장, 심장 등 추가등록 지정 분야에 대하여는 홍보를 통하여 등록될 수 있도록 강구하고 청각 및 시각장애인들은 타 장애인들보다 지원분야가 적은데 이에 대한 혜택 마련촉구	시정 (복지 위생과)
	10	삼동면 장사시설에 대하여	삼동면민의 어려운 결단에 의하여 장사시설을 설치하게 되었음. 건립시 당초 시와 협의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사업 시행 전 지원이 선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	시정 (복지 위생과)
	11	간이상수도 관리 철저	관내 소규모 급수 시설을 포함한 간이상수도가 302개소가 있음. 식수는 군민 건강과 직결된 사항이므로 소독과 수질 검사 시에는 담당공무원 책임아래 이루어지도록 조치요망	시정 (환경 보호과)
	12	공중화장실 관리 철저	공중화장실의 청소 불량, 수도고장 등으로 이용객들의 불편이 많음. 특히 하절기에는 악취와 모기, 파리 등으로 인하여 위생상태가 좋지 않아 많은 민원이 많이 야기되므로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과 수시 점검으로 관리 철저	시정 (환경 보호과)
	13	대곡댐 상류지역 폐수처리시 설 관리철저	대곡댐 건립에 따라 상류지역에 축산 폐수 정화조가 585개소 설치되고 있으며 이외에 누락된 부분도 있어 주민들이 추가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으므로 전수 조사를 통하여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강구	시정 (환경 보호과)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 고
경 제 사 회 국	14	대기오염 피해보상에 관하여	온산공단의 오염원 배출에 대한 피해보상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닌 지역에 대한 보상으로 국한되고 있음. 서생 진하 지역은 농어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으나 보상은 전무한 실정이므로 광역시와 공단과 협의를 통하여 피해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방안강구	건의 (환경 보호과)
	15	농촌의 경쟁력제고	2005년이면 UR 타결로 농산물의 전면개방을 앞두고 있음. 지역 현실을 감안하여 경쟁력 있는 대체 작물과 특화사업 발굴이 시급한 실정임. 지역 농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마련 강구	건의 (농산과)
	16	범서천상 복지관 건립관련	정주권 개발 사업으로 시행한 범서 천상 복지관은 공유재산 취득승인 등 사전행정 절차 없이 건립된 건물로서, 특히 23억원 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기능 등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 추진 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연찬에 철저	시정 (농산과)
	17	농가 농약 공급 등 농사지도 만전	지난 태풍과 집중호우시 농협을 통하여 공급된 병해충 방제 약품이 적기방제 약품이 아닌 시기에 부적합한 약품이 지급되었다는 민원이 있음. 이에 대하여는 현장 조사를 통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지원시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와 감독에 철저	시정 (농산과)
18	각종 사업 발주시 설계변경에 신중	용수로 등 각종사업 발주시 잦은 설계변경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추가예산의 소요와 사업지연으로 농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설계시 사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하고, 준공시 명예감독관의 의견을 수렴할 것	시정 (농산과)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 고
경 제 사 회 국	19	전복치패사업 지원 확대 방안마련 강구	전복치패 사업이 원전특별지원금이 줄어든 관계로 지난해 보다 사업량이 줄고 있음. 최 근에는 잡는 어업보다 양식하는 어업이 부 가가치가 높고, 그 중에도 전복치패 사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어업 소득에 많은 부문을 차지하고 있음. 사업실적 평가 등을 통한 지원확대 방안을 강구	건의 (축수산과)
	20	적조방지를 위한 다각 적인 방안 마련 강구	현재 적조예방을 위하여 황토를 사용하고 있는데, 황토로 적조를 방제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또 다른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음. 황토를 대체할 방제 수단으로 수산 과학연구원에서 약품을 출시하였다는 보도가 있으므로 자료수집을 통하여 검증확인	건의 (축수산과)
	21	부실시공 방지대책 방안강구	2002년 어촌 종합개발사업으로 송정방과제 공사를 7억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시공하여 금년 3월에 준공하였는데 불구하구 태풍“매 미”로 파손되었다면 부실시공이 아닌지, 원 인과 문제점을 분석, 향후 재시공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시정 (축수산과)
	22	불고기축제 행사의 발전방향 마련	불고기 축제행사는 지역 한우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농가의 농외소득을 높이 는데 있음. 행사 기간중 판매된 한우고기 일 부가 지역 한우가 아닌 타지역의 한우를 판 매하여 지역 한우의 질적 우수성을 저하시 키는 우려가 있음. 행사의 성격도 해마다 운 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달라진 점이 없다는 여론이 비등함으로 향후 행사시에는 청도 소싸움과 같은 볼거리 등 새로운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함.	시정 (축수산과)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 고
건 설 도 시 국	1	대곡댐 상류지역 가정오수관 설치 지도 관리 철저	대곡댐 상류지역의 오염원 차단을 위하여 세대별로 가정 오수관을 설치하고 있는데, 설치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기 확정된 세대의 일부 누락세대에 대하여 추가 설치방안 모색할 것	시정 (건설과)
	2	하수도 설치사업 조속마무리	현재 법규정은 하수도 시설을 갖추지 않고 하수도 구역 고시만으로도 사용료를 부과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관계청인 시와 협의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기 발주된 사업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강구	시정 (건설과)
	3	도로 점사용 체납자 관리 철저	도로 점용 허가에 대하여 체납액이 많은 부분은 행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 체납자에 대하여는 점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방안 마련 등을 통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방안강구	시정 (건설과)
	4	과속방지턱 규정에 맞게 설치	지역의 과속 방지턱이 설치된 곳을 보면 대부분 규정대로 설치하지 않아 교통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음. 기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제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요망	시정 (건설과)
	5	각종 사업 발주시 설계변경에 신중	각종사업 발주시 잦은 설계 변경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추가예산의 소요와 사업지연으로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설계시 사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하고, 준공시에는 명예감독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민원발생부분을 차단	시정 (건설과)

제5절 행정사무감사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 고
건 설 도 시 국	6	원전에대한 정확한 의지 표명 요구	현재 원전관련 각종사업은 사업대로 추진하면서 언론보도 등을 보면 원전사업을 백지화 한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대하여 행정의 공신력이 실추되고 있음. 행정의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 시켜주기 바람.	시정 (도시과)
	7	원전위탁 수수료회계 관리 철저	발전소 주변지역 보상 수탁 수수료 처리를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을 보다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관리토록하고 집행 등에 있어 회계관리에 철저를 기할것	시정 (도시과)
	8	구획정리 지구 사업 조속 마무리	90년도부터 추진하여 온 온양 망양지구 외 2개지구는 사업추진이 50%에도 미치지 않고 있으며, 서생진하 지구는 5년 전부터 공정율이 97%로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철저	건의 (도시과)
	9	불법광고물 정비철저	행정에서 관리하는 지정 게시대나 국도변 등에 음란성 광고나 불법 현수막이 많이 부착되어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수시 단속과 정비를 통하여 근절토록 할 것	시정 (건축과)
	10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에 만전	시일이 촉박하다는 사유로 단기간에 사업지를 선정하는 등 준비계획이 미흡하여 선정에 탈락된데 대하여 탈락사유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광역시와 중앙부처 등과 협의하여 추가사업 선정시에는 선정될 수 있도록 대책강구	건의 (건축과)

제2장 울주군의회 운영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 고
건 설 도 시 국	11	건축물 조경시설 타용도 전용 단속	200㎡ 이상 규모로 건축물을 건축할 때 일정규모의 조경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어 건축주가 준공후 편법으로 조경시설을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있음. 지도 단속을 통하여 불법용도 변경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등 단속에 철저를 기할 것	시정 (건축과)
	12	도시 소공원 확충	도시 형태로 발전되고 있는 읍·면 중심지에 대하여 공공용지 부지를 활용하여 소공원을 확충 주민 휴식공간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검토	건의 (산림과)
	13	산불진화시 안전사고 예방 철저	산림보호를 위하여 유사시 조직된 산불진화대에 대하여 수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인 교육실시	건의 (산림과)
	14	간절곶 자연공원 관리철저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인 간절곶 주변에 불법 포장마차와 무분별한 건축으로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도로변 가로등이 파손되어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수시점검 조치	시정 (산림과)
	15	군예산 투입 신중 검토	상북 이천-사자평 구간 임도 포장공사에 대하여 임도의 관리청은 양산 국유림이며 현재 개인에게 점용 허가한 도로인데도 군비를 투입하여 복구한 것은 행정처리 절차가 잘못된 부분이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할 것	시정 (산림과)

제3장 기타 의정활동

제1절 군정질문

제2절 4분 자유발언

제3절 진정·건의서 처리현황

제4절 주요의정활동사항

제1절 군정질문

1. 문화관광 지역개발에 대하여 (제57회 임시회)

- ▣ 일 시 : 2003. 3.14
- ▣ 질문의원 : 김지호의원
- ▣ 답변자 : 엄창섭 울주군수

【질문내용】

지방자치의 목적인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들의 의견을 군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가식이 아닌 실질적인 군민을 위한 군정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3대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정시책 추진의 결정과 관계되는 지역관광개발에 대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03년도 시정연설에서 밝힌 관광자원 개발사업 방향과 신불산 관광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불산, 간월산, 가지산, 사자평, 역새평원 등을 중심으로 한 소위 영남알프스라 불리는 천혜의 자연을 중심으로 한 관광개발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그 개발의 인식과 가능성에 대하여는 오래 전부터 인식을 하여왔으며, 우리 군에서도 2002년도 당초예산에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를 중심으로 한 서부지역 산악권 관광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으로 전임 군수로부터 추진되어 오던 것이 군수님 취임 이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99년경부터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내는 물론이고 자연환경의 훼손 없이 성공한 세계의 여러 나라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스위스, 유럽 등 지역의 우수시설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민간인, 군의원님들께서도 직접 답사하면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 사업이 어느날 갑자기 사업추진이 백지화된다는 것에 실로 놀라움을 금치 못할 따름입니다.

전임 군수가 추진한 사업이므로 나는 관련이 없고 내 생각과 다르다는 단순한 개념으로 시책이 추진된다면 임기동안에 완료되지 못한 사업은 후임자에 의해서 백지화 등이 반복될 것이고 결국 일관성 없는 시책추진으로 그 피해자는 군민이 될 것입니다. 어떠한 사업이던지 시책결정을 하여 추진된 사업을 취소 또는 다른 방향으로 돌리려면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 취소한 것에 의문을 두는 것이 아니라 취소한 과정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추진되어온 사업을 지역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군 의회까지도 한마디 의견조차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취소한 것이 타당한 방법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특히 군수님께서 2003년도 시정연설에서 표명하신 관광자원개발 사업의 방향에 대한 원론적인 표현 외에 그냥 광역시의 계획에 이끌려 가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개발방향에 대한 설명을 바라며, 또한 신불산 관광개발 계획이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등억온천지구 주변지역 정비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등역온천지구는 신불산 군립공원 및 가지산 자연공원에 접하여 있고, 특히 작천정, 자수정동굴, 간월자연휴양림 등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있는 울산의 최대 온천지구로 발전이 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에 걸쳐 주변지역 정비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면서 지역주민들의 공청회도 있었으며, 용역결과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우리군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이고, 나아가서는 울산광역시의 명소가 되도록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용역결과에 대한 추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데 의아심이 갑니다.

즉 이 또한 백지화를 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정비시기를 언제부터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모든 군정시책의 결정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존중이 되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답변내용】

먼저 우리군의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구체적 추진방향과 신불산 관광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코자 합니다.

우리군에는 신불산 군립공원과 영남알프스로 불리는 가지산, 신불산 등 풍부한 자연자원과 반구대암각화, 천전리각석 등 많은 문화유적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자연 그대로 활용하고 필요하면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여 공해도시에서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군에서는 해맞이 명소인 간절곶 해맞이공원 개발을 위하여 자연공원으로 도시계획을 변경 신청중에 있으며, 결정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임진왜란의 역사를 간직하기 위하여 서생포왜성 관광개발 학술용역이 끝남에 따라 자체적으로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수립 2005년 국비신청토록 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통옹기문화 체험마을 및 신불산 다목적캠프장 조성사업은 울산광역시의 관광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시에서 2004년 국고보조금 신청과 동시에 2004년 4월까지 기본계획 용역 및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하고, 그 이후로 우리군에서 조성공사를 실시하여 늦어도 2006년까지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불산 관광개발계획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이 되어있지 않는 관계로 신불산 관광개발을 포함하는 서부권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1회 추경예산 편성시 확보토록 하여 신불산, 가지산, 제약산 등을 연계하는 산악관광 자원개발을 할 계획이며, 개발의 방향은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관광기반 인프라 구축은 행정에서 추진하고, 그 외 개발은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서 개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광산업은 21세기의 보이지 않는 무역사업으로 가장 유망한 전략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경제·사회분야의 발전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안겨주는 분야로서, 우리군에서는 다양한 관광자원을 정비하고 개발함으로써 관광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을 거점으로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이를 관광 상품화하여 국내외에 적극적인 홍보와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 취소배경 및 과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우리군의 산림면적이 군 전체면적의 약 71% 정도로 특히, 신불산, 가지산을 포함한

영남알프스 일원의 고산지대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니고 있어 이러한 산림자원을 이용한 관광소득원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요구에 의해 추진되어 왔으나 그동안 특별한 추진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신불산 일원의 수려한 자연경관 및 문화유적 등을 이용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경주권과 연계된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여 우리군 서부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맥락에서 동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추진되어 온 내용으로는 '99년 4월경에 우리군에서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계획을 민자유치로 추진하겠다고 최초 표명하자, 한국자수정관광산업(주) 및 스카이월드(주) 등 2개 업체가 사업추진의사를 표명하였고 이어서 2000년 12월 ~ 2001년 1월경에 개략적인 사업계획을 우리군에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2001년 3월경 동 사업이 민자로 추진되는 사업임을 감안, 우리군에서 서로 협의하여 단일안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양 업체간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 2001년 10월경에 “신불산 삭도설치기본지침”을 마련하여 양 업체에 통보하였으나 한국자수정관광(주)에서만 삭도 설치를 위한 공원계획변경신청 및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 제출하였고, 스카이월드(주)에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양 업체간 과다경쟁을 막고 보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불산 삭도설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우리군에서 직접 실행코자 1억원의 예산을 2002년도 편성해 두고 있었으나, 한국자수정관광(주) 자체로 앞서 신청한 환경영향평가의 결과가 낙동강 유역환경청으로부터 부정적으로 회시되어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재신청하여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 예상되어 동 예산을 2002년

결산 추경시 삭감하였습니다.

앞서 본 사업을 친환경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계의 여러나라 스위스,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99. 10 ~ 2001. 9까지 총 6차에 걸쳐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민간인, 군의원님들과 함께 산악 케이블카 선진지를 직접 답사하여 산림 자연경관 훼손이 최소화한 환경친화적인 개발방안을 모색하여 이를 토대로 산림자연환경 보전에 역점을 둔 신불산 공원계획 변경에 대한 내부방침을 2001. 10월경에 수립한 것도 사실입니다.

본 사업을 중단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환경영향평가 실시결과 부정적인 의견회시 및 환경단체들의 반대와, 신불산의 케이블카설치 필요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가 조성되어 있지 않은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외 삭도설치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울산광역시의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행정적인 사항은 풀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자연경관이 어느정도 훼손된다 하더라도 신불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됨으로서 얻어지는 이익이 더 많다는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는 시점에 가서 재 검토해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신불산에 삭도를 설치하는 것 보다는 기존 등산로를 잘 정비하여 산책로 개념의 신불산 접근방향을 모색하여 신불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등억온천지구 주변지역 정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자연 및 생태공간, 전통문화 등 농어촌의 강점을 최대한 살린 농어촌 마을의 테마 개발을 통해 도시민에게는 건전한 여가선용과 농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어민에게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1년부터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

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은 3년간 10억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며, 본 사업이 2002년부터 광역시 단위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2002. 3.25. 상북면 등억리 화전·간월 마을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행정자치부에 신청한 바 있으나, 시·도별 1개 마을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울산광역시에서는 북구의 금촌 마을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은 행정자치부의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대상지로 선정되기 위하여 화천 마을에 대한 정비계획 용역을 우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02. 5.14. ~ 9.16.까지 실시한 용역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면, 단위사업 12건에 총 사업비 6,244백만원으로 화천마을에 대한 공공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설치, 건축물 개량 등과 간월마을에 대한 도로 확·포장, 공공기반시설 설치와 기타 용수로 설치, 벚꽃길 조성사업 등으로 올해부터 2006년 12월까지 4년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앞으로 본 용역 결과에 따라 재신청하여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선정이 된 이후 국비를 확보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 소도읍육성사업 대상지선정 탈락 대책 (제60회 임시회)

- 일 시 : 2003. 6. 21
- 질문의원 : 이몽원의원
- 답변자 : 엄창섭 울주군수

【질문내용】

울주군은 강원도 정선군, 영월군, 제주도 북제주군에 이어 네 번째로 4개 읍을 갖추고 있으며 소도읍 육성사업은 전국에 194개 읍이 지정대상이 되고 2003년도에 전국 24개 읍이 신청하여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등 12개 읍이 선정되었으며 사업기간은 2003년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사업비 2조원 중 국비 1조원의 지원으로 소도읍육성사업이 지정되면 국비 100억과 시·군비 100억원을 부담하여 3년에 걸쳐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막대한 사업예산은 우리군과 지역의 발전을 가속화 시킨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군 온양, 언양, 온산, 범서 4개 읍의 사업지 선정 타당성을 2002년 12월 행자부 소도읍육성사업에 대한 지침을 시달 받고 2003년 2월 4일 울산발전연구원과 약 4,500여만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03년 7월 9일 준공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 우선순위를 과업착수일 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으로 기간이 짧아 현장조사, 여론수렴, 공청회 등을 거치지 않아 순위 결정에 많은 의문을 남겼으며 본 소도읍 육성 계획 수립 준공이 7월 9일까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3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해 계획부실을 초래하여 의회의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많은 논란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사업대상지 우선순위가 결정되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광역시 행자부등에 사업의 타당성과 당초 행자부 계획대로 지역균형개

발과 연계하기로 되어 있으면 열과 성을 가지고 우리지역이 선정되도록 군과 광역시는 여러 기관을 통해 다 같이 노력을 해야 하나 군은 군대로 광역시는 광역시대로 남의 집 불구경 하듯하고 계획이 알차지 않아 우리군 온양읍이 제외되었다고 보여지며 타 시·도와 전라남도의 4곳이 선정된 예를 보면 군과 도, 도의회가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라 생각되며 우리와는 너무도 대조적이라 보여집니다.

자료에 보시다시피 소도읍 신청지 중에 1개 군에 4개 읍지역은 우리군 뿐이며 광역시 중에는 인천광역시 강화읍이 선정되었고 1개 시·도 중 2,3개 읍을 신청하여 2개 읍이 선정된 곳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수님께서 앞으로 우리군의 4개 읍에 대하여 소도읍 육성사업대상지를 심도 있게 재조사하여 필요하다면 2,3개 읍을 동시에 신청하고 여기에 따른 행자부에 보고된 순위를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

둘째, 본 의원이 볼 때 우리군에서 제출된 온양읍의 초록고을만들기는 초록길 만들기, 자전거도로 만들기, 남창천 친수 공간 조성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부가가치와 기대 효과 등 추진하는 현실과 지역여건등 계획이 알차지 않고 시간에 쫓겨 형식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고 보는데 먼저 신청한 초록고을 만들기 사업계획을 그대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테마를 선정하실 것인지,

셋째, 군단위사업이라고 광역시에서는 본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도 거치지 않는 등 무성의로 일관했다고 보여지고 우리군 역시 마찬가지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고 선정탈락경위 또한 원전지역이라는 이유인데 그렇다면 원전 인근지역은 왜 후순위이며 앞으로 지속적인 후순위로 미뤄질 때 군수님의 앞으로 계획은 어떠하며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하

시겠는지,

넷째, 또 앞으로 시행될 지방분권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실익을 찾기 위해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우리군에서도 그에 걸맞는 발빠른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처와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다섯째, 각종 군정사업과 현안문제점 등에 대하여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존중한다면 의회에 먼저 협의를 거치는 것이 당연함에도 우리 의회에서도 모르는 사항이 각종 채널을 통해 먼저 공개되는 일이 있어 의회와 집행부간에 불협화음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책임있고 진솔한 답변을 바라면서 경청해 주신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 답변내용

먼저 이몽원의원께서 질문하신 소도읍 육성사업 대상지 선정 탈락에 대한 대책 및 당면 현안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째, 우리군 소도읍육성사업 대상지를 재조사하여 필요하다면 2, 3개 읍을 동시에 신청하는 방안과 올해 행정자치부에 제출된 순위를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의 소도읍육성사업 대상지 순위를 정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의견차이가 조금 있었음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소도읍 육성사업 대상지 선정에 따른 타당성 조사 시 객관적이고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정량적 분석이 가능한 인구현황, 토지이용실태, 도시기반시설, 관광자원 등의 도시지표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온양읍이 선정되었고 의회의 동의도 얻었으므로

기 결정된 순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2003년도 소도읍 육성사업대상지에는 아쉽게도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2004년도 사업 대상지에는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둘째 온양읍의 초록고을 만들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이라 여겨지며 새로운 테마를 선정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온양읍 소도읍 육성사업의 테마를 초록고을 만들기로 정한 것은 지역적인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여러 대안중에 선택한 것입니다. 온양읍은 자연적, 지리적 여건 등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볼 때 온산공단의 배후 주거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특히 주민의식 설문조사결과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발전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우리군에서는 온양읍을 초록고을로 만들고자 정주, 휴양, 생태 3가지 주제로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온양읍 소도읍 육성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주민 공청회 개최와 지역 주요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공감대가 조성된 상태이며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사업의 실행 가능 여부와 타당성에 대하여도 검증받은 상태입니다.

초록고을 만들기의 주요 사업은 초록터 만들기, 초록길 만들기, 초록천 살리기 세 가지 사업이며 단기간 동안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최대한의 사업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국비를 보조받아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광역시와 군의 무성의한 대처 및 원전 지역이라는 이유로 후순위로 미루어 질 때 앞으로의 계획과 문제점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역시와 군에서는 소도읍 육성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하여 행정자

제3장 기타 의정활동

치부 담당부서인 정주지원계를 수차례에 걸쳐 직접 방문하는 등 계속적으로 접촉하여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함은 물론 우리군이 소도읍 육성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야만 하는 타당성, 당위성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광역시와 군에서는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각종 정보의 원활한 교환이나 사업계획에 대한 토론과 추진일정에 있어서의 신속한 대응 등을 통하여 행정자치부의 사업추진 일정 시달 이후부터 대상지 선정 심사까지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이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시와 군에서 소도읍 육성사업대상지로 선정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행정자치부 소도읍 육성사업 대상지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온양읍이 선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의 지역적인 고려에 의해 대상지가 선정되지 않았나하는 안타까움을 금할길 없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 2004년 대상지 선정시에는 꼭 우리 온양읍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전 지역이라고 탈락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는 울진군, 울주군은 원전 지원금이 많이 배정이 되어 지원을 하고 있는 군이라고 해서 지난번 심사에서는 빠뜨렸음을 새삼 말씀드립니다마는 군수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원전지역이기 때문에 교부금배정이나 소도읍 육성사업에 특별히 지원을 해 줘야만 마땅하다는 것을 행자부 장관과 차관, 차관보를 만나서 앞으로 설득을 해서 우리군에 소도읍 육성사업이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넷째,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방 분권에 대비한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어떤 대처와 준비를 하고 있는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은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입니다. 우리군은 핵심과제

인 지방분권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총무국장을 단장으로 한 4개 분야 13명으로 지방분권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2003년6월10일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군정현황사항에 대하여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각종 채널을 통해 먼저 공개되고 있는데 대하여 집행부의 향후 개선 사항은 무엇인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정 업무추진에는 사전에 철저히 계획되어 의회의 승인을 얻어 추진하는 사항과 우발적으로 파생되어 시급을 요하는 사항, 또한 대군민 계도와 홍보를 강화하여 군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요하는 사항 등 복잡 다양한바 예산이 수반되고 중요도가 큰 업무중 의회의 심의를 득하지 않는 업무가 없다는 점을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3.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하여 (제60회 임시회)

- ▣ 일 시 : 2003. 6. 21
- ▣ 질문의원 : 서우규의원
- ▣ 답변자 : 엄창섭 울주군수

【질문내용】

우리군에서는 매년 많은 예산으로 시행되고 있는 각종 건설공사가 너무 졸속으로 시행되고 있고 또한 공사 계약에서부터 계약, 감독, 준공과 준공 이후 사후관리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며 설계 및 사업을 하면서 주민의 의견수렴과 자문을 받아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는 등 주민의 불편 해소와 권익을 보호해야 하나 그러지 못하고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그로 인해 현장에서 간혹 크고 작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공사 준공이후 관리도 아주 미흡하다고 보여집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주민의 제보에 의하여 몇 군데 현장을 확인한 결과 부실시공이 생각보다 많다고 보여지며 또한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매년 조그만 호우시에 도 수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예산만 낭비하는 실정이라 생각됩니다.

우리군에서는 부실 시공된 공사가 있었다는데 대하여 우리 모두가 깊이 자숙해야 되리라 생각하며 몇 가지 군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0조 및 제61조에 의하면 하자 담보 기간중에 있는 각종 공사는 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실시하고 있는지, 있다면 몇 건이고 어떤 결과가 나왔으며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의회행정사무감사와 집행부 감사 결과부실 시공한 사업자 업체에 대한 제재등 조치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셋째, 지난해 수해복구와 금년도 당초예산으로 실시되는 공사가 수 백 건인데 건설과나 농산과 등 기술직공무원이 부족하여 공사감독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1명이 100개 이상의 사업장을 감독, 준공, 검사하는 공무원도 있는 줄 아는데 이로 인하여 전 사업장에 대하여 실질적인 공사감독을 하지 못하므로 부실시공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군수님께서서는 특별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또한 우리군에서 사업 발주시 이장, 지역유지 등을 명예 감독으로 위촉하고 있으나 형식에 그치고 있는바 실질적인 공사감독을 할 수 있도록 여비나 수당등을 지급하는 방법과 현재 공사 준공시 공사감독과 준공검사원의 확인만으로 준공처리 되는 것을 준공후 주변환경 정리와 민원해소 등을 위하여 읍·면장을 당연직 감독관이나 확인관으로 임명하여 확인을 받도록 하고 도로굴착지 복구, 건축물 준공후 관리대장 등재시에도 읍·면장 확인을 받도록 하는 부실 공사 방지조례나 규칙등을 제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위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군수님의 책임 있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서우규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0조 및 제61조에 의하면 하자담보 기간중에 각종 공사는 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실시하고 있는지

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공사계약의 경우 준공검사이후 하자담보 책임 기간 내에 있는 시설공사에 대하여는 상·하반기 년 2회 정기적으로 부서별 하자검사 공무원을 임명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2년도 하반기에는 시설공사 1,856건을 대상으로 10일간 하자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상반기에는 시설공사 2,185건을 대상으로 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20일간 하자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하자검사 결과 건축허가과 소관 상북 소호마을 회관 건립 공사의 균열 누수 등 3건의 하자가 있었으며 3건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업체로하여금 하자보수 조치하여 2건은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으며 1건은 하자보수 중에 있습니다.

둘째,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집행부 감사결과 부실 시공한 사업에 대한 제재 등 조치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조치하였는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수차례의 폭우로 우리군의 시설물이 수해 피해를 입어 수해복구 공사를 하는 과정에 일부 공사장에서 다소 부실 시공된 점이 발견되어 14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현장 시정 조치하고 8개 사업장은 재시공 조치하였습니다.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벌칙 규정은 법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구조물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인명에 피해를 주거나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등에 관한 사항으로 경미하게 설계와 상이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적용하기가 어려운바 앞으로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수해 복구공사 등 각종 공사가 많은 데 비하여 기술직 공무원의 부족으로 실질적인 공사감독을 하지 못하므로 부실시공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술직 공무원이 1인당 공사설계, 감독등 업무분량이 많아 인력이 증원되어야 할 사항으로 당장 해결할 수는 없으나 현재 추진 중인 표준정원제가 시행되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며 대형공사는 공사감리를 최대한 활용하고 주요 공사 시공시는 현장 근무토록 조치하여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각종 사업발주시 리장, 지역 유지등을 명예감독으로 위촉하고 있으나 형식에 그치므로 실질적인 공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여비, 수당 등을 지급하는 방안과 현재 공사 준공시 공사감독, 준공검사원의 확인만으로 준공처리 되는 것을 준공후 주변정리 및 민원해소를 위하여 읍·면장을 당연직 감독관이나 확인관으로 임명하여 확인을 받도록 하는 부실 공사 방지조례나 규칙 등을 제정할 의향이 없는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감독을 수행하는 기술직 공무원은 기술자로서의 모든 자격을 갖추고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리장, 지역유지 등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각종 설계도서의 이해부족 등 명예감독으로 위촉하여 실질적인 공사 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며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명예감독을 위촉하여 시행한 바 있으나 부작용만 발생한 사례 등도 많이 있었습니다. 리장이나 지역유지 등에게 도움을 받으려면 공사감독 업무가 아니라 공사와 관련한 주민불편사항이나 민원발생시 해결할 수 있도록 면장이 추천하는 주민을 위촉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비, 수당지급과 부실공사 방지조례 제정 등에 대하여 향후 문제점 등을 충분히 분석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속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4. 새마을사업으로 조성한 안길농로등의 사유토지 이전방안 (제61회 정례회)

- ▣ 일 시 : 2003. 7. 18
- ▣ 질문의원 : 김용원의원
- ▣ 답변자 : 엄창섭 울주군수

【질문내용】

1970년도 열화와 같이 일어났던 새마을운동의 기치 아래 낙후된 우리 마을은 우리 힘으로 새롭게 가꾸고 일구어야 한다는 굳은 일념으로 전국 방방곡곡으로 전국민이 한마음으로 일치 단결하여 노도와 같이 일어났던 한국민의 엄청난 저력이었습니다.

혈벗고 굶주림으로 처절한 민생고에 허덕일 때 허리띠 졸라매고 피땀나는 노력으로 전국민이 총 쫓기하여 일어난 새마을운동은 그야말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도 굶주리고 허덕이던 우리 가난한 농촌을 살리는 길은 과연 어떠한 길인가를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수십년 수백년 동안 어지럽게 정리되지 못한 농로길과 마을안길의 원활한 도로소통이야말로 시간을 절약하고 인건비를 절약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농민들은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옥토를 농로확장에 자진해서 아무런 보상없이 무상으로 오직 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자진해서 기부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담장을 허물고 심지어는 집을 허물어서 마을안길을 넓히고 농로길을 넓히는데 너도 나도 온 국민이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동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 우리는 원활한 교통수단으로 인한 소득증대에 박차를 가해 자급자족하는 잘 사는 우리의 아름다운 농촌으로 탈바꿈하게 되었고 국가경제 건설에 초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국민정신을 바탕으로 열심히 그리고 힘차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도 길이 길이 그 높은 뜻을 그 정신을 이어가게 해야 할 국민 정신 운동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헌신적이고 희생정신으로 일구고 가꾸어 놓은 마을안길과 농로길, 우리 온 국민의 땀과 정성이 젖어 있는 애환이 깃들어 있는 새마을운동의 자취가 현재 어떠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까?

그 현황을 파악이라도 하고 계시는지 그 심각성을 알고나 있는지 본 의원은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님께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이후 필연적으로 행정적인 절차가 뒤따라야함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정으로 지금까지 일관해 왔기 때문에 지금도 70년대 소유주 그대로 사유지로 방치되고 있으며 또한 소유주의 변경으로 되물림하면서 사유지로서의 상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각종 도로 확장 및 사업시 엄청난 민원에 시달리며 원만한 행정을 집행하는데 불필요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새마을운동 당시 지주의 동의만으로써 편입된 마을안길이나 농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지적측량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군이나 마을로 이전할 의향은 과연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새마을운동 당시 지주의 동의만으로 편입된 마을안길이나 농로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적측량 등 행정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군이나 마을로 이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편입된 마을안길이나 농로확장을 위한 토지는 당시 지주의 토지 사용 승낙을 받고 마을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이후 토지의 소유권 변경에 따라 이웃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법정까지 가는 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미불용지는 새마을운동시 지역주민 자조사업으로 안길이나 농로확장당시 마을자체협의 및 토지 사용 승낙으로 편입되어 공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효 취득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소유권의 이전은 어려운 실정이며 새마을사업으로 인한 미불용지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향후 도로 개설이나 확·포장 사업시 기존 도로부지는 20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권 행사에 관한 문제는 도로의 개설 경위·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한 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동일하게 처리 되도록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군정의 여러 부분에 걸쳐 걱정을 해 주시고 창의적 대안을 항상 제시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지역 환경문제 및 2005년 울산광역시 전국체전에 관한 우리 군의 입장과 대책에 대하여 (제62회 임시회)

- 일 시 : 2003. 10. 16
- 질문의원 : 이몽원의원
- 답변자 : 엄창섭 울주군수

【질문내용】

오늘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우리군 지역 환경문제와 청량인근 울산 석유화학단지나 온산 국가 중금속 공업단지의 환경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 또 태풍이나 수해 피해에 대한 대책과 그에 따른 부실공사방지대책 그리고 2005년 울산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우리군 입장과 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하며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환경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울산·온산공단 주변에는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 시·군민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으로 피해와 고통을 주는 악취 소동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악취를 황화수소, 메르캡탄류, 아미류 등 기타 자극성이 있는 기체상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교통단속은 그나마 제대로 기를 쓰고 하고 있는 것 같으나 직접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의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공해 환경에는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고 단속 또한 신고에만 의존하면서 미미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울산에는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거 울산 미포 국

가단지와 온산 국가 공업단지가 울산·온산 연안을 끼고 조성되어 석유정제, 석유화학, 비철금속, 펄프 등의 공장이 입주해 24시간 가동하면서 원료 공급에서부터 생산과정에 거쳐 대기수질폐기물 소음 진동 등의 형태로 각종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공단 조성 초기에는 경제개발을 최우선으로 한 정부정책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나 환경성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공단이 조성 되었고 따라서 이들 공장들은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완벽히 처리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추지 않고 생산시설비만으로 가동하였으며 국내 환경기술 또한 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 수준이 극히 미약한 실정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인 아황산가스가 한때는 무려 0.057ppm까지 상승 하였고 처리되지 않고 배출되는 폐수는 하천, 강 연안으로 흘러들어 농수산물의 피해를 초래 정부와 사업장은 많은 보상금을 농민에게 지불했습니다. 산성비가 내려 토양은 산성으로 변하여 나무까지 말라죽게 하였고 결국 공단 인근 지역 주민들은 대대로 살아온 고향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시·군민들은 공장들이 위치한 울산만, 온산만쪽에서 내륙 주거지역으로 불어오는 북동풍, 동남풍으로 인해 매년 봄부터 가을까지 날아오는 냄새에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피해와 고통에도 불구하고 악취물질을 배출하는 공장들에 대하여 원인물질조차 규명하지 못하고 악취물질 배출초과에 대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악취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며 악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와 악취물질이 배출되는 사업장별, 배출구별, 악취물질별, 농도 등 현황을 한번이라도 측정이나 의뢰한 바 있는지 환경보전 및 공해 방지에 대한 의지와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우리군에는 국가 산업공단인 중금속 공업단지와 크고 작은 기업체가 등록, 비등록 약 1,000여 개

가 있습니다.

이에 걸맞는 환경감시나 보존, 지원대책에 대한 환경 기본조례조차 없는데 환경 기본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태풍과 수해피해나 피해 복구에 대한 대책과 부실공사 대책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12일 우리지역을 강타한 태풍 매미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민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재해 현장을 일일이 찾아가 다니면서 재해민의 아픔을 같이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비지땀을 흘리면서 수해복구에 노력을 다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7월 집중호우와 8월 태풍 루사, 지난 9월12일 태풍 매미로 인하여 우리 울주군은 많은 피해를 입었고 그 상처는 지금도 우리 주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금년 6월 임시회시 우리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비롯한 의원 전원이 재해복구공사 현장을 확인하였고 태풍 매미 직후 피해지역을 일일이 방문하면서 확인하였습니다.

백년빈도의 강우량에도 다시금 피해가 나지 않도록 완벽한 시공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리의 목적을 염두에 둔 일부 건설업체의 시공은 두말할 나위 없이 부실을 일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추석 직후 태풍 매미로 방파제공사도 부실로 인한 파손과 그로 인한 어민의 피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난 제60회 임시회시 서우규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국정질문을 드렸습시다라는 답변이 미흡하고 전혀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백년대계를 위한 수해복구 현장이라고 보기에 너무나도 한심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제3장 기타 의정활동

군수님께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중앙부처와 협의 예산확보에 전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수해복구 사업의 일괄 발주에 따른 공무원의 일손 부족을 틈타서 아직도 견실 시공만을 내세운 채 양심을 속이고 부실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해복구 현장과 태풍 피해 현장을 철저히 검증하여 부실시공의 사례 발생업체에 대해서는 다시금 우리군에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배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군수님께서서는 부실시공 수해복구 및 태풍피해 현장의 처리 방침과 향후 부실 업체의 처리 계획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2005년도 울산광역시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전국 체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전국체전은 울산광역시의 위상과 110만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좋은 계기라 여겨집니다.

이러한 전국 규모의 체육 체전에 따라 많은 체육시설의 보완과 신설이 필요한 줄 아는데 체육시설이 미흡한 우리군에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며 어떤 시설, 어떤 종목을 유치하려고 하는지 상세한 설명과 계획을 부탁드립니다. 질문드린 내용에 대하여 군수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먼저 이몽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첫째, 울산·온산국가공단에서 배출되는 악취물질에 대한 원인규명과 측정의뢰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법규상 울산·온산국가공단의 환경관리권은 울산광역시에

있으며 국가공단을 제외한 지역의 소규모 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권만 우리 군에 위임되어 있어 온산공업단지의 환경 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는 금년 3월부터 8월까지 온산공단내 악취 배출 업소 215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 위반업소 22개사를 적발 행정처분하였으며 악취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6개사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초과 배출 부담금 9,6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상설 환경순찰반을 운영 시민 54명을 악취감시 모니터 요원으로 지정하여 합동 교육 및 순찰을 실시하였고 기업체에서도 기업자율환경순찰대로 편성 운영하여 1일 2회 악취예방 및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04년 1월 악취방지법 시행에 대비하여 관련 기업체의 악취방지시설 조기 투자 유도로 배출허용 기준 강화에 대처하고 있으며 2003년 7월에는 울산광역시 대기환경기준 조례를 제정 국가환경기준보다 강화된 대기환경 기준을 적용하여 지역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온산국가공업 단지내 악취배출업소에 대하여 금년 6월 16일부터 10일간 울산광역시와 합동 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연중 환경오염 신고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시 대기질 상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우리군 관내 온산읍 화산리 풍산금속 주차장과 원산리 한국티타늄공업 옥상 및 덕신리 지역에 악취 등 대기오염 물질 발생을 감지하기 위한 대기질 측정망을 설치 운영하여 매일 그 측정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또한 울산광역시에서 대기오염원 배출원 자료구축 및 악취 유발 물질 저감기술 개발을 위하여 학술용역을 발주 울산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연구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에서는 지역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제3장 기타 의정활동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부 및 광역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악취등 대기 오염 물질 감소 및 억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보건 및 공해방지에 대한 의지로서 환경감시나 보존·지원대책에 대한 환경기본 조례제정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기본조례는 2001년말 현재 전국 180여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되어 있으며 울산광역시에서는 광역시 단위에서 1997년7월15일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기본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자치단체 및 사업자 주민의 책무 환경 기본계획수립, 환경보전시책 수립방향, 정보공개와 시민참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군의 환경현황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시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부실시공 수해복구 및 태풍피해현장의 처리 방침과 향후 부실시공업체의 처리계획,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 의향은 있으신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실시공 수해복구 및 태풍피해 현장의 처리 방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태풍 라마순과 8월4일부터 8월11일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의 내습으로 수해피해 복구 대상지는 322개소로 현재 복구가 완료되었으며 이중 일부 부실시공된 현장이 발견되어 14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현장시정조치하고 8개 사업장은 재시공 조치하였습니다.

올해에는 태풍 소텔로 피해 88개소, 태풍매미 피해가 66개소로 총 154개소이며 피해지역 복구를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여 내년 우수기 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부실시공방지를 위하여 주요 공정시공시에는 공사감독자를

필히 현장에 근무토록 조치하여 부실시공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부실업체처리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벌칙규정은 법령에 정하고 있으나 이는 구조물의 중대한 하자로 인명에 피해를 주거나 공중의 위험을 발생케 한 자 등에 관한 사항으로 경미하게 설계와 상이하게 시공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재시공 등으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정오수관 설치 및 우수토실 공사처럼 현장이 광범위한 대형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책임감리를 하고 있으며 5억 이상토목공사 및 특수공사에 대하여도 감시관을 위촉하여 부실공사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함과 아울러 일부 부실시공업체에 대하여는 공사계약 등 업체 신청시 적극 배려하는 등 불이익을 강하게 주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형공사 군민참관인제 운영규정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소규모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방지를 위하여 위 운영규정을 보완하는 방안과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2005년도 전국체전대비 우리군의 준비 및 유치 종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주지하시다시피 2005년도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는 10월 중에 7일간으로 울산 전지역에서 개최되며 일부 종목에 대하여는 부산과 창원 등에서 분산 개최됩니다.

경기 종목으로는 40개 종목에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로 16개 시·

제3장 기타 의정활동

도, 13개 해외 지부에서 약 2만5,000여명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체육대회입니다.

전국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필요 경기장은 40개 종목 58개 경기장이 필요합니다.

이에 잠정안으로 현재까지 계획하고 있는 경기장은 24개 종목 36개 경기장으로 우리군에서는 6개 종목 7개 경기장으로 종목별로는 럭비, 복싱, 배드민턴, 골프, 요트, 트라이애슬론 경기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최종 결정은 2003년 12월 말경에 울산광역시에서 울산광역시 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각 가맹단체와 협의하여 결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장소가 확정되지 않은 태권도와 카누, 조정경기를 우리군 관내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전국체육대회뿐 아니라 군민들의 체력 증진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울주군 종합체육시설 설치와 지역별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6. 울산광역시의 종합장사시설 삼동면 위치 확정과 관련하여 (제62회 임시회)

- 일 시 : 2003. 10. 16
- 질문의원 : 김석암의원
- 답변자 : 엄창섭 울주군수

【질문내용】

이번 제62회 임시회에서 울산광역시의 최대 숙원사업이던 종합장사시설이 우리군 삼동면에 유치 확정된 것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울산광역시의 종합장사시설이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정족산 묘지 공원에 들어선다는 내용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였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울산광역시가 5개 후보지를 두고 선정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8월부터 삼동면 종합장사 시설 유치위원회는 울산광역시가 제시한 인센티브와 각종 개발 혜택 등을 검토하고 울산광역시와 수십차례의 협상을 펼친 결과 지난 10월6일 공식적인 유치신청을 하였으며 울산광역시가 제시한 지역 인센티브로 구·군부담 42억원과 울산광역시 120억원, 마을숙원사업비 38억원등 총 200억원을 마을 공동 수익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삼동면 주민들이 종합장사시설내에 장례식장 운영과 경영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연간 20억원 이상의 순수익이 주민의 복지증진에 사용되고 복지회관, 면민 운동장 건립, 하잠교 재가설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도 했습니다.

또 이미 계획된 오수관 설치 사업, 청량면 울리에서 삼동면 하작간 도로 등 6개 도로 계획이 앞당겨 실시되고 주민 생활권 보호를 위한

진입로 우회 건설 등 주민 생활에 전혀 피해가 없도록 배려한다고 보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울산광역시가 추진해야 할 최대 숙원 사업인 종합장사시설을 그 지역의 해당면민들의 동의만 얻으면 울산광역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둘째, 삼동면조일리 종합장사시설 유치 확정까지에 있어서 군에서는 어떠한 유치 노력이 있었으며 또한 어떠한 대처 노력을 하였는지 특히 종합장사시설 관련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였는지 하였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였는지 이와 관련 군에서 광역시에 제시한 의견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셋째, 종합장사시설을 울산광역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보는지 또한 집행부에서 오늘의 이 시간까지도 군의회에는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넷째, 군수는 그 지역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단체장으로서 울산광역시 차원의 종합장사시설이 삼동면에만 국한되는 사항이라고 보는지 아니면 주민전체에 영향이 미친다고 보는지 과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행정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다섯째 울산광역시장의 삼동면 유치확정 기자회견시 납골당 부분은 민자유치로 시행한다고 하였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여섯째, 유치확정된 현재의 삼동면 종합장사시설의 진입도로와 관련이 있는 웅촌면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론에 대한 대책방안은 있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지

일곱째, 광역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센티브 내용 결정에 있어서 순수 삼동면 주민들의 의견인지 아니면 군에서 조정한 것인지 또한 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다음은 김석암의원께서 질의하신 울산광역시 종합장사시설의 삼동면 유치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대상지를 삼동면으로 확정된 것은 삼동면 주민스스로 넘비현장을 극복한 훌륭한 사례로서 역사에 길이 남을 일이며 뜻을 모아 용단을 내린 삼동면 종합장사시설유치위원회 신기호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삼동면민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와 찬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울산광역시 종합장사시설이 우리군 삼동면에 유치되게 된 것은 삼동면민은 물론이요 18만 모든 군민의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울산광역시에서 제시한 삼동면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와 재정적 지원의 효과가 삼동면은 물론 울주군 전지역에 골고루 나타날 수 있도록 군의회 여러 의원님들과 더불어 협력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번 종합장사시설 유치는 투표에 의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유치 신청에 따른 결과로서 우리 삼동면민 뿐만 아니라 18만 울주군민의 화합과 지역발전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기원함과 아울러 우리 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18만 군민 모두가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할 예정입니다마는 변양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몽원 의원과 김석암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7. 대곡댐 건설에 따른 문제점 (제64회 정례회)

- ▣ 일 시 : 2003. 12. 23
- ▣ 질문의원 : 서우규의원
- ▣ 답변자 : 엄창섭 울주군수

【질문내용】

울산광역시가 식수난 해결을 위해 지난 1999년도 착공하여 2004년도 4월 준공예정으로 공사중인 대곡댐건설과 현재 공업용수와 식수 겸용인 사연댐 용수를 100만 울산광역시민의 맑은 물 공급차원에서 대곡댐 담수를 2004년에 완료코자 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를 위해 상류지역인 두동면, 두서면, 언양읍 일부 지역주민들은 댐 주변지역 지원금 210억원을 댐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에 사용치 않고 수자원 보호구역 지정 등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금전액을 차집관로 매설을 요구하며 반납한 일이 있고 울산광역시에 시행하는 상류지역 두동, 두서, 언양 일부지역에 오·폐수 차집관로 설치가 80% 이상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울주군에서 시행하는 상류지역의 가정 오수관거 및 우수토실 설치가 독가촌과 일부 지역에 약140가구(두동 100여가구, 두서 40여가구)가 누락된데 대하여 설치비가 약 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과 행정 공신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누락 및 건물신축 지역은 앞으로 차집관로 설치시에는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될 것으로 보여 형평성, 주민부담과중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보이는데 대하여 군수님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코자합니다.

첫째로 차집관로 및 오수관거가 누락된 세대나 앞으로 새로이 신축되는 독가촌 등 주택에 대하여 차집관로가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 사실상 상류지역 규제를 가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보이는데 여기에 대하여 현재와 같이 향후 수반되는 차집관로 매설과 저수조 설치 등에 대한 비용부분 지원여부에 대한 행정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둘째로는 대곡댐이 완공되어 내년부터 담수시 주변지역의 생태환경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와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된 사항이 있는지와 향후 피해에 따른 우리군의 대처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공공복리와 편의를 위하여 일부 지역이지만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군수님께서서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피해주민의 입장에 서서 적극 대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답변내용

서우규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곡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가정오수관 연결 사업 중 오수관로가 누락된 가구나 취락지역에서 떨어진 독립가구에 대한 관로매설 계획과 향후 새로이 신축되는 건물에 대한 행정지원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두동, 두서면에 시행되고 있는 대곡댐 상류지역 가정오수관 연결 사업은 댐 주변지역사업비로 상수원 보호구역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서 2002년 5월부터 착공하여 현재 공정 10%정도입니다.

댐 건설 지원사업비 총 210억원 중 오수관거 설치비는 169억원으로 측량 및 설계한 결과 두동 100여가구, 두서 40여가구가 오수관거 설치사업비 부족으로 금번사업에 누락되었습니다.

사업비 부족액은 40억원 정도로서 울산광역시를 통하여 댐건설 부서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울산광역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하면 제2단계인 2011년까지 하수도를 정비, 완료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국수자원공사의 지원이 불가할 시는 언양 하수종말처리장 준공 후 공공하수도 고시 전에 하수도 특별회계의 재배정 사업 또는 양여금사업비를 지원 받아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처리구역이 고시된 지역 내에 신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의거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토록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나 취약지역 이외의 지역은 처리구역 고시를 제외시키겠으며 취약지역 내는 울산광역시 지선관거 계획에 맞춰 가정오수관을 충분히 매설하여 주민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으로 대곡댐이 완공되어 내년부터 담수시 생태환경변화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된 사항이 있는지 또한 향후 피해에 따른 군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댐 건설 및 담수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예상환경 피해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중이며 댐 담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농작물 및 인체 등의 환경피해는 담수 시작 후 지속적인 영향조사를 통해 확인될 수 있는 사항으로 생각하며 우리 군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관련기관 등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우규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8. 작괘천 하상정비계획 및 서부권 종합관광개발계획 추진 (제65회 임시회)

- 일 시 : 2004. 2. 4
- 질문의원 : 김진근의원
- 답변자 : 엄창섭 울주군수

【질문내용】

울주군내 훌륭한 관광자원과 아름다운 경치를 가지고도 제대로 정비하지 못하여 활용도가 떨어져 사장되어 빛을 스스로 잃어가는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작괘천입니다.

작괘천의 거대한 화강암으로 넓은 판석과 주변은 원시림에 가까운 숲과 정자, 유리알처럼 맑은 물, 아름드리 벚나무에 터널은 꽃길을 만들어 상춘객들을 유혹하는 작천정만이 가진 아름다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작천정의 정자 건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행사로 제1회 시조 백일장 및 한시발표회를 개최하여 초·중·고학생들은 물론이고 많은 일반인들이 참여하여 자연을 노래하기도 하였습니다.

1960년대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홍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수면 정비작업을 실시하여 현재의 하천제방을 만들어 벚꽃길 옆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넓은 토지를 확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작괘천의 아름다움은 깨끗하고 풍부한 물과 이 물들이 길을 세차게 흐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넓직한 바위이며 사람이 그늘 아래 앉아서 사색에 잠길 수 있는 정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천의 발원지인 간월산과 신불산에서 강으로 인하여 떠내려 온 토사와 잡석이 넓은 바위를 덮고 있어 관광객들이 넓은

바위로 굽이쳐 흐르는 물이 자연적으로 움푹 팬 구덕으로 술을 따르는 듯이 흘러 들어가는 자연의 현상을 보고 감상하기 위하여 찾아왔건만 그 옛날 간직한 바위의 신비감은 온데간데없는 현실입니다.

관광울주를 지향하고 있는 군정시책에 비추어 볼 때 집행부의 적극적인 개발이 요구되는 사안이라 판단되어 작괘천 하상정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작괘천의 아름다움은 울산 12경으로 선정되어 있으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본래의 아름다움이 많이 훼손되어 있는 데에 대하여 하상정비작업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또한 하상정비시 구간을 작천정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메가마트 옆 경부고속도로 교량 아래에서부터 서쪽으로는 상북면 등억온천 입구 영월식당 교량 아래까지 약 2.2km 정도의 구간에 대하여 실시하여야만 작괘천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다고 여겨지는 데에 대하여 군수님의 생각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상정비작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등산객들을 포함하여 연간 100만명 이상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주변 상북면과 삼남면에 소재하고 있는 음식점 등 관광지를 개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의향과 상북면 등억온천단지내와 주변 근린생활 시설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도 손익분기점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작괘천을 중심으로 서부지역을 관광벨트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주변지역 개발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많은 세수가 증대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반하여 환경단체에서의 자연과피라는 명분으로 개발반대에 부닥치면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답변내용】

김진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작수천의 하상정비 작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와 하상정비시 구간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수천은 지방 2급 하천으로 2001년 울산광역시에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작천교 하류 부분은 계획에 의거 하천정비를 시행하고 있으며 작천교 상류는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작천교에서 상북면 등억온천 입구까지는 관광지구로서 하상정비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작천정 정자 부근 반석 파괴가 불가피하므로 당장 예산을 투입하여 정비하는 것보다 작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하상정비 작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등산객 등 연간 100만 이상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여 주변 상북면과 삼남면에 소재하는 음식점 등 관광지를 개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의향과 상북면 등억온천단지와 주변 근린시설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도 손익분기점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작과천을 중심으로 한 서부지역 관광벨트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울주군은 산악, 해양 등 풍부한 천혜의 자연자원과 다양한

역사문화, 농어업, 그리고 산업자원을 골고루 보유하고 있는 복된 고장입니다.

특히 신불산을 포함한 영남알프스는 관광적 가치가 매우 크다 하겠으며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그 가치는 더욱 커질 것이고 2010년 경부고속철도 울산역사가 완공되면 언양 등 서부일원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울산광역시와 우리 군이 신불산 산악관광 자원화 사업을 위한 학술용역을 마치고 광역시 주관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산악연계방안, 역사평원, 단조습지, 마가목 군락, 철쭉 군락 등 신불산이 보유한 자연자원을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아울러 작천지구내 산악레포츠 지원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역시주관으로 올 10월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국·시비가 확보되면 우리군 주관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불산 관광자원화 사업이 완료되면 등억온천과 인근 음식점도 자연스럽게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지역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이와 아울러 앞으로 관광수요증가에 대비하여 우리군이 가지고 있는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청사진마련을 위해 현재 울주군 전역을 대상으로 중단기 울주군 관광종합개발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오는 8월경 완료할 계획입니다.

종합개발계획은 공청회 등을 거쳐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수립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수립을 위해 자문위원회도 구성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발방향을 설정하여야 하겠습니까마는 행정에서는 관광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고 개발은 민자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경부고속철도 울산역사 유치 확정 시점에서 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현재 광역시에서 진행중인 반구대 암각화주변 문화관광자원화 사업, 언양읍성 정비사업, 삼남·삼동 골프장 건설 등과 절묘한 타이밍을 맞추고 있어 상호연계성이 용이하고 시너지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주변지역개발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많은 세수가 증대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반해 환경단체에서 자연환경파괴라는 명분으로 개발반대에 부딪친다면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과 보존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관광개발에 있어서는 환경훼손이 일부 불가피할 수밖에 없으나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과 환경단체 등 지역 NGO와도 충분한 협의를 통해 다수 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인간 친화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는 관광개발을 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진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절 4분 자유발언

1.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제54회 임시회)

▣ 일 시 : 2002. 10. 16

▣ 발언의원 : 서완영의원

【발언내용】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서완영의원입니다.

지난번 제53회 임시회 중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또한 2003년도 당초 예산을 앞두고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4분자유발언을 통해 본의원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인 균민복지증진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군정 시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현재 집행부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각종 사회단체에 대하여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각종 축제장 행사 지원금으로 2000년도 42건에 5억 100만원, 2001년도 48건에 5억 3,200만원, 2002년도 9월 말 현재까지 34건에 2억 9,100만원 등을 지원하였으며 농·축·원협 등 유관기관지원에 있어서도 2000년도 3,300만원이던 것이 2001년도에는 4건에 2억 6,400만원 2002년 9월 현재까지 4건에 12억 1,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업, 임업, 축산업 관련 각종 작목반에도 2000년도 7건에 9,100만원, 2001년도 12건에 2억 5,300만원이 지원되었고, 2002년도 9월 말 현재까지 3건에 1억 2,2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매년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번 2회 추경예산에서도 6건에 5억 8,284만

2,000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사업들 중에는 군민들의 삶의질 향상과 소득증대사업에 적정하게 투자되는 지원도 있겠습니다마는 다수의 사업이 그렇지 못한 부분도 상당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려면 먼저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과 지원대상사업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공익성의 실현이 높다고 판단되었을 때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완료 즉시 철저한 정산 및 평가를 하여 소비성 및 낭비성은 없지만 계속 지원해야 될 사업인지 개선방향은 무엇인지 등을 분석하고 그 분석한 결과를 기준으로 향후 지원금 전금은 물론이고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감하게 지원을 중단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의 원칙이 정착될 것이며 또한 지원사업의 합목적 실현으로 진정 군민을 위한 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울주군 예산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입자다 또 울주군에는 되는 것도 안되는 것도 없다 군수 한번 찾아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등 정말 웃지 못 할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울주군 재정운용의 한 단면이라 생각할 때 걱정과 책임을 느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주민들의 욕구는 날로 늘어만 갑니다. 군수님도 선출직, 의원님들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자유롭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일수록 의회와 집행부는 철저한 기준과 원칙을 지켜 나가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600여 공무원 또한 사업계획수립단계부터 철저한 검토와 의

견을 수렴하여 엄선 또 엄선하여 예산요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주민들도 당장은 불편한 점이 있을지 몰라도 머지않아 사고가 정착될 것이며 행정의 근본이 확립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2003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게 될 것입니다.

예년 같으면 원전특별지원금이 매년 100억원 가량의 순 사업성 자금이 있어서 조금은 재정적 여유가 있었습시다만 올해에는 그렇지 못한 부분 또한 사실입니다.

선심성, 낭비성 축제 및 각종 행사에 매년 증액하여 투자된다면 이 액수가 수십억이 되고 그럼으로 해서 중장기 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이 지연되게 되며 결과적으로 다수의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감히 한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2기가 시작되는 현시점에서 3대 의정활동이 시작되는 현시점에서 전자의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면 과감히 떨쳐버리고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각오로 새출발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 사람이 '예'라고 대답할 때 한 사람이라도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소신 있는 자세로 공무에 임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4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청량면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제60회 임시회)

▣ 일 시 : 2003. 6. 21

▣ 발언의원 : 김철준의원

【발언내용】

청량지역은 40여년간 울산석유화학공단 가동으로 각종 공해의 수난과 동양 최대급인 신울산 변전소로 인하여 수백만평의 철탑속의 피해뿐만 아니라 30여년간 수천만평의 그린벨트로 청량의 85%나 묶여있고 또한 20여년간 회야댐이 건설되어 면민들의 실향과 희생으로 100만여 시민의 식수를 공급하고 있다. 게다가 15년전 마을을 접하여 울산 구치소의 설치에다 이제는 덕하리 일원에 옥동군부대 및 훈련장 이전 계획 등이 확정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제2의 석유화학공단격인 신산업단지의 조성 및 인근 온산공단의 공해 차단 역할지역인 용암리, 처용리 일원에 녹지 60만평이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다. 오늘날 1만7,000여 청량면민은 청량의 존폐 위기감마저 들 정도로 심각한 벼랑 끝에 위태로운 현실에 처해 있다.

4분 발언에 나선 김철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조금 전 본의원이 낭독한 내용은 길게는 40년 국가와 지역을 위해 희생만 강요당한 청량면의 현실내용으로써 1만7,000여 청량면민들의 지난날의 반성문처럼 내리고 있으며 오늘날 청량면의 절박한 현실을 한계점 위기로 보며 결연한 심정으로 희망을 찾고자 지난 2003년5월30일 1,750여명의 실명으로 울주군수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 제출한 내용의 일부로서 해당지역 출신인 본의원의 가슴 깊이 각인이 되어 있는 문구입니다.

오늘 제60회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장의 방청석에는 정인걸 청

량면자치위원장과 이장단 회장님 그리고 각 직능단체장님, 또한 방범대 대장을 비롯한 젊은 청량주민여러분 다수의 면민들께서 방청을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금번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및 심사에 관한 관심사항으로써 당해 지역주민들의 생활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에 크나큰 도움이 되는 각종 사업 등의 심사결과를 직접 보고 듣고자 합일 것입니다.

또한 울주군과 의회에 좀더 청량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아낌없이 지원을 바라는 호소하는 심정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만 1년여 전 거친 주민들의 두 손을 잡고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 골목길이나 심지어 논두렁 밭두렁을 누비고 다녔던 것이 선합니다.

그렇듯이 지방의원은 의회의 기능을 최우선으로 준수하지만 해당 지역의 공익사업에 과연 자유로울 이가 몇 있겠습니까?

오직 지역발전의 일념으로 무급직, 명예직으로써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뛰어 다닙니다.

오늘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저 김철준은 청량출신 의원으로 정략을 생각하는 정치꾼이 아니라 주민을 울리고 웃기는 광대 더욱 아닙니다. 그저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주민들의 손과 발을 대신하는 일꾼일 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다면 본 의원의 부득의 소치로 널리 양해 바라며 특히 청량주민 여러분 앞에 머리 숙여 송구한 마음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또한 엄창섭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여태껏 낙후된 청량에 대하여 아낌없는 많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 지방자치 이후 18만 울주군민의 권리 및 자존심을 회복하자 (제62회 임시회)

■ 일 시 : 2003. 10. 16

■ 발언의원 : 김철준의원

【발언내용】

지방자치 이후 18만 울주군민의 권리 및 자존심 회복 차원에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울산시에서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1995년1월1일 시·군·도농 통합을 하였는데 이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의해 도농간의 균형개발이라는 대명제 아래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997년7월15일 광역시 승격 이후에는 화장실에 갔다온 것처럼 잊어버리고 박탈당한 울주군민의 재산인 미환수 공유재산 문제와 광역시의 분위기 때문에 도시계획입안건도 없고 전국의 90개 군중에도 유일하게 농촌지도소도 없고 향간에 논란되고 있는 그린벨트 내 취락지구 문제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 대단위 그린벨트 해제 전단계인 조정지역 대상이 토지 등급에 따라 조정한다지만 형평성으로 보면 울주군은 22%에 해당하는 6,000㎡이상이 소외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당한 민원과 말썽의 소지를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며 공공하수도 징수는 개시 공고에 따라 시설도하지 않고 하수도세를 우선 부과하고 있고 택시 요금 할증제는 통합 때의 약속을 현실적으로 조정되어야 되는 등 울산시에서는 울주군민을 위해 당장 해결해야 할 정녕 중요한 것들에 대하여 방향과 감각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히려 지난 13일 저녁 방송에는

제3장 기타 의정활동

군립공원인 신불산 역사발 보전을 시가 군에 지시하는 것으로 보도되어 울주군을 마치 울산시의 산하 직속기관인 양 착각하는 표현과 시의회 일부 의원이 14일 지방지에 보도된 울주군이 원전부지 추가 요청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와 자료에 의한 것이 아니라며 심히 유감스러우며 18만 군민을 무시하고 매도하는 행위라 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발언한 내용은 진정 주민이 주인인 지방자치제의 주민의 기본 권리이며 수백년 이어온 울산의 모태인 울주군의 자존심일 것입니다.

이에 울주군의회와 엄창섭 군수님 이하 600여 공무원과 18만 군민 모두가 합심하여 앞으로 울산의 발전과 울주군의 발전을 위하여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데 혼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4. 상수원 상류지역 난개발 방지 및 수자원 보호 (제65회 임시회)

■ 일 시 : 2004. 2. 4

■ 발언의원 : 이몽원의원

【발언내용】

요즘 우리 주변은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평가 성적은 낙제수준이며 신뢰보다는 불신이, 희망보다는 절망을 조장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고 나면 새로운 것이 불거지는 현실에 선 출직 공직자 신분을 가진 자로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울주군은 울산광역시와 함께 회야강주변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 친화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회야강 상류 주변을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가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 상수원수의 55%나 차지하고 있는 회야댐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댐하구의 체계적인 준설과 개발로 군민이 쾌적하고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회야댐은 양산시 웅상읍 용당 산업단지 예정지에서 불과 10km 하류에 위치해 있고 강줄기와는 50여m 떨어져 있으며 양산시에 따르면 웅상읍 용당리 일대에 17만평규모에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100여개 업체가 입주할 규모의 계획으로 2004년 4월부터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용역을 통해 금년내에 산업단지지구 지정을 정부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2003년 현재에도 회야강 상류에 공장등과 축사 등이 950여개소나 산재해 있고 강을 중심으로 약 7만 8,000여명이 거주하고 상수원 수

질보호에 비상이 걸려 있는데도 또 양산시가 울산시민의 상수원인 회야댐 상류에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면 상수원은 크게 오염이 되어 공업용수마저도 사용 불가능해지리라 예상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본 군은 광역시와 함께 총리실 산하 수질환경개선단에 보고하여 회야강 상류지역에 수질을 오염시키는 대규모 난개발 방지대책을 확정하고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는 회야강 상류지역 주변을 광역도시계획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도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야강은 양산에서 발원되어 삼동으로 흘러 청량에 머물면서 울산광역시의 대젓줄인 동시에 온산, 온양, 서생 3개 읍·면이 강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앞으로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류에서 내려온 토사 및 잔토를 준설해서 강 하구로부터 상류에 이르기까지 수려하고 아름다운 강으로 발전시켜서 생산적인 위락시설로 개발하여 울주군의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상부와 협의하여 회야강 정비를 신속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준설로 인한 엄청난 물량의 잔토 토사가 예상되며 이 또한 관개개발에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부가가치는 이 지역 개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요즘 지역과 지역간에 환경분쟁이나 갈등을 조정해 온 환경부 산하 환경분쟁 조정위원회가 최근 지방자치간의 잘못된 도시계획이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 책임을 물어 배상을 내리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가 합의하여 환경분쟁관계를 사전에 피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4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제3절 진정·건의서 처리현황

1. 처리현황

계	2002(7.1~12.31)	2003	2004(1.1~6.30)
71	23	34	14

2. 2002년도

접수 일시	진정인		진정사항	소관 부서	처리내용
	주소	성명			
2002 7. 9	울산. 남구 무거동 299-10	대한전문 건설협회 울산광역시 시회	전자입찰로 실시되는 공사는 입찰 참가 수 수료를 전액 면제하 거나, 적정한 실비수 준 (1천원이하)으로 인하하여 주기를 건 의함.	회계과	7.23 결과통지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 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거 시설공사, 물품용 역등의 입찰참가신청 시 납부토록하고 있는 입찰참가 수수료 10,000 원의 적정여부를 충분 히 검토하고 시 및 타 구 의견 수렴후 면제 또는 인하여부를 조정 할 계획임.
2002 7.22	웅촌면 곡천리 582	웅촌면 러브호텔 반대추진 위원회 한덕주의 831명	군이 허가한 허가번 호 202-42, 202-76, 202-130 의 러브호텔 허가에 대하여 기 허가건을 취소해 줄 것을 진정 함.	건 축 허가과	관련 법령에 저촉없이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 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으며 미풍양속 등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경식재나 차폐시설 강화 등을 건축주와 협의 강구하 여 예방토록 하겠음.

제3장 기타 의정활동

접수 일시	진정인		진정사항	소관 부서	처리내용
	주소	성명			
2002 7.31	삼남면 교동리 315	정성근외 7명	현재 울산광역시 소유인 삼남면 교동리 1499-177번지에 모임의 장소인 마을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건의함.	회계과	8. 7 결과통지 시유지에 대한 양여신청을 하였으나 불가통보를 회신받음.
2002 8.17	청량면 문죽리 732	김인로외 9명	청량면 문죽리 두현1반 지하수 관정에 물이 고갈되어 식수가 없어 우물물을 길어와 먹고있는 실정임. 지하수 관정을 새로 시설해 줄 것을 건의함.	환경 보호과	8. 30 결과통지 현장 확인후 대체 수원을 개발할 계획임.
2002 8.27	범서읍 천상리 324-22	오상근	탄원인이 거주하는 인근에 2층 상가 건물을 신축하고 있어 탄원인의 1층 주택에 햇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일조건 침해를 당하고 있음.	건축 허가과	9. 2 결과통지 현지 확인한바 일조건 확보를 위하여 띄워야 할 정북방향으로의 법적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적법하게 시공중임.
2002 9. 9	울산. 남구 야음동 369-4	정경애외 1명	호소인은 17년간 문수사 입구 주차장에서 노점과 매점운영을 하여 왔으며, 현재 정신질환자인 남편과 시각장애인인 아들과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던 중 생계유지를 위해 없어서는 안되는 매점을 철거당하게 되어 이를 호소함.	도시과	9. 19 결과통지 귀하의 시설물은 개발제한구역내의 문수사 소유의 임야에 설치되어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에 위배됨. 청량면에 통보한 철거기일내에 불법시설물을 철거하여 주시기 바람.

제3절 진정·건의서 처리현황

접수 일시	진정인		진정사항	소관 부서	처리내용
	주소	성명			
2002 9. 9	언양읍 평리 507-1	심준식외 7명	평리 괴밭마을 경로당 앞 (평리 110-118번지 일원) 용수로(350m) 설 치와 평리뒤들 (평리 439-6번지) 용수로(200m) 설치 건의	농산과	9.23 결과통지 당장 사업시행은 불가 하나 향후 예산사정이 좋아지면 재검토하겠음.
2002 9.16	언양읍 어음리 258-2	박경환외 5명	언양읍 어음리 216-3번 지 부락재산부지에 노 인들의 숙원인 노인정 (50평, 2층)을 건립하여 줄 것을 건의함.	복 지 위생과	9.27 결과통지 추후 예산 확보후 조 치할 계획임.
2002 9.23	언양읍 구수리 861	성동주	진정인은 범서~언양간 국도 확포장 시행자인 현대건설과 접한 답 약 1,400평을 경작하는 촌노로서 피진정인이 설치한 관으로 인하여 농작물등의 피해에 대 하여 진정함.	건설과	10. 1 결과통지 사업시행청인 부산지방 국도관리청으로 재이첩 처리함.
2002 9.30	언양읍 직동리 477-3	윤부기외 2명	언양읍 직동리 487-2번 지에서 713-1번지까지 중간지점 약380m거리 에 용수로 폭 50cm, 농 로 폭 3m를 설치 및 포장해 줄 것을 건의함.	농산과	10.14 결과통지 당장 사업시행은 불가 하나, 향후 예산사정이 좋아지면 재검토 하겠 음.
2002 10.11	청량면 문죽리 산227-3	배정호외 72명	단감 수출용 저온창고 (50평) 건립비 지원요청.	농산과	10.18 결과통지 예산 사정상 당장 시 행은 불가하며, 금후 저온저장고 활용상황 및 수출여건등을 고려 하여 타당성을 재검토 하겠음.

제3장 기타 의정활동

접수 일시	진정인		진정사항	소관 부서	처리내용
	주소	성명			
2002 10.15	두동면 이전리 693	최영조의 60명	군도31호선과 27호선에 서 두동면 은편, 이전, 만화리의 중심마을인 장성마을로 진입하는 도로가 매우 협소하여 2차선으로 확·포장하여 줄 것을 건의함.	건설과	10.21 결과통지 추후 예산확보후 사 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자 함.
2002 10.15	웅촌면 곡천리 282-12	박무용외 820명	러브호텔이 들어서고 있 는 마을 입구는 웅촌초 등학교, 웅촌중학교, 울 산서여자상업고등학교 가 산재해 있으며, 정화 구역 200m를 벗어났다 고 하더라도 자녀교육 과 주민들의 생활피해 가 크게 우려되므로 러 브호텔이 다시는 건축 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진정함.	건 축 허가과	10.25 결과통지 건축법등 관계법에 적 합할시 건축허가를 제 한할 방법은 없으며, 다만 조경식재나 차 폐시설 강화등 합리 적인 방안을 건축주 와 협의강구하여 주 거, 교육환경등에 피 해가 최소화 되도록 할것임.
2002 10.23	삼남면 가천리 6-9	이화용외 192명	삼남면 노인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선용을 위 하여 삼남면 신화리 1527-60번지상에 게이트 볼장을 설치해 줄 것을 요망함	총무과	10.29 결과통지 2003년도 예산편성시 반영될수 있도록 적 극 노력하겠음.
2002 10.31	언양읍 서부리 187 세명@ 1203호	안중환외 40명	언양읍 송대리 산32-1 화장산 체육시설내에 화 장실을 설치하여 이용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체 육시설내 약수터주변의 오염을 예방하고자 함	환 경 보호과	11.7 결과통지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 할 계획임

제3절 진정·건의서 처리현황

접수 일시	진정인		진정사항	소관 부서	처리내용
	주소	성명			
2002 10.29	언양읍 반천리 1023-51	반천현대 아파트 노인회	울산-언양간 24호국도를 운행하는 버스가 당 아 파트를 경유하여 운행 될 수 있도록 건의함	지 역 경제과	11.11 결과통지 버스노선(신설)조정업 무 주관부서인 울산 광역시 교통지도과 진 달함.
2002 10.29	언양읍 서부리 90-1	김종대의 1명	2002.10.10증축한 서부 1,2리 경로당이 하루빨 리 법적으로 경로당등 록이 되어 이에따른 수 혜혜택을 받을수 있기를 바람	복 지 위생과	11.11 결과통지 서부1리 마을 경로당 은 무허가건물로 건 물의 소유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므로 노인여가복 지시설 설치신고가 불 가함
2002 12.9	삼남면 신화리 1527-96	최은택외 6명	올해 폭우와 태풍루사 로 인한 하천범람이후 마을교량 3곳이 하천퇴 적물로 인해 수위가 높 아져 교량옆 축대정비 및 하천폭정비가 요구 됨	건설과	12.16 결과통지 본 하천은 지방2급하 천 작수천으로 추후 예산이 수반되면 조 치할 계획임.
2002 12.9	서생면 명산리 627-1	김석규외 93명	신고리원전건설로 인한 우리지역바다 66,853평 을 매립하는 것은 생태 계파괴 및 지역어민들 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 래할수 있으므로 절대 반대함	축수산과	12.16 결과통지 본 건에 대한 결과는 해양수산부가 최종결 정함.

제3장 기타 의정활동

접수 일시	진정인		진정사항	소관 부서	처리내용
	주소	성명			
2002 12.11	상북면 길천리 223-2	이선우외 6명	상북면 길천리 199번지 소재 (주)길천은 아연 화비철금속제조업을 하는 공장으로 야간의 용광로의 빛과 소음공해, 배출되는 아연분진 등으로 인체 및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바, 합당한 행정제재를 해줄 것을 진정함	환 경 보호과	12.17 결과통지 소관부서인 울산광역시 환경관리과에 이첩함.
2002 12.3	두서면 인보리 169	이영희	국도35호선 확·포장구간중 두동면 천전리 반구대주유소앞 도로의 선형변경 및 농로개설요구를 위한 집회(12.3.10:30) 참석건의 및 선형변경과 농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건의함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12.23 결과통지 선형변경은 불가하며 (도 계 58707-1629 (02.6.18호)와 같은 사유) 경운기등 통행이 가능한 도로이므로 농로설치는 곤란함
2002 12.18	서생면 나사리 55-3	이영두	나사이주단지 조성사업으로 나사마을 공동어장에 황토물이 흘러내려 어장의 생태계파괴와 수산생물의 오염등 어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으며, 이로인한 피해보상을 청구함	도시과	03. 1. 2 결과통지 양식장피해보상은 불가하므로 대안등을 제시토록 협의되어 마을 총회개최후 그 결과에 따라 재협의 추진계획임
2002 12.9	서생면 명산리 627-1	김석규외 8명	(주)한수원이 신고리원전건설로 인한 직원사택부지로 확보한 신암리 일원 118,000평에 대하여 사업설명회나 주민동의 절차없이 행하고 있는 감정평가 및 보상업무는 불가함	한국수 력원자 력(주)고 리원자 력본부	03. 1. 9 결과통지 원활한 사업진행이 될 수 있도록 넓은 양해와 이해 있으시길 바람.

2. 2003년도

접수 일시	진정인		진정사항	소관 부서	처리내용
	주소	성명			
2003 1. 2	두서면 인보리 169	이영희	국도 35호선 확포장 구간중 두동면 천전리 반구대 주유소앞 도로 의 선형변경 및 농로개 설 요구	부산지 방 국 토 관리청	1. 2 부산지방 국토 관리청으로 진정서 이첩
2003 1.16	온양읍 동상리 989	신현철외 29명	울산시가 서생면 도시 계획을 수립하면서 온 양읍의 자연녹지지역 (발리 산195-1번지 일 원 10여만평)을 보존녹 지지역으로 지정하려는 데 대하여 진정함.	울 산 광역시	1.28 결과통지 도식계획 수립의 결 정권자인 울산광역시 에서 처리토록 진달.
2003 1.17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 279-11	최승희	민원인은 통도가든을 영 업하고 있으며, 2개월 전부터 인근 통도온천 랜드를 개업하고부터 14 년간 영업한 지하수가 고갈되어 피해를 보고 있으며, 현재 4호공 시 추를 시작하고 있는바, 이 공사를 중단토록 건 의함.	도시과	1.28 결과통지 현재 개발하고 있는 지하수의 용도는 온천 수가 아닌 생활용수로 온천법에는 인근 지하 수 영향조사에 대하여 특별히 명시한 것은 없으나 신불온천공 보 호구역내 통도온천랜 드 대표 최영련으로부터 조속한 시일내에 온천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귀하 소유인 지하수 주변을 대상으 로 영향 유무를 조사 후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임.

제3장 기타 의정활동

접수 일시	진정인		진정사항	소관 부서	처리내용
	주소	성명			
2003 1.17	온양읍 삼광리 926	김길동의 59명	시내버스 노선변경계획 (327번 버스폐지, 325번 버스기점 변경 및 내광-강양간 버스 신설)에 따라, 주로 시장에 농산물등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광청곡 주민들에게는 수송비 부담 증가 및 불편이 크게 우려되므로 325번 327번 버스를 현행대로 운행시켜줄 것을 건의함.	울 산 광역시	1.20 울산광역시로 이침
2003 1.18	삼남면 상천리 427-598	김기호외 64명	집단주택지(삼남면 상천리 427-23번지의외 여러필지)에 동진전기(주) 공장허가가 신청된바, 이 지역은 면 농지관리 위원회에서 농지전용심의결과 부결되었음에도 군에서 일방적으로 농지전용한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재검토 되어야 함.	건 축 허가과	1.28 결과통지 공장허가시는 주민여러분의 애로사항, 주변여건, 관련법 저촉여부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겠으며, 만약 공장설립으로 인한 환경공해 등 주거생활에 피해 발생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절대로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2003 1.20	언양읍 반송리 888	엄규섭외 15명	현재 반송 상리와 구수로 급수되는 간이 상수도 물의 양이 현저히 줄어 시일이 조금더 지나면 물이 바닥이날 상태이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간이상수도를 재개 발하여 주기를 바람.	환 경 보호과	2. 3 결과통지 추후 예산이 확보되면 공사 시행할 계획임.

제3절 진정·건의서 처리현황

접수 일시	진정인		진정사항	소관 부서	처리내용
	주소	성명			
2003 2. 5	언양읍 반송리 485	박태락외 15명	사계절 과일을 시중에 출하하여 안정된 가격 을 받을 수 있도록 농 가에 과일 저장고 건립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함	농산과	2.12 결과통지 대형유통업체의 시장지 배력에 적극 대응하는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 하여 현단계에서 개별 신규건립에 따른 지원 을 지양하고 있으며 협 동조합 및 영농법인등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조직화된 공동시설 인 경우 검토할 것임.
2003 2. 7	언양읍 서부리 169-5	강위수의 주민일동	광고물을 부착할 게시 판없이 무조건 전주에 부착 못하도록 하는 것 은 현실적으로 너무 어 려움이 많음. 광고효과 가 크다고 판단되는곳 에 소형 게시판을 설치 해 줄 것을 건의함.	건 축 허가과	2.20 결과통지 60~80여개의 게시판을 일시에 증설한다는 것 은 예산상 불가능하 여 연차적으로 증설 해나갈 계획임.
2003 2.14	삼동면 하잠리 262	신기철외 37명	삼동면 하잠부락 진입 교량은 가설된지 35년 이 지난 노후 교량으로 홍수시 매우 위험하며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 을 주고 있어 보다 높 게 재가설하여 줄 것을 건의함.	건설과	2.24 결과통지 정밀점검후 구조적인 문제점이 발생하면 교 량 정밀안전진단을 실 시하여 재가설 교량 으로 판단될 시 교량 재가설이 가능할 것 으로 판단됨.

제3장 기타 의정활동

접수 일시	진정인		진정사항	소관 부서	처리내용
	주소	성명			
2003 2.20	언양읍 반송리 246	송상준외 1명	2002. 7월 준공한 노인 회관 하자보수 촉구 -시공자 : 신원종합건설 - 하자내용 · 옥상물탱크 누수 및 상수도관 보온시공 부실 · 화장실 시공하자 · 내부전기배선 설치하자	건 축 허가과	2.25 결과통지 공사시공자인 신원종합 건설 및 금우전기에 통보하여 하자보수토록 조치하였음.
2003 2.20	서생면 서생리 383-6	한선동외 18명	서생면 서생마을내 창 표당 부지를 확보하였 으나, 건립시 한쪽으로 치우쳐 균형이 맞지 않 으므로 부지를 확장하 여 건립하여 줄 것을 건의함.	문화공보 담당관실	2.26 결과통지 추가부지 매입은 현재 로서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창표당 건립과 관 광개발계획을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임.
2003 2.27	서생면 신암리 404	이종선외 4명	종합복지센터(목욕탕) 균열 및 누수현상으로 보수가 시급한 실정인 바, 어촌계 자체재정으 로는 보수가 어려우므 로 보수공사를 해줄 것 을 요청함.	도시과	3. 5 결과통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에 관한법률시행령 제 22조 규정에 의거 해 수탕 보수는 공공시 설사업에 제외됨. 경 영수익사업으로 수익 금은 어촌계 적립후 재분배 하고 있어 지 원이 불가함.
2003 2.28	언양읍 직동리 326-1	박만도외 6명	언양읍 직동리 신흥마 을내 추성못 상류에 허 가한 경정비 주차장허 가는 폐수 및 오염물질 발생등으로 인한 농토 황폐화를 전혀 고려하 지 않은 것으로 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건의함.	건 축 허가과	3.11 결과통지 건축법상 적법하므로 허가취소는 불가하며, 건축주와 협의하여 추 성못 하부 농경지에 피해가 없도록 방지사 설을 완벽히 한후 사 업을 시행토록 조치하 겠음.

제3절 진정·건의서 처리현황

접수 일시	진정인		진정사항	소관 부서	처리내용
	주소	성명			
2003 3. 8	언양읍 반송리 888	엄규섭외 9명	반송리 산126번지에 신축하려는 사찰은 그 위치가 동네 한가운데이며 납골당을 설치하고 각종 위안제를 올린다는 소문이 있어 절대 불가함.	건축 허가과	3.14 결과통지 3.11일 건축주로부터 취하원이 제출되어 취하원이 수리됨.
2003 3.12	언양읍 평리 198	간근조외 105명	언양읍 평리 황갑1,2지 일원 농경지에 용배수가 없어 농사를 짓는데 불편을 크게 겪고 있는바, 평리 120-4~ 176-9 구간과 평리 793-1 ~ 807-6구간에 농수로 설치를 건의함.	농산과	3.25 결과통지 현재 예산확보가 어려운 사항으로 향후 예산편성시 사업우선순위에 의거 편성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임.
2003 3.12	언양읍 평리 507-1	심준석외 7명	평리괴말 마을과 고중마을의 진입로가 없어 마을을 서로 왕래하는데 3km 이상되는 거리를 돌아가는 등 불편함이 너무 많아 진입로를 확포장하여 주실 것을 건의함.	농산과	3.25 결과통지 현재 예산확보가 어려운 사항으로 향후 예산편성시 사업우선순위에 의거 편성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임.
2003 4. 3	삼남면 신화리 1527-96	최은택외 3명	작수천 치수사업 제방공사 구간중 홍수시 유실이 우려되는 신화리 555-1번지 나머지 부분에서 544-2번지쪽에도 제방을 연장하여 영농에 도움이 되도록 해줄 것을 건의.	건설과	4.16 결과통지 추후 예산 및 수리검토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제3장 기타 의정활동

접수 일시	진정인		진정사항	소관 부서	처리내용
	주소	성명			
2003 4.14	삼남면 교동지구 토지구획 정리조합 조합원	오장환외 549명	농산과에서 삼남면 교동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의 농지전용부담금 및 대체농지조성비 미납에 따른 채권확보를 위하여 미기성 체비지 전체를 가압류 처리하여 조합측에서 공사기성금을 시공업체에게 지급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가압류된 체비지의 부분해제 요청	농산과	4.22 결과통지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완납 또는 체비지 매각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우선납부계획을 제출할 경우 귀조합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003 4.14	서생면 화산리 686-2	이상배외 주민일동	기존의 고리원전 첩탑과 송전선이 온곡마을을 관통해 각종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신고리원전 건설계획을 세우면서 765kW급 최대형 첩탑과 송전선이 또다시 온곡2구마을 관통계획을 세우고 있음. 송전선로 계획 철회 건의	지역 경제과	4.22 결과통지 한국전력공사에 온곡2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협조요청함.
2003 4.23	두서면 인보리 169	이영희	국도 35호선 굴곡도로 선형변경 관련하여 군수님의 활동 성과 및 안동 권씨 문중에 굴곡도로 직선화와 관련한 협의사항 성과 등을 알고자함.	건설과	4.30 결과통지 주민들의 민원사항 및 우리군의 입장을 권씨 문중에 도로 선형변경 당위성을 재차 통보하였음. 협의 중에 있음.

제3절 진정·건의서 처리현황

접수 일시	진정인		진정사항	소관 부서	처리내용
	주소	성명			
2003 4.28	온양읍 운화리 80-5	박근환외 1명	남창천 제방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보상금 보상책정에 대하여 당초 20m의 도시계획도로가 8m로 축소변경되고 12m는 공공용지로 최종변경됨에 따라 8m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는 m ² 당 235,000원, 공공용지 편입부지는 55,000원으로 결정된 것은 도시계획시설 행위 이전을 감안하여 재 책정되어야 함.	건설과	5. 2 결과통지 보상책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 보상 책정이 불가하며 현재 미시행된 귀하의 소유 토지인 동소지번에 대하여 지적 분할된 지번을 합병조치하여 드릴 것을 통보함.
2003 5. 2	삼남면 교동리 1522-5	신광일의 입주민	작수천 하천제방 옹벽 공사가 완공되었으나 옹벽상부면과 지표면의 높이 차이로 우기시 토사 유출 및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어 하천 제방공사 옹벽공사 보완요구	건설과	5.15 결과통지 하천부지에는 도시의 미관을 위하여 산림과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화단을 조성할 예정이며, 태봉파크맨션에는 하천부지와 진입도로 경계부분에 휀스설치토록 통보
2003 5. 3	온양읍 남창리 140-3	임선주외 2명	온양읍 남창리 140-3번지의 주택이 도시계획에 의거 철거됨에 따라 실질적인 거주를 주장하고 있는 임선주가 이주보상금 지급에서 제외된것에 대한 호소	건설과	5.10 결과통지 임선주외 2인과 자녀 신성용외 1인은 간접 보상대상 불가(주민등록 직권말소)

제3장 기타 의정활동

접수 일시	진정인		진정사항	소관 부서	처리내용
	주소	성명			
2003 6.18	언양읍 구수리 373	김용태외 32명	언양읍 구수리 대동마을 진입로 입구부터 신설도로 박스지점까지 천소마을에서 배출되는 생활폐수로 악취발생 및 많은차량 통행으로 주민불편 가중	건설과	7. 2 결과통지 언양하수종말처리장 준공후 공공하수관로 매설공사가 완료되면 악취등 해결될 것이며, 인도설치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추후 예산이 확보될 시에 인도 설치
2003. 6.18	언양읍 반천리 322-3	김득근외 99명	언양읍 반천리 천소마을에서 배출되는 생활폐수가 하수구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출되어 심한 악취발생과 미관 저해	건설과	6.24 결과통지 언양하수종말처리장 준공후 공공하수관로 매설공사가 완료되면 악취등 민원이 해결될 것임.
2003 6.30	상북면 향산리 432-1	강영무외 향산리 주민일동	상북면 향산리 하천수해 피해 예상구역에 대한 수해방지 대책 강구	건설과	7. 8 결과통지 예산확보후 정비공사 시행
2003 6.30	온양읍 대안리 현대@ 101-904	감유진외 3명	대안리 현대아파트 진입도로가 울산시 도시계획에 의거 아파트 단지를 관통하는 20m 도로로 계획되어 있어 도시계획 변경 요구	울 산 광역시	7. 8 결과통지 도시계획입안 및 결정권한은 광역시장으로 7. 2자 진달조치
2003 7. 4	청량면 덕하리 640	서원석외 40명	청량면 덕하리 산51번지 대천산일대에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산책로와 산37-3번지상에 각종 체육시설 및 약수터 설치 건의	산림과	7.10 결과통지 본 장소는 인근 지역주민의 접근성, 이용성 및 사후관리등 종합적 검토 결과 현재로서는 주민이용도가 낮을것으로 판단되며 본 시설을 위해서는 많은 소요예산을 확보해야 함에 따라 향후 제반여건 충족시 검토반영코자 함.

제3절 진정·건의서 처리현황

접수 일시	진정인		진정사항	소관 부서	처리내용
	주소	성명			
2003 7.18	온산읍 삼평리 1341	엄주식의외 38명	온산읍 삼평리 상회마을 제방밖의 1346-4번지 일원(답) 약2만평에 대하여 폭우시 하천의 범람으로 농지유실 및 침수 농경지 매몰등 수해 상습지역으로 하천부지에 준하여 토지보상요구	건설과 (울산광역시)	7.30 결과통지 지방2급하천 편입토지는 사유재산권 인정하면서 하천관리를 위한 일부 행위제한만을 하고 있어 보상에서 제외됨. 그러나 광역시에서 지방2급하천 편입토지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건의 및 법률개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2003 7.21	언양읍 직동리 405	진옥호외 3명	국도35호(언양-경주간)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신호등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설치를 위한 교차로를 주민편익을 위해 신호마을 입구에 설치 건의	부산지방 국토 관리청	7.23 결과통지 추후 검토결과가 나오는대로 민원인에게 회신통보 하겠다 함.
2003 7.30	언양읍 서부리 187 서명 @ 1203	안중환	상북면 향산리에서 언양읍 송대리 화장산에 이르는 도로의 노퍽이 좁아서 차량 교행이 불가하므로 최소한의 차량 교행이 될 수 있도록 확장건의 화장산 약수터에서 체육시설까지(약90m) 포장되어있지 않아 토사유출등으로 낙상위험이 있으므로 포장건의	농산과 산림과	8. 8 결과통지 편입토지 보상등 확장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으로 해당 읍·면 자체사업 우선대상여부를 검토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공원내구역인 화장산 약수터에서 체육시설까지 임도포장건은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제3장 기타 의정활동

접수 일시	진정인		진정사항	소관 부서	처리내용
	주소	성명			
2003 8.22	서생면 나사리	김호엽외 10명	배과수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공유재산) 매각처분	회계과	9. 2 결과통지 공유재산중 잡종재산은 공공용도의 사용과 확 보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으므로 매각은 불가 함. 향후 매각대상이 된 다고 하더라도 공개입 찰 대상으로 개인에게 수의매각은 불가함.
2003 8.22	웅촌면 대북리 379	송도열외 179명	대북리 산186번지일원 석산개발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요구	산림과	9. 2 결과통지 향후 진정내용에 대 하여 동번지내 허가 신청사항이 없으나, 신청시 진정 내용을 참고하여 처리하겠음.
2003 10. 2	언양읍 구수리	김정호	토지구획정리지구 제척 된부분(향교로 인한 제 척구간)에 대하여 구획 정리사업후 도로 개설 로 사유재산권 침해 해 소 요구	도시과	10.10 결과통지 해당조합에 대한 진정 인의 요구사항 이첩. 사유재산에 피해가 없 도록 절충

2. 2004년도

접수 일시	진정인		진정사항	소관 부서	처리내용
	주소	성명			
2004 1. 2	웅촌면 곡천리 780	이상목외 70명	웅촌면에 설치된 노인 게이트볼장에 화장실, 수도, 전기시설이 없어 불편이 많음.	총무과	1.12 결과통지 예산 사정상 당장 시 행은 불가하며, 향후 체육시설물 확장 사 업시 적극 검토하겠음.
2004 1. 8	상북면 이천리 724-1	이상달외 주민일동	상북면 이천리 724-1번 지 지방도로 보상에 대 하여 주변지역과 보상 가격 차이가 많이 나 며, 보상금이 적게 평 가되었음.	건설과	1.13 결과통지 본 도로는 국가지원 지방도로 개설공사 구간으로 사업시행청 인 울산광역시 종합 건설본부로 이첩 조 치함
2004 1. 9	웅촌면 석천리 71	박일송외 주민일동	석천리 일부 주민들이 주택으로 진입하는데 2m 폭의 좁은 농로만 있어 각종 피해사고가 발생 하므로, 석천리 구거 139번지에 축대를 쌓아 진입도로를 3m 이상의 폭으로 확장하여 포장 하여 주시기를 바람.	건설과	1.31 결과통지 추후 예산편성시 적극 검토하여 사업시행할 계획임.
2004 1.30	언양읍 동부리 369-6	홍영선외 56명	1990년 해체된 언양읍 성 남쪽 지역이 재지정 된다는데, 건축허가 낼 수 있도록 하고 해체된 구역 재지정되지 않거 를 바람.	문화공보 담당관실	2.12 결과통지 2. 5일 문화재청 회신 : 지역주민 사유재산 권 보장등에 대해 신 중한 검토 예정

제3장 기타 의정활동

접수 일시	진정인		진정사항	소관 부서	처리내용
	주소	성명			
2004 2.20	언양읍 서부리 90-1	김종태외 84명	마을전체가 소방도로 계획에 묶여있어 사유 재산 권리가 없고, 주 택의 증·개축 불가능, 소방차, 구급차 진입 불가능, 이사가 늘고, 주택이 노후화 불량한 주택으로 언양읍 이미 지가 손상되므로, 전체 개발 혹은 가옥 몇채를 수용하여 도로개설하도 록 진정	건설과	2.27 결과통지 광역시에서 시행계획 인 대로 1-24 (언양파 출소-남천교)선 확포 장공사 완료후 사전 교통량 추이, 현지역 건 및 군채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
2004 2.20	청량면 울 리 189-1	정상조의 주민일동	2003년초부터 시작된 터널공사로 정신적 고 통과 물질적 피해를 입 었고, 그동안 수차례 항의하였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음. 별도의 대책을 세워주기를 건 의함.	한국 도로공사 부산울산 건 설 사업소	3.23 결과통지 공사시행처인 시공회사 삼정물산과 주민들간 공동조사후 원만한 처 리를 위해 협의중. 공사 현장에 각종 부대시설 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음.
2004 2.20	삼동면 출강리 208	신재경외 40명	다른마을 김씨 문중에 서 문중납골당 건립신 청을 신고하여 현재 공 사가 진행중임. 군청 허가서류 열람결과 이 장이 답변한 유해 100 기가 아니고 허가기수 는 300기로 되어 있고, 주민여론 수렴과정 생 략된채 삼동면장(현 두 동면장) 의견서만 첨부 된 채 처리가 되어 있 음. 이 행위의 즉각 중 단 내지는 취소를 바랍.	북 지 위생과	3.10 결과통지 업무처리 소홀에 대 하여는 해당 공무원 주의 조치. 유해 100기는 잘못 해석 답변한 것임. 진입로 개설 및 신고 면적을 초과하여 불 법으로 형질변경 확 인되어 해당 부서에 서 사법처리중이며, 상수도 관련 오염피 해는 없는 것으로 생 각됨.

제3절 진정·건의서 처리현황

접수 일시	진정인		진정사항	소관 부서	처리내용
	주소	성명			
2004 2.24	청량면 덕하리 540	서원석외 39명	덕정마을 안길과 농로 및 소방도로로써의 진입로가 연결되지 않아 우회해서 다니거나, 비포장 소로를 따라 다니고 있는바, 소로길을 확장하여 약70~80m의 진입로 개설 요망.	건설과	3. 3 결과통지 본 도로 개설에 대하여는 사전 교통량 추이, 주민수해도 등 현 지역건 및 군 재정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2004 3. 4	부산시 부산진 구 당감2동 93-1	송성부	진정인 송성부는 이촌길과 공동으로 하천점·사용 허가를 받고 이촌길을 대표자로 선정하는 증명서류들을 제출하였는바 이촌길과 양자 김순식에게는 허가, 송성부는 불허가 된 사유 김순식에 점용허가한 행정이 합법한지 심사	건설과	3.11 결과통지 대표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이촌길 단독으로 하천 점·사용 연장허가 되어있어 진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토지의 허가는 적법하게 되었으며, 정보공개 신청또한 적법한 양식으로 신청되었음.
2004 3. 9	웅촌면 대대리 941	이복우외 31명	웅촌면 대대리 902번지(베델종합건설시행) 다세대 주택공사시 마을대표들이 반대했으나 현재 건립되어 조망권이 침해를 당하고 있음. 또한 900-1번지에 4층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있음. 이 경우 마을 안길이 더욱 혼잡해질 것이며, 지하수 개발시 동네 전체 우물의 고갈 우려가 있음.	건축과	3.17 결과통지 동번지에 건축허가 신청서 접수될 시 건의 내용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제3장 기타 의정활동

접수 일시	진정인		진정사항	소관 부서	처리내용
	주소	성명			
2004 5.29	온산읍 덕신리 281-1	김윤식의 19명	울산 남부권의 균형적 개발과 인구 수용을 위 해 택지개발 예정지를 해제한바 있고, 일반주거 지역으로 결정고시. 현재 울주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울산시 청에 지구지정 요청을 하여 심사중인 상태로, 적법절차로 추진중이나 몇몇 곳에서 잡음이 일 고 있음. 빠른 시일내에 개발되도록 신속한 처리 를 탄원함.	도시과	6. 3 결과통지 법적 절차를 거친후 울산광역시장에게 도 시개발구역 지정을 요 청한 상태임. 울산광 역도시계획위원회 심 의 등을 거쳐 그 결 과에 따라 처리됨.
2004 6. 7	삼남면 교동리 315	정성근외 103명	상평마을에 개설된 도 로가 없어 많은 불편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 교동리 1499-138번지에 서 삼남농협 평리지점 까지만이라도 도로를 개설하여 주시기를 건 의함.	건설과	6.15 결과통지 이후 교통량 추이, 주민 수해도 등 현지여건 및 우리군 재정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시행계 획 수립예정
2004 6. 9	울산시 동 구 서부동 106-16	장혁훈	치슬령 등산로에 안내 문 부착 요망.	산림과	6.17 결과통지 치슬령 등산로 현장 답사로 안내표지판 및 방향표지판을 빠른 시 일내에 설치토록 하겠 음.
2004 6.18	두동면 천전리 629	이춘우외 66명	원조스님(울산.남구.선 암동 34-1)이 사찰 건 립후 형질변경 또는 납 골당 사용을 하지 않는 다는 각서 제출후 약속 을 지키지 않음. 불법 납골당이 들어올 수 없 도록 건의함.	산림과	6.29 결과통지 현재까지 납골당 설 치신고는 되지 않음. 납골당 설치신고서는 사전 산림형질변경허 가 부서에 용도변경 승인을 득한 후 신고 가능함.

제4절 주요의정활동사항

1. 경부고속철도울산통과노선사수에대한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결의문 (제54회 임시회)

- 발의일자 : 2003. 3. 27
- 발 의 자 : 서우규의원외 11명
- 의결일시 : 2003. 3. 29

【결의문 내용】

정부는 지난 3월 7일 현재 진행중인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을 일체 중단하고 노선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데 이어 대구~울산~부산 구간을 대구~부산 직선구간으로 변경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어 경부 고속철도 건설을 염원해 온 18만 울주군민은 경악과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경부고속철도는 건국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으로서 2008년 준공을 목표로 '92년부터 추진되어 오는 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 계획이 재검토되는 진통을 거듭해 왔으나 10년간의 논의와 검토를 거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낸 국책사업을 참여정부는 일부 시민단체의 요구와 특정지역의 이익을 위해 아무렇지도 않게 사업을 중단시키고 노선변경을 검토하도록 한 것은 국력을 소모시키고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리 울산은 40년간 국가발전을 주도해오며 많은 희생을 감수해 왔는데도 또 다시 국가 동맥을 결정짓는 고속철도사업에서 소외시킨다면 울산시민 모두는 더 이상 분노를 참지 않을 것이다.

제3장 기타 의정활동

또한 이미 2단계 사업은 70%이상 보상이 완료되었는데도 노선변경을 검토하는 것은 귀중한 세금을 낭비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 의원일동은 경부 고속철도 노선사수를 위하여 18만 울주군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경부고속철도 노선변경검토를 일체 중단하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우리 의원일동은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경부고속철도 노선사수를 위한 범시민 비상대책기구 구성을 결의한다.

하나, 참여정부는 노선변경을 즉시 중단하지 않을 경우 18만 울주군민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노선변경 저지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03년 3월 29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일동

제5절 기 타

□ 탈북자에 대한 견해

- 일 시 : 2003.11.25
- 장 소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울주군협의회 통일문제 토론회장
- 발 언 자 : 이 몽 원 의원

【발언내용】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몽원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탈북자에 대한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 드리게 됨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한 정책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 바라면서 탈북자에 대한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북자들의 국내 입국추세는 1993년까지는 연평균 10여명 내외였으나,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도를 기점으로 연간 50여명 정도로 증가하다 1999년에는 148명, 2000년 312명, 2001년 583명, 2002년 1141명, 2003년 2000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탈북의 환경요인으로 볼 때 1994년 김일성의 사망이후 급속한 경제의 쇠락과 사회 질서의 이완, 1995년부터 3년 동안 이어진 북한 전역의 수해와 흉작으로 인한 식량부족 및 혼란으로 중국과 접경하고 있는 압록강과 두만강변의 국경지대를 통해 식량을 구하기 위한 일시적 불법 월경행위와 사회적 절망감 및 반체제 범법행위로 인한 개인의 도피 등 각양의 동기로 탈북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탈북인들의 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접경지방보다 함경도 동해지역의 주민이 더 많습니다. 이는 공업지대인 청진, 함흥, 김책 등에 산업자원과 에너지 부족으로 공장의 약80%정도가 가동이 중단됨으로 인해 산업 노동자들은 급여와 양식의 중단이 이어지는 등 가장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양식을 구하기 위한 행렬이 동부에서 중국의 국경지대인 서부지역으로 향하게 되었고 곡창지대인 황해도와 평안남도로도 이어졌습니다.

가족단위로 월경하는 경우 모자녀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많고 중국에서의 안전한 체류를 위해서 부모와 생이별을 하여 다시 헤어지게 되므로 결국 분해된 이산가족이 되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하며, 탈북의 성별 성향의 경우 근년에 와서는 오히려 여자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남자의 경우 북한에서는 18세 이후는 군 입대로 청장년층이 군 집단으로 흡수되므로 상대적으로 산업에 종사하는 사회 인구의 성별 구성에 있어 여성인구 층이 많아지게 되었고, 열악한 가정의 경제 형편으로 미혼여성 증가와 산업 시설의 붕괴로 인한 유희 여성노동 인력의 증가로 인해 탈북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탈북인의 생활상을 보면 탈북에 성공한 이들은 중국 공안원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조선족 행세를 해야 되므로 조선족들이 몰려 사는 상업도시나 농촌으로 들어가 조선족이 경영하는 식당, 공장과 친지를 가장하여 농가의 품꾼 등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주위로부터 의심과 주목을 받을 경우 다른 지역으로 피신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탈북인들의 인권 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침해는 탈북 여성들이 인신매매를 통해 유희가로 팔려져 접대부나 윤락녀로 전락되기도 하고, 향락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 중 일부는 정상적인 생활환경을 제외해도 이미 타락된 삶에 익숙해져 이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

다고 합니다. 기혼녀로서 탈북한 여성들은 생존을 위해서 중국인이거나 조선족 농촌인과 결혼을 한 이후에 중국 구적을 취득한 후에도 현지 적응을 하지 못해 타 지역으로 도주하여 자활하거나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합니다. 탈북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중국주재 한국대사관으로 망명요청을 하고 있으나 당사자들의 인적사항을 심사하여 선별 처리하고 있다하며, 여기에 요구되는 인물일지라도 비공식적인 제3국을 통한 입국처리로 행해지므로 공식 채널을 통한 한국으로의 귀국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현 정부는 대북정책으로서 과거 정부보다 유연성 있게 햇볕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나 수시로 불거져 나오고 있는 대남 무력도발 행위는 민간차원에서도 그에 대한 찬반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북정책은 대립과 일관성이 결여된 무원칙한 정책으로 일관해오므로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원인제공은 북측에 있어 왔습니다.

지금의 햇볕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남 정책상에 근본적인 변화는 별무한 상태이고 신뢰성이 없는 북한을 계속 포용하며 인내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대응할 경우 남북간의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입장에서의 공개적인 대북인권 정책은 북한을 자극하므로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간차원의 인권단체와 종교기관에서 국제 인권기관과 공조체제를 이루어 북한내의 인권문제와 제삼국의 탈북인 인권문제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정보 제공과 환경지원을 하여 국제 인권단체와 U.N을 통해 공론화시킴과 국제 여론을 이용해 북한 정부가 인권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며 문제의식을 점진적으로 갖도록 유인하는 초보작업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탈북자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의 구축과 탈북자들에 대한 남민지

위 부여와 함께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난민 캠프의 건설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탈북동포를 전원 한국에 수용할 때 드는 비용과 여러 방법 등 사회적인 문제점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 탈북동포들을 수용하는 방법보다 제3국엿 이들을 수요해서 현지 정착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시적이고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인권문제에 눈을 뜨도록 계도를 하는 것이 북한이 인권 개선을 하게 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민간단체나 정부가 중국내의 탈북인들에 대해 적극적인 동포애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중국 정부에 간접적으로나마 표출할 때에 그들도 정부차원에서 탈북인들에 대해 북한과의 쌍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인권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식을 일깨워 주리라 생각하고, 한·중 간의 외교적 비중을 경제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까지 비중을 둘 수 있도록 새로운 외교의 틀을 만들어 정부는 지혜로운 접근을 통해 인식의 변화를 주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4장 부 록

의 원 논 단

- 김 용 원 의장
- 이 몽 원 의원
- 변 양 섭 의원
- 김 석 암 의원
- 김 진 근 의원

제3대 의원선거결과



의장 김 용 원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지방분권에 대한 열기는 참여정부가 국정 의 핵심 과제로 선택함으로써 뜨거워지더니 이제 서서히 그 열매를 맺는 듯하다. 우리군도 자치경찰의 시범 실시 신청 등 지방분권에서도 앞장서 나아가고 있다. 그간 중앙정치권과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통제 지시방식에서 벗어나 자율과 책임, 참여 그리고 창조를 강조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면 재정과 조직과 관련한 실질적 권한이 모두 지방에 이양되어야 하며 중앙의 권한을 최대한 축소, 그 지역에 맞는 정책을 가장 효율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로 우수한 인재들이 지방 발전에 적극 참여하고 그것으로 더욱 지방이 발전하게 되는 바탕이 될 것이다.

지방분권을 정치적 논리나 정권적 차원에서 추진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지방분권의 최대 수혜자는 주민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 주체도 주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방분권은 풀뿌리민주주의를 실시한 이후 최대의 새로운 정치 환경이 될 것이며,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의회에 있어서는 위기이자 기회가 될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의원에게는 더 많은 역할과 활동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 역사적 사명에 뒤처진다면 의회의 역할과 위상은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지방의회는 내부변화와 개혁을 통해 이 새로운 환경에 적극적으로 고도 능동적인 대처를 하여야 할 것이다.

분권시대는 지방의회를 새로운 시험대에 올려놓을 지도 모른다. 우리는 분권시대를 지방의회 존재이유를 보다 분명히 하고 확실하게 다지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의회가 지방분권의 중심에 우뚝 서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군과 같은 기초 지방의회는 군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 군민의 생각과 뜻을 가장 잘 읽고 같이

호흡할 수 있다. 주민들의 생각을 정책에 반영하고 정책수립과정에 군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점이 기초의회가 지방분권의 중심에 우뚝 서야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집행부가 제출한 의안을 심의 의결하고 업무보고를 받는 등 소극적인 의정활동에서 벗어나 보다 공격적인 의정활동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의회내부의 결속, 주민과의 대화 확대, 적극적인 정책개발, 소신 있는 의사결정, 철저한 현장 확인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안의 제시이다. 이것은 의정활동의 효율성 강화와 지방의원의 전문성제고 등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의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 우리 지방의회는 발전할 것이고 지방분권 시대의 중심축에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의원 이 몽 원

모순을 인정하자

사람들은 순간순간 갈등과 선택 속에서 살아가기 마련이다.

때로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 스스로 정한 계획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라는 생각으로 괴로워하기도 한다. 하지만 괴로워하는 것 보다 “인간이란 본래 모순된 존재야!” 라고 생각한다면

인생이 좀 더 쉽지 않을까?

나는 기분 좋게 살기위해서라도 스스로 모순된 모습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수시로 느끼는 갈등이란 이런 것들이다.

“술을 끊어야지” 굳게 결심한 날 친구들과 잔뜩 취해 집으로 돌아갈 때.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외식을 하던 중, 옆자리에 앉은 예쁜 아가씨에게 시선이 쏠릴 때.

“오늘은 밤을 새워서라도 일을 마무리 지어야지” 라고 마음먹고서 조금 지나 “무리하지 말아야지” 하고 잠자리에 들 때.

자신 안의 모순으로 고민했던 철학자 헤겔은 인생은 늘 두가지 개념이 공존한다고 결론지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인생이 길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곤 한다.

물리적인 시간으로 계산하면 인생이 길면 개인의 인생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흔히 “남을 위해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 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인생의 대부분을 자신을 위해 투자한다. 즉, 삶은 모순 그 자체인 것이다.

모순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모순도 얼마든지 인생에서 갈등 없이 소화될 수 있다.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는 느낌이 들더라도 고민할 필요는 없다.

그것이 인생을 즐겁게 사는 지름길이라 생각한다.



의원 변 양 섭

캐나다의 환경보호

캐나다는 자연자원이 우수한 만큼이나 환경과 자연 보호에 무한한 관심과 투자를 하고 있었다.

캐나다는 원주민이던 인디언의 말로 '작은마을'이라는 뜻 이다고 하여지만 세계 제2의 면적을 지닌 광대한 국가였다. 비행기 창 밖으로 내다보이는 농지는 끝이 없어 보였다. 프레리의 초지 지역에는 자신의 땅을 관리하기 위한 경비행기를 운행하기 위한 농부들의 비행장이 있었다. 광활한 땅에 마음껏 뛰어 노는 알버터의 소는 세계제일의 '트리플A'의 품질을 자랑하였다. 인근 미국의 아리조나의 목장지대에서 캐나다의 건초(Hay)를 가져다가 방목을 하였지만 트리플A는 나오지 않았다. 소의 품질을 좌우한 것은 캐나다의 대자연이었던 것이다. 캐나다의 어딜 가도 느낄 수 있는 것이 한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연보호와 환경에 대한 무한한 관심이었다. 1년 중 캐나다 예산의 1/3을 환경에 투자한다고 하니 엄청난 관심이 아닐 수가 없었다.

원래 캐나다는 자원의 엄청난 혜택으로 환경오염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았지만 오늘날의 캐나다에서도 커다란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북극 지역이 심각하다. 보퍼트해와 메켄지 강 삼각주의 석유개발은 깨지기 쉬운 북부의 환경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1만 4,000mw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된 퀘벡주 북부의 제임스 만 수력발전계획은 하천방류로를 이동시켰을 뿐만 아니라 순록의 이동 경로까지 변경시켜 환경을 파괴하였다. 그리하여 그 지역에서 생활해 오던 크리족 인디언들의 생활 양식도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게 되었다.

또한 이 나라 남부 지방의 자연도 위협에 처해 있다. 온타리오 주의 서드베리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굴뚝을 자랑하는 니켈 제련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내뿜는

엄청난 양의 배기가스가 캐나다의 숲을 오염시키고 있다. 캐나다의 공장들과 국경선 남쪽의 공업 지대에서 발생하는 산성비는 이제 중대한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또한 수많은 산림 지대도 침식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무를 베어 버린 뒤에 다시 나무를 충분히 심지 않은 데에 그 원인이 있다.

다행히도 이제 환경 문제에 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1970년 환경보호론자들이 밴쿠버에 모여 창립한 환경 보존 단체인 그린피스(녹색 평화)는 위험에 처한 환경에 주의를 환기시켜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었다.

캐나다가 오늘날 같은 환경 강국이 된 것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나는 그 원인을 철저한 재활용에 두고 싶다. 우리나라의 공병 반환금 제도와 같은 반환 제도가 일상화되어 있으며, 국민의식도 새로운 것보다는 있는 것을 더 잘 활용하는 데에 더 많은 관심을 두는 듯했다. 밴프 국립공원의 한 콘도에는 어린이들의 그림을 조그만 엽서 형식으로 화장실과 주방에 비치해 놓았는데 그것을 읽어보니 “Our lives depend on our recycling”과 “Remember the 3 symbols!”이었다. 3심볼즈는 Reuse, Recycle 그리고 Reduce였다. 한편으로 놀랍기까지 하였다. 밴프국립공원의 자연발효식 화장실이나 곰이 휴지통을 뒤킨 못하게 한 장치 그리고 낚시 라이선서로 한번에 5마리로 제한하는 제도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국민들은 전혀 어색해하지 않았다. 또한 동물에 대한 보호도 특별하였는데 국립공원에서는 산양이나 곰 그리고 엘크 등이 마음 놓고 나돌아 다닐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세 가지 도구였다. 첫째가 울타리였다. 끝없는 도로에 끝없는 울타리가 이루어져 있었다. 또한 ‘애니멀 오버패스’를 구석구석 설치하였다. 이 오버패스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시간대 별로 종류별로 야생동물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통계화 시키고 있었다. 또 ‘텍사스 케이트’란 쇠 원통을 길에 박아 짐승이 길을 지나면 빠져 지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정말 세심하게 자연과 동물을 보호하고 있었다. 또한 밴쿠버나 토론토같은 대도시

에는 전선이 달린 버스인 ‘트롤리 버스’가 다니고 있었다. 원래 구시대의 산물로 시에서 철거를 하려하였으나 환경단체와 시민이 반대하여 지금도 주 교통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일반버스는 배기가스로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번 견학을 통해서 캐나다가 훌륭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엄청난 관광객을 유치하는 원동력은 깨끗한 자연을 후손에게 물려주려는 국민의 따뜻한 마음씨라는 것을 알았다.

우리군도 현재의 훌륭한 자연을 개발하여 관광울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그 바탕에 환경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환경과 관광은 결코 이원화된 개념이 아니다. 관광에 대한 투자에 앞서 환경을 깨끗이 할 수 있는 투자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의원 김 석 암

고구려 유적지 탐방 및 통일기행

민주평통 사무처에서 새로이 기획한 고구려 유적지 통일 기행에 참여하여 엿새 동안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서술한다.

심양(瀋陽)에서 단동(丹東)→환인(桓仁)→집안(集安)→이도백하(二道白河)→백두산(長白山)→훈춘(琿春)→도문(圖們)→화룡(和龍)→용정(龍井)→연길(延吉)로 버스와 열차로 이동하면서 高句麗와 발해유적, 압록강과 두만강의 접경지대 항일 독립운동 유적의 현장을 생생히 보았다.

첫 날 심양의 Taoxian공항에 내려서 현지 가이드 金紅海의 안내로 곧장 고궁(故宮)과 북릉(北陵)으로 갔다. 故宮과 北陵은 올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되면서 주변이 아주 깨끗해 졌다. 청소가 잘되어 있고, 그동안 잡상인도 없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이곳에서 故宮이나 北陵을 보기보다는 우리나라와 직접 관계있는 병자호란(丙子胡亂)후 소현세자(昭顯世子)와 봉림대군(鳳林大君)이 8년간 인질로 머물렀던 곳이나 청나라에 항복을 반대하던 三學士(洪翼漢, 吳達濟, 尹集)가 피살당한 곳 등 조선(朝鮮)과 직접 관계가 있는 역사현장(歷史現場)을 탐방(探訪)하였으면 하는 점이였다.

그 날 저녁에 북측에서 경영하는 식당인 평양향산관(平壤香山館)에서 북측 미희들의 서비스와 노래를 들으면서 의미 있는 식사를 하였다. 그들은 정말 예쁘고 악기도 잘 다루고 노래도 잘 하였다. 그 중의 한 여성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니 기꺼이 받으면서 자기의 한글과 한자의 이름을 적은 명함을 주면서 내 명함을 원하기에 뜨거운 마음으로 명함을 건네주었다.

이튿날 전용 버스 편으로 압록강변의 단동시(丹東市)로 갔다. 유람선을 타고 북측의 배가 대인 곳으로 접근하여 갔다. 우리 일행들이 손을 흔드니 저편에서도 손을 흔들어 화답했다. 강하나 사이로 비교적 자유로운 중국의 도시는 빌딩이 치솟아 보이는 도시로 변모해 가는데 북측 땅은 건물이나 배 위 군인들의 모습은 너무나 애처로와 보였다. 순간 이러한 생생한 비교체험의 현장을 우리의 2세들이 꼭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시간이 지나면 북측이 변하지 않을 수 없겠구나 하는 상념(想念)에 젖었다. 한참 올라 가던 배가 머리를 돌려서 되돌아 왔다.

배에 내려서 단교(斷橋)에 올라갔다. 일제가 만든 다리인데 폭격에 끊어지고 반쯤 남아있는 다리였다. 옆에 중국과 북측이 서로 내왕하는 무역다리가 있었다. 朝中友好 다리라 불리우며 차들이 서로 오가고 있었다. 통일이 기다려졌다.

점심 식사 후에 萬里長城의 일부분인 호산장성(虎山長城)을 올라보고 중조변경(中朝邊境) 지역인 一步跨 마을로 갔다. 중국과 북측의 접경인데 작은 개울 너머가 북측이었다. 개울을 건너면 옥수수 밭이고 중국 쪽에선 110미터 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했고 겨울에 얼음이 얼면 북측 군인들이 개울 가운데까지 와서 남쪽 사람들이 건네주는 담배, 과자 등도 받아간다고 했다. 철조망도 보이지 않고 옥수수 밭만 끝없이 펼쳐진 북녘땅 이었다.

다시 전용버스를 타고 高句麗 유적을 보기 위해 桓仁으로 이동했다. 桓仁으로 가는 길은 군데군데 비포장도로가 있었다. 공사현장의 좁은 길에서 석탄을 실은 트럭과 교행할 때는 아찔했다. 홍강(渾江) 지류에 이르렀을 때에는 가교가 내려 앉을까봐 모두 차에서 내려 걸어가야만 했다. 5시간 만에 桓仁의 正方호텔에 도착했다. 현지 가이드 安承德이 반갑게 맞이주었다.

사흘째 아침에 꼭 외보고 싶었던 高句麗의 첫 도읍인 五女山城(卒本城으로도 불림)을 향해 出發했다. 일행들은 18인승 버스 2대에 나눠 타고 정방호텔을 출발하니 바로 환인담이 눈앞에 들어왔다. 담에서 5분정도 위로 올라가니 구름사이로 五女山の 자태가 드러났다. 아침 8시가 되지도 않았는데 좁은 차도엔 먼저 온 차들이 많이 있었다. 해발 8백 미터인 五女山으로 오르는 길은 계단으로 되어있었다. 모두 999계단이고 1999년에 조성했다고 한다. 산정(山頂)에는 太極亭과 샘으로 사용했던 天池, 초가집 자리, 군인들의 양식창고로 추정되는 3호 건축지, 주거지, 우리나라 아궁이의 시원인 온돌유적, 병영터, 성벽 등이 있었고 오녀산에서 가장 높은 장대는 전망대로 주위를 조망하기에 아주 좋은 자리였다.

이 곳 산성에서 고구려의 시조인 고주몽(東明聖王)께서 BC 37년에 都邑을 열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고 서쪽 성문을 통해 18반 길로 내려왔다. 산성에서 버스로 내려올 때에는 만리도 유원지를 돌아서 성 동남쪽으로 환인담을 끼고빙 돌아서 내려왔다.

通和市에서점심을 먹고 集安으로 이동했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고구려 때 채석장이던

노령고개를 넘어 通溝河의 발원인 小江南을 지나 통구고분군(洞溝古墓群) 지역에 오니 우간귀족묘지(禹山貴族墓地)가 잡초에 덮여 있었다. 오회분(五壘墳), 사회분(四壘墳), 사신묘(四神墓)가 나란히 있는데 지난날 五壘墳은 석실내부를 공개하였으나 이제는 석실내부를 직접 볼 수는 없고 다만 새로운 공간에서 벽화사진만 볼 수 있었다.

과거에 두서너 차례 석실내부를 직접 볼 수 있었던 것이 여간 다행이 아니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好太王碑가 간혀 있었다. 주위에 있던 조선족 소학교와 마을도 뜯어내고 토끼풀밭으로 정비를 하여 好太王陵이 보이도록 해놓았고 우리 학자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주위에 軍犬이 경계를 하고 있었다. 중국의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고구려사 왜곡 현상이 생생히 보였다.

好太王은 高句麗 19대 왕이며 원명은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이며 재위기간(391~413) 동안 高句麗의 영토를 방대하게 확보하신 분이요 好太王碑는 사후 414년에 세웠으며 응회암으로 높이 6.6미터 자연석의 四面에 비문이 새겨져있다. 현지 가이드 안승덕은 好太王碑의 발견경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하였다. 그에 따르면 1877년 회인현 지사의 서기 관을산이 수림속에 서있는 碑石을 발견하고 이끼를 떼어내니 글자가 보였고 1878년 탁본을 하려고 이끼제거를 위해 말뚝과 소똥을 태우니 碑面이 팽창하여 일면 오른쪽 윗부분이 깨어지고 글자가 마모되었다고 한다. 모두 1,775자의 글자가 새겨져 있다고 하며 1962년 중국과 북한 학자들이 공동 조사한 바에 의하면 1,803자로 판명되었다고 한다. 처음에 농부가 초가집을 짓고 살면서 탁본을 하여 팔아먹었다고 한다. 토끼풀밭 사이로 걸어서 거대한 돌무덤에 다가갔다. 호태왕릉(好太王陵)은 동남쪽 들계단 틈 속에서 동방울과 금도금 밥상다리가 출토되었는데 동방울에 「好太王」이란 세 글자의 銘文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확실한 好太王陵으로 판명되었다.

전용버스로 장군총(將軍塚)으로 갔다. 높이 13미터에 달하는 사각형의 7층 계단식 피라미드형을 하고 있었다. 지난날의 동쪽 철(鐵)계단이 철거되고 지금은 북쪽 나무계단을 새로 설치하여 꼭대기로 올라가도록 되어있었다.

집안(集安) 시내로 들어와 압록강(鴨綠江)변의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통화(通化)로 향했다. 식당의 벽에는 고분벽화(古墳壁畫)가 그려져 있어 인상적이었다. 집안(集安)은 고구려(高句麗)의 두 번째 도읍으로 국내성(國內城)이 있는 곳이며 BC18년(유리왕)부터 427년(장수왕 15년)까지 高句麗의 근거였던 곳이고 환도성(丸都城)도 있는 곳인데

이곳을 탐방하지 못하고 온 것이 못내 아쉽고, 현재 남아있는 國內城 북쪽 성벽과 集安 歷史博物館을 방문하지 못한 것이 또한 아쉬웠다.

나흘째 날 白頭山을 오르기 위해 어두운 빗속에 전용버스를 타고 通化로 향했다. 늦으면 열차를 놓치기 때문에 미음 졸였는데 2시간 40분 만에 다행스럽게도 通化驛에 다다를 수 있었다. 여행사의 배려덕분에 좋은 대합실(軟度候車室)에서 기다리다 4인 1실의 침대열차를 타고 白頭山으로 갈 수 있는 二道白河驛을 향해 밤새 달렸다.

밤 10시45분에 출발한 열차가 이튿날 새벽 5시43분에 二道白河驛에 무사히 도착하였다. 재빠르게 생긴 현지가이드 趙今姬의 안내를 받으며 민족의 聖山인 白頭山으로 떠났다.

白頭山 아래에 이르니 비가 많이 내려 맑은 天池를 보지 못할 것 같아 먼저 長白瀑布를 보고 溫泉을 하면서 날이 좋아지기를 기다렸다. 한 시간 가량 지나니 산봉우리가 모습을 나타내었다. 서둘러 山頂을 향했다. 천문봉(2,670미터)에 당도하니 아속하게도 天池에는 구름이 짙게 끼어 있었다. 구름 걷히기를 30여 분 간 기다리다 그만 下山하였다. 최근에 3번(5월15일, 6월23일, 7월19일) 白頭山에 올랐으나 한번도 맑은 天池의 물을 보지 못했다. 몇 년 뒤엔 8월에 白頭山을 다시 올라 맑은 天池를 보기를 기대한다.

닷새째 날, 전날 延吉에 도착하여 延吉 延邊大宇호텔에 旅裝을 풀고 오전에 훈춘(琿春)으로 향했다. 권하(圈河)통상구 경신(敬信)마을에 있는 두만강(豆滿江)의 원정대교 교각엔 북측은 검은색, 중국측은 흰색으로 구분이 되어있었다. 나오는 길에 러시아와 중국의 경계인 장영자해관(長嶺子口岸)을 둘러보고 조선족이 많이 사는 훈춘시(琿春市)에서 40리 떨어진 밀강(密江) 마을을 방문하였다. 密江中學校에서 40년 敎員생활을 마친 올해 68세인 金光哲씨 댁을 방문하니 아주 반갑게 맞아 주셨다. 주소를 적어달라고 부탁하니 서둘러 공책을 찢어 “中國 延邊 琿春市 密江中學校 金光哲”이라 써주셨다. 密江마을은 400戶정도 되는 큰 마을이었다.

해란강과 부르하통하가 合水하여 두만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곳을 지나서 북측의 남양시와 접경한 圖門으로 갔다. 6층 전망대와 圖門大橋를 보고 延吉로 돌아왔다.

여섯째 날, 延吉의 延邊大宇호텔을 나와 전용버스를 타고 발해의 유적인 西古城엘 갔다. 중경현덕부의 중심지의 유적인데 현지에 사는 사람들은 무슨 유적인지조차 몰랐다. 역사속에 묻혀버린 발해가 서러웠다.

和龍市를 지나 현지 가이드조차 길을 모르는 청산리항일대첩기념비(靑山里抗日大捷記念碑)를 찾아 들어갔다. 두어 시간 만에 마을이 보이고 靑山小學校가 눈에 띄었다. 小學校를 조금 지나니 동산 위에 우뚝 솟은 기념비가 눈앞에 다가왔다.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독립을 위해 이국땅에서 순국하신 선열이 생각났다. 記念碑로 오르는 계단 벽에 “靑山리 우리꽃동산 청산소학교” 자그맣게 써 붙여 놓은 글귀를 보고 고마움을 느꼈다.

“靑山里抗日大捷記念碑는 연변조선족 자치주민정부와 화룡시 인민정부의 영도하에 국내 여러민족인민들의 공동한 노력에 의하여 오늘 여기에 세워지게 되었다. 5,000여 평방미터의 부지에 넓이 125미터, 높이 17미터 60센티로 된 이 기념탑은 연변 건축 설계원에서 설계하고 화룡시 태달건축유한공사에서 시공하였다. 이 기념비수건연변국제 공공관계협회와 연변해외문제연구소가 일상사업을 주최하고 처리하였다.(…이하 4줄 생략)”

2001. 8. 31 연변여러민족인민청산리항일대첩기념비수건위원회

실제 靑山里大捷의 戰鬪를 한 곳은 이 記念碑가 세워진 곳으로부터 한 시간여 거리가 떨어진 곳이라고 한다.

松下平으로 나와 해란강의 용문교로 갔다가 龍井中學校로 갔다. 尹東柱詩碑가 있고 이상설선생역사전람관(李相高先生歷史展覽館)이 있었다. 尹東柱 先生의 生家가 있는 명동마을에 가니 아주머님들이 창고 건물에서 라디오를 켜놓고 8.15 맞이 풍물놀이 연습을 하고 있었다. 조국의 광복을 생각하는 우리 조선족에게서 진한 동포애를 느꼈다.

나오는 길에 巨龍友好公園에 있는 龍井우물을 보고 고속도로를 통해 延吉로 왔다.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저녁에는 북측에서 투자하여 직접 경영하는 식당인 연길의 화평가일촌(和平假日村)에서 북측여성들이 서비스하는 북한 냉면 등 북한음식을 맛있게 먹었다.

이번에 우리가 다녀온 중국의 동북삼성 즉 滿州(간도지방)는 우리 조선족이 수백만이 살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는 중국의 통치를 받고 있으나 문화적으로는 우리글과 우리말을 사용하고 우리의 옛 풍속을 고이 간직하고 있는 우리의 옛 땅이며 우리나라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2004. 7. 24



의원 김진근

내고향 연산리

언제 어디서나 그리다 지쳐 눈감으면
더욱더 뚜렷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내고향 연산리(蓮山里) 마을이여!
우리들은 잊을수 없는 사연이 있나 보다

동네갓과 잘미산 바람고개며
밤나무골 찬물샘터 노는 바우며
잣색 도시로 언젠가 바뀌어 버려
이름모를 잡초들은 초로처럼 사라지고

젊은날 거랑에서 웅동이 파고
떡감던 그 시절을 회상하면
공간을 뛰어넘어 과거속으로 빠져들 때
왜 이리도 가슴이 조여들며 허무해 질까?

조상 대대로 일구어온 옥토는 오간데 없고
어디선가 살기좋아 모여든 낯선 사람들
세상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들은 함께 살려마는
그곳은 내고향 영원히 잊지못할 연산리 마을이여!

제3대 의원선거 결과

*배 경

가. 지방선거의 부활과 현재

- 제5공화국 헌법 부칙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시기를 법률로 정한다」로 함.
- 1985. 1. 9 지방자치제 일부 지역에서 1987년에 실시할 것을 발표 (그러나 미루어짐)
- 1990. 12. 31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1991년 6월 30일까지 지방 의원을 1992년 6월 30일까지 단체장 선거를 실시하기로 함.
- 1991. 3. 26 시·군·구의회 의원선거 실시 (260개 기초자치단체 4304명 의원 선출)
- 1991. 6. 20 시·도의회 의원선거 실시 (12개 광역자치단체 866명 의원 선출) 단체장 선거는 계속 미루어짐
- 1995. 6. 27 제1차 동시 지방선거 실시 (임기 3년)
- 1998. 6. 4 제2차 동시 지방선거 실시 (임기 4년)
- 2002. 6. 13 제3차 동시 지방선거 실시 (임기 4년)

나. 선거권자 및 출마자의 기본 자격

- 선거권자의 자격 : 20세 이상의 국민으로 선거인명부 작성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피선거권자의 자격 :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25세 이상의 국민

* 후보자별 득표현황(2002. 6. 13 제13회전국동시지방선거)

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선거

선거구별	선거인수	투표인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계	한나라당		민 주 당		민주노동당		무 소 속			
				4	5								
			득표수	%	득표수	%	득표수	%	득표수	%	득표수	%	
계	722,806	378,328	295,572	157,372	53.2	8,548	2.9	92,843	31.4	36,809		12.5	
중 구	소 계	162,972	81,282	56,730	34,648	61.1	-	-	19,508	34.4	2,574		4.5
	제1선거구				김철욱								
					무투표당선								
	제2선거구	55,248	28,979	28,313	김기환			천병태	차용업				
					15,052	53.2		10,687	37.7	2,574	9.1		
제3선거구	58,524	29,273	28,417	김재열			신성봉						
				19,596	69.0		8,821	31.0					
남 구	소 계	234,702	108,773	77,149	54,022	70.0	6,456	8.4	16,671	21.6			
	제1선거구				이수만								
					무투표당선								
	제2선거구	62,187	30,154	29,437	김현득			임종락					
					20,148	68.4		9,289	31.6				
제3선거구	56,935	25,148	24,295	이종범		이동해							
				17,839	73.4	6,456	26.6						
제4선거구	50,464	24,011	23,417	심규화			김만현						
				16,035	68.5		7,382	31.5					
동 구	소 계	125,305	70,985	68,238	13,926	20.4	2,092	3.1	27,657	40.5	24,563		36.0
	제1선거구	49,554	25,778	25,098	송시상			김석진	김덕웅	이원건			
					9,304	37.1		9,145	36.4	3,351	13.4	3,298	13.1
	제2선거구	36,895	20,768	19,147				이영현	임명숙				
								9,199	48.0	9,948	52.0		
제3선거구	38,856	24,439	23,993	김규중		김학두	김종훈	김창민					
				4,622	19.3	2,092	8.7	9,313	38.8	7,966	33.2		
북 구	소 계	79,943	47,815	46,701	24,323	52.1	-	-	22,378	47.9			
	제1선거구	24,109	15,557	15,096	박천동			박병두					
					8,847	58.6		6,249	41.4				
	제2선거구	29,358	16,221	15,909	강석구			이성근					
					8,440	53.1		7,469	46.9				
제3선거구	26,476	16,038	15,696	정윤석			윤종오						
				7,036	44.8		8,660	55.2					
울 주 군	소 계	119,884	69,473	46,754	30,453	65.1	-	-	6,629	14.2	9,672		20.7
	제1선거구				노진달								
					무투표당선								
	제2선거구	41,685	22,161	21,456	서진기			하홍권					
					14,827	69.1		6,629	30.9				
제3선거구	42,030	26,482	25,298	김춘생					강철수				
				15,626	61.8				9,672	38.2			
비례대표				윤명희									
				김무열									
								홍정련					

나. 울주군의회 의원선거

선거구별	선거인수	투표인수	후보자별 득표수								
			계	가		나		다		라	
				득표수	%	득표수	%	득표수	%	득표수	%
온산읍	15,294	8,685	8,503	이몽원	한성률		권대환		최종언		
				2,776	32.6	2,218	26.1	1,681	19.8	1,828	21.5
연양읍	17,395	10,341	10,132	변양섭	성상근		최철근		장병국		
				3,543	35.0	3,038	30.0	2,654	26.2	897	8.9
온양읍	15,128	8,113	7,875	박진환	이동철						
				3,884	49.3	3,991	50.7				
범서읍 제1선거구	9,046	5,651	5,496	이수선	이정우						
				2,711	49.3	2,785	50.7				
범서읍 제2선거구	13,179	6,360	6,202	송정문	이채태		김태남				
				2,704	43.6	1,836	29.6	1,662	26.8		
서생면	5,747	4,061	3,958	김용원	이보근						
				2,130	53.8	1,828	46.2				
청량면				김철준							
				무투표당선							
웅촌면	7,618	4,428	4,276	이동석	김석암						
				1,590	37.2	2,686	62.8				
두동면	3,255	2,560	2,449	한병학	서우규						
				665	27.2	1,784	72.8				
두서면				서완영							
				무투표당선							
상북면	7,169	4,348	4,223	정순모	김지호		이종욱				
				1,611	38.1	1,905	45.1	707	16.7		
삼남면	9,307	5,758	5,629	김진근	박청홍						
				3,287	58.4	2,342	41.6				
삼동면	1,644	1,398	1,352	신동두	노병걸						
				851	62.9	501	37.1				

議政白書 (2002.7.1~2004.6.30)

2005. 5월 인쇄

2005. 5월 발행

발행인 :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

발행 :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과
(TEL:257-8108)

인쇄 : 유강기획인쇄
(TEL:269-8066)

<비매품>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http://assembly.ulju.ulsan.kr>